입법평가 연구 11-17-①

표준비용모델 적용 사례 연구
- 스위스 소방법의 사례 -

박 영 도 · 원 소 연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표준비용모델 적용 사례 연구

- 스위스 소방법의 사례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 Cost Model in Switzerland's Fire Safety Legislation

연구자 : 박영도(선임연구위원)

Park, Young-Do

원소연(초청연구원)

Won, Soh-Yeon

2011. 06.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스위스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시장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차원에서 규제개혁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입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호환성심사, 중소기업 포럼 등 다양한 도구를 제도화하여 운용

○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도구들은 정치적 논의를 배경으로 설정된 제도로서,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부담 측정을 가시화하고 짜임새있는 제도설계를 위해 유럽연합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의 도입가능성을 모색

□ 이 연구는 스위스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전망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스위스정부는 연방차원에서 수행된 표준비용모델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표준비용모델이 스위스에서도 성공적으로 적

용될 수 있으며,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

○ 이에 주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에 관해서도 검증해보기로 하고, 그 대상을 주의 소방법령에 적용함으로써 주차원의 절차와 집행과정에 대해 상호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수 사례(Good Practices)를 발굴하여 주차원에서의 소방법운용을 최적화를 도모

○ 이 프로젝트에서는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등 3개주의 소방법령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부담의 측정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로서 국제적인 입문서인 “국제 표준비용모델 매뉴얼(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aul)”을 사용

□ 소방법령에 대한 행정비용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은 행정비용부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당사자들이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인 소방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

Ⅲ. 기대효과

□ 스위스 소방법령에 관한 행정비용측정기법은 우리의 소방분야규제 수준의 합리화를 가름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와 스위스의 소방법령은 입법체계, 내용 및 각종 소방설비의 설치 등 절차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방법령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동일하므로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우리도 소방법령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그 비용을 측정하는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

□ 스위스에서는 사회적으로 소방행정을 규제라고 보기보다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고, 또한 소방관련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자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면서 일련의 절차를 이행

○ 소방법령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 각종 규제수준의 합리화 제고를 위한 토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소방법령에 관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추진할 필요

주제어 : 표준비용모델, 행정부담, 스위스 소방법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s

□ As the competition has accelerated in the economic sector due to globalization, market opening and technology advancement since 1990s, Switzerland has consistently adopted deregulation policies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institutionalizing various tools such as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e SME Compatability Test, and SME Forum since 1999 to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regulation reform and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ocedures at the federal level.

○ Because the three of the aforementioned tools were designed based on political debates which had little influence on a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Cost Model adopted by the EU to assess administrative burdens and to devise more organized systems.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where the Standard Cost Model has been applied in Switzerland to examine the prospect and feasibility of applying the model in Korea.

Ⅱ. Major Contents

□ The Swiss government drew a tentative conclusion from the pilot project of the Standard Cost Model implemented at the federal level that the Standard Cost Model can be applied successfully in Switzerland and it is expected to produce consistent and visible outcomes.

○ The government plan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st Model at the canton level, with applying the model to the fire safety legislation in canton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conducted mutual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enforcement procedures, discovering good practices and devising the optimal methods for operating the fire safety legislation in cantons.

○ This project aimed to estimate the administrative cost for providing information prescribed in the fire safety legislation in Aargua, Luzern, and St.Gallen. For this purpose, this project us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 as a methodological basis for estimating the administrative cost.

□ According to the result of assessment, most stake holders evaluated the administrative cost positively, which means they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fire safety and the need for administration costs to establish effective fire safety measures.

Ⅲ. Conclusions

□ The methods for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in relation to the Switzerland's fire safety legislation is a good practice for Korea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its regulations in the fire safety area.

○ The fire safety legislations of Korea and Switzerland differ in their procedures, such as legislative systems, details, and fire safety facilities. Basically, however, they have the same legislative purpose. Therefore, Korea needs to perform pilot projects to measure the costs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prescribed in its fire safety legislation by referring to the Swiss case.

□ In swiss society, fire safety administration is generally viewed as a tool for safety, not as a regulation. Moreover, in implementing procedures related to the fire safety, stake holders have prior consultations to proceed with a series of procedures.

○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st Model in relation to the fire safety legislation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of the fire safety legislation and administering the regulations more reasonably.

Key Words : Standard Cost Model, Administrative Burdens, and Switzerland's Fire Safety Legislation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부 스위스의 행정부담 경감정책 ····· 13
Ⅰ. 서 설 ····· 13
Ⅱ. 규제개혁을 위한 현행 제도 ····· 15
1. 규제영향평가제도 ····· 16
2. 중소기업 호환성심사 ····· 17
3. 중소기업 포럼 ····· 18

Ⅲ.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가능성 모색 ····· 19
1.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 19
2. 시범 프로젝트의 실시 ····· 25

제 2 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소방법령의 측정 사례 ····· 29
Ⅰ. 개 요 ····· 29
Ⅱ. 측정을 위한 기본전제 ····· 32
1. 측정대상 법규범 ····· 32
2. 정보제공의무의 관념 ····· 34
3. 측정산식 ····· 37
4. 측정절차 ····· 42

Ⅲ. 측정결과 개요 ····· 44

1. 규범분석결과 ····· 44
2. 양적 측정결과 ····· 47
3. 질적 측정결과 ····· 51
4. 최적화 방안 ····· 54

Ⅳ. 시사점 ····· 57

참 고 문 헌 ····· 65

[부 록]
소방영역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관한 최종보고서 ····· 67

제 1 부 스위스의 행정부담 경감정책

Ⅰ. 서 설

정부규제는 시민, 기업 및 국가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 시장기능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규제를 이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민, 기업 및 행정부문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여지를 불필요하게 축소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각국에서는 관료주의적 부담을 타파하고 좀 더 효율적인 입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정책적인 목표와 연계하여 광범하고 지속적인 관료주의 철폐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많은 행정부담은 경제활동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고,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대한 장애요소가 된다. 즉, 각종 서류의 기입 및 제출, 인·허가신청, 영업에 관한 보고 내지 변경통지 등 다양한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데 대하여 기업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식주의(Red Tape)는 단순히 서류의 기입에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창출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형식주의 비용은 국내의 규제와 행정의 효율화에 의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글로벌시장에서 기업에게 보다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1)]

---

1) OECD, **Cutting Red Tape : National Strategies**, Policy Brief 2007.1. p.1.

따라서 기업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확고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행정규제 비용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관료주의적이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경감하고, 그 진척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성장과 고용을 위한 좋은 조건들을 신속하게 창출하여야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인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배분적 정의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국가로부터 재정적 수단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단기간내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위스에서의 관료주의적 부담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논의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시장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연방정부에서는 스위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율이 낮다고 평가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새로이 성립한 신연방헌법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양호한 경제환경의 설정을 명시하였으며,[2]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수의 관련 정책보고서를 채택하였다.[3] 한편 정부에서는 각종 허가절차(Be-

2) 신연방헌법 제94조(경제질서의 원칙)에서는 "①연방 및 주는 경제적 자유의 원칙을 존중한다. ②연방 및 주는 스위스전체의 경제를 옹호하고 또한 사적 부문과 함께 주민의 복지 및 경제적 안전보장에 기여한다. ③연방 및 주는 각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민간부문경제에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④경제적 자유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 특히 경쟁에 반하는 조치는 그것이 연방헌법에 규정되거나 주의 특권에 의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특히, "**연방입법에서의 경제법적 절차의 현황과 평가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Bericht des Bundesrates über ein Inventar und eine Evaluation der wirtschaftsrechtlichen Verfahren in der Bundesgesetzgebung, 1999.2.17)" 및 "**행정부담 철폐와 규제완화조치**

willigungsverfahren)에 따른 행정부담과 전자정부 및 전자간소화(e-Simplification)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정부에서는 이 부문에서 선도적인 국가를 지향하여 1998년부터 전자정부전략을 추진, 다수의 조치를 시행하였다.[4)]

또한 1999년초에는 허가절차의 개선을 위해 기존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간소화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이 절차개선은 당시 경제부문에서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서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5)]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들 행정부담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9년 6월 연방경제부(Eidgenössisches Volkswirtschaftsdepartement : EVD) 산하에 국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 전문부서로서 경제사무국(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 SECO)을 설치하고, 기업부담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업무를 본격 추진하였다.

Ⅱ. 규제개혁을 위한 현행 제도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방차원에서 규제개혁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입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현재 다음의 세 가지 도구를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Bericht des Bundesrates üer Massnahmen zur De-regulierung und administrativen Entlastung, 1999.11.3)" 등이 대표적이다.

4)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Bericht der Bundeskanzlei zur Zukunft von www.ch.ch.**, Bern, Januar 2006(http://www.bk.admin.ch/dokumentation/publikationen/00293/index.html?lang=de.).

5) SECO, **Bewilligungspflichten des Bundesrechts bei wirtschaftlichen Betäigungen : Heutiger Stand und Entwicklung 1998 – 2004**, Bericht vom 2. Februar 2005. 현행 입법의 심사와 개선을 위해 연방차원의 300여개의 각종 허가절차(Bewilligungsverfahren)를 발굴, 이를 인터넷에 공시하여 상세한 내용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규제영향평가제도

규제영향평가(Regulierungsfolgenabschäatzung : RFA)는 연방차원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의 경제적인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6] 1999년에 도입된 이래 규제영향평가는 법적행위(법률 및 법규명령)의 초안, 교서(Botschaft)안[7], 연방내각의 법적 행위로서 현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제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2006년 초에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10,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의 지침(Richtlinien), 고시(Rundschreiben) 및 지시(Weisungen)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 국가적 행위의 필요성 및 가능성
- 개별 사회적 집단에 대한 영향
-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
- 대안적 규율
- 집행의 합목적성

위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타당하고 이해가능 하도록 서술되어야 하고, 규제영향평가의 실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제안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연방정부에서는 매년 특정한 법영역을 확정하여 해당 부처 및 경제사무국으로 하여금 심층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래의 중소기업 호환성

6) http://www.seco.admin.ch/themen/00374/00459/00465/04052/index.html?lang=de

7) 교서란 어떤 정책이나 법안에 관한 전문적 의견이 담긴 검토보고서(Bericht)와 달리 연방내각이나 연방의회에서 주요하고 복잡한 정책이나 법안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또는 연방의회차원에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견서의 일종이다.

심사의 결과와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규제영향평가는 소관 부처와 경제사무국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규제영향평가는 의회에의 법안제출단계 이전에 수행된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헌법개정안, 법률 및 법규명령안, 중요한 계획으로서 정치적·재정적·경제적·생태적·사회적 또는 문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 정당, 스위스 자치단체(Gemeinde), 도시(Städte) 및 산악지대영토(Berggebiete) 협회, 스위스 경제협회 기타 개별 이익단체 등 제안에 대해 영향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스위스의 입법절차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의견청취절차(Vernehmlassungensverfahren)라고 하며, 규제영향평가의 결과는 의견청취를 위한 첨부문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중소기업 호환성심사

중소기업 호환성심사(KMU-Verträglichkeitstest)제도는 일종의 사례연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안을 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가 미치는지 등에 관해 10여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해당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경제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제사무국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안된 법률안 및 법규명령안을 검토한 후 간단한 설문지를 마련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배부한다. 조사 그 자체는 설문을 중심으로 한 대면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심사는 모든 법안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실시한다. 심사를 요하는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작성된다. 입법절차에서 이 중소기업 호환성심사는 앞서 언급한 의견청취절차와 병행하여 행해진다. 그 결과는 다음에 언급하는 중소기업 포럼에서 논의된다. 따라서 이 호환성심사와 포럼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8] 주요한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으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규모(해당 법안이 성립될 경우의 추가투자, 기업의 제품 생산의 복잡성)
- 기업의 활동자유의 제한, 주도권의 제한에 의해 부과되는 사안, 상실된 기회(또는 새로운 요구사항, 규제완화의 경우)
- 제안으로 인한 부수적인 행정업무
- 법률안 또는 법규명령안이 다른 규정에 미치는 영향
- 당초 제안의 도입에 따른 시장의 전개, 기업의 법률회피를 위협하는 위협적 행위조치 검토
- 제안에 관한 집행의 실제적 관점 및 가능한 대안

3. 중소기업 포럼

중소기업 포럼(KMU-Forum)은 중소기업 영역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회외의 위원회로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의 제안이나 의견청취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제안되고 있는 조치의 집행에 즈음한 행정상 부담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비용과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검토한다. 이들 의견수렴에는 기존규제의 개선안 또는 대안의 제시도 포함된다. 이 포럼의 구성원은 다른 경제부문의 기

8) 중소기업 호환성심사는 제도설정이래 현재까지 31차례 수행되었다. 전체 수행현황 및 수행보고서는 http://www.seco.admin.ch/themen/00476/00487/00490/02012/index.html?lang=de 참조.

업가, 중앙회의 의장, 주경제연합회 회원 등 전부 기업가로 구성되고, 또한 연방정부와 기업간의 의견교환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이 포럼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호환성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된다.[9)]

Ⅲ.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가능성 모색

1.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2005년 의회행정통제국(Parlamentarische Verwaltungskontrolle)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호환성심사제도 및 중소기업 포럼 등 세 가지 도구들에 대해 그 효용성과 효과에 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들 세 가지 도구들은 정치적 논의를 배경으로 설정된 제도로서,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행정통제국에서는 이들 제도의 운용에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무용한 권고가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규제영향평가제도는 이들 세 가지 도구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그 수행방식은 매우 낮은 단계에 속하였으며 특히, 대부분의 평가서에는 대안 없음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어떠한 통계치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규제영향평가가 부처의 지시하에 외부에서 수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의견청취 이전 또는 의견청취 중에 실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 호환성심

9) 중소기업 포럼은 제도설정이래 현재까지 57회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eco.admin.ch/themen/00476/00487/00489/02008/index.html?lang=de

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 포럼구성의 약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의견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입장에서 대응하였다. 또한 결과에 대한 제시의 부족과 미약한 의사전달체계가 비판되었다.[10)]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행정부담 측정을 가시화하고 짜임새있는 제도설계를 위해 유럽연합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하였다.[11)] 이에 경제사무국에서는 2007년 스위스에서의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위해 주요국가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벤치마킹 연구, 스위스에서의 제도도입시 유의사항 연구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12)] 이들 연구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 운용하고 있는 주요국가(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경험과 스위스의 정치체계상의 특수성(직접민주주의제도, 협조적

---

10) Parlamentarische Verwaltungskontrolle, **Die drei «KMU-Tests» des Bundes. bekannt? genutzt? wirkungsvoll?**, Bern 2005 참조.

11) 각국에서도 행정비용의 감축구상과 관련하여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행 법규정을 간소화할 때 그 비용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비용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산방식이 있고 어떠한 방식을 채용하는가에 따라 그 계산결과도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비용규모를 계량화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표준적인 비용계산방법을 제시한다면 위와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규제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12) 2건의 선행연구는 2007년 9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하나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한 국제적인 경험분석 및 스위스에서의 시사점**(Analyse der internationalen Erfahrungen zur Anwendung des Standard- Kosten-Modells und Implikationen für die Schweiz)"이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Verwendungsmöglichkeiten des Standard-Kosten-Modells. Eine Analyse des schweizerischen Kontexts)"에 관한 보고서이다.

연방주의 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모델이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적합한 제도인지, 새로운 도구로서 설정할 것인지 현재의 도구들과 통합할 것인지, 완전한 도입이 적합한지 아니면 부분적인 도입이 적합한지, 연방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할 것인지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스위스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평가방법론은 사후적(ex-post)으로 법률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특정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사전적(ex-ante) 측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이행비용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요한 편익을 제시하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나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법문의 평가방법론은 규제의 구조에 관해 상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관점에서 규제의 형태분석을 통해 행정부담의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규제간소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 규제에 관한 평가방법론은 기존 규제뿐 아니라, 제안된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규제비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산출물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부가가치를 제시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법률에 대한 평가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고, 제안하려는 규제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스위스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부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도구와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규제간소화를 위해 채용된 도구들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현재의 도구들인 규제영향평가, 중소기업 호환성심사 및 중소기업 포럼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또한 기존의 도구들은 표준비용모델을 강화하도록 채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분석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표준비용모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정책기관의 역할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스위스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행정부문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최초 적용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행정부처에서 대응할 것인지 또는 외부컨설턴트에 의해 수행할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미 그들은 상당한 노하우가 존재하고 있고, 해당 작업을 수행할 짜임새 있는 조직도 있다. 나아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은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단점은 이들의 지식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리스크가 있다. 세무회계기관에 의한 표준비용모델의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편익은 저렴한 비용과 그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은 관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뿐 아니라, 프로젝트시간 및 성공적인 완성과 관련된다. 프로젝트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비용이 높을 수 있다.

-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법률에 대한 평가방법은 규제영향평가 내에 통합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바로 의견청취과정에 편입될 수 있다. 어떻게 분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규제적인 정보제공의무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개선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절감하고 커다란 효율성을 가진다.**

기존의 도구에서 법률에 대한 평가방법론 및 사전측정의 실행, 범위 등에 관해서는 가시적인 측정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안에서 사전적 측정의 형식으로서의 중소기업 호환성심사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호환성심사가 기업에 대한 인터뷰로서 수행될 경우에는 이들 인터뷰의 구조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들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이고 더욱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중소기업 포럼에 의해 제안된 것도 검토한다.

- **중기적으로 계속적인 개혁의 맥락에서 신규 법률안의 분석을 개시하는 것도 제안하지만, 스위스 전체의 규제요소는 표준비용모델 방법론에 따라 사후적인 분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은 관련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부서를 상대로 진행한다. 한편으로 규제로 인해 영향받는 집단을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연방차원에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다른 한편 해당 규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 단지 법령에 의한 것인지 또는 행정수행에 의한 것인지를 추출해야 한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측정하려는 법영역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유용한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 포럼에게 상응하는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국

에서 제도화된 것으로서 기업이나 이해관계집단 기타 개인으로부터 행정간소화에 관한 제안을 접수하는 인터넷 포탈을 개설하는 방안이다.

-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도구는 최초로 연방차원에서 도입하고, 그 이후 주차원에서 도입한다. 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방에 의한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이는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해 비교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규제간소화를 위한 기존의 도구들은 연방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은 연방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주차원에서도 유용하다. 중소기업 호완성심사의 범주에서 측정을 실행하기 전에 연방차원에서 일관성있는 본격적인 방법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명확한 정의의 확정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결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보증할 수 있다.

- **주 차원에서는 하나 또는 여러 영역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사후적 행정부담측정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주 상호간의 행정부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차원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다수의 주의 규율영역에 관한 사후적인 측정이 적합하다. 그 결과는 벤치마킹에 활용될 수 있다. 참여한 자들은 해당 규제에 대해 상대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주의 벤치마킹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선의 실행가능성이 가시화되고, 다른 주에서도 이들이 이해되어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최소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러한 벤치마킹은 주 상호간의 최선적인 규제설계를 위한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의 권고에서는 스위스에서 표준비용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분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연방차원에서는 ①대외무역 또는 검사와 연관된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 ②모든 허가절차에 관한 조사, ③재무제표 및 감사와 관련된 규율의 분석에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주 차원에서는 ①허가절차와 과세(집행 포함)에 관한 조사, ②주상호간의 규제를 조화시키고, 특정 영역(조세, 환경규제의 수집 등)을 집중화, ③기업세제, 특정 교부금 및 환경규제 등의 분야에서의 주 상호간의 벤치마킹의 실행에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권고하였다.

2. 시범 프로젝트의 실시

연방정부의 경제사무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권고를 받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스위스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시범 프로젝트 3건을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법(Mehrsteuer-Gesetzgebung), 신 급여증명제도(Lohnausweis)에 관한 측정은 연방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측정대상	개 요	방법론	참여기관
부가가치세법 (Mehrsteuer-Gesetzgebung), <2007.9>	• 2007년도에 개정작업 중인 부가가치세법의 기존규정과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비용 및 잠재적인 절감액을 측정	SKM -Messung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 경제사무국 (SECO) • Rambøll Management Consul-

측정대상	개 요	방법론	참여기관
	• 사전적 측정방식과 사후적 측정방식을 병행(기존규정은 사후적 측정, 개정안은 사전적 측정)		ting GmbH
신 급여증명제도 (Lohnausweis) <2008.12>	• 종전의 급여증명제도와 새로운 급여증명제도에서 발생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여 양자간의 비용증감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급여증명제도의 채용에 따른 개선사항을 권고 • 사전적 측정방식과 사후적 측정방식을 병행	SKM -Messung (국제표준비용 모델 매뉴얼)	• 경제사무국 (SECO) • KPMG AG
3개주 소방법 (Brandschutz-gesetz) <2009.12>	• 3개 주의 소방법상 각종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부담을 측정 • 주차원의 절차와 집행과정에 대해 상호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주차원에서의 소방법운용 최적화방안을 권고	SKM -Messung (국제표준비용 모델 매뉴얼)	• 경제사무국 (SECO) • Aargau주 수상청 • Luzern주 경제 및 지역발전국 • St.Gallen주 경제부 • Rambøll Management Consulting GmbH

현재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실정에 부합하게 그 상세한 측정기법을 약간씩 변형하여 일정한 지침서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13]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이들 국가와 달리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일정한 지침서 내지 가이드라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았다. 연방차원에서 수행된 위 2개의 프로젝트와 후술하는 3개주 소방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을 적용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일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SCM-Network라는 단체에서 마련한 것이다. 2003년 일부 유럽국가들은 SCM-Network를 창설하고 향후 행정절차상의 부담을 측정하는 경우에 동일한 수법으로 수행할 것을 확약하였다.[14] 그리하여 SCM-Network는 2004년 8월 기업의 행정부담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틀인 표준비용모델(The Standard Cost Model)을 발표하는 한편 2005년 10월에는 "국제표준비용모델 메뉴얼(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을 발표하였다.[15] 스위스에서의 행정비용 측정은 이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다.

---

13) 각국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개요는 박영도, **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참조.

14) 동 네트워크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영국, 오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란다스(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

15) 이 매뉴얼은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 외에도 SCM 측정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에서의 실제 경험 그리고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비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역),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한국법제연구원 2009 참조.

제 2 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소방법령의 측정 사례

Ⅰ. 개 요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기업이 법령상의 규제조항에 명시된 각종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 신고, 보고, 통지 등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16]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은 시민이나 기업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부담 및 이러한 행정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법령의 총량과 관련되어 있다.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행정비용"이란 행정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나 기업이 행정기관에게 각종 보고를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은 정부의 "규제"로 발생한 행정비용을 측정하며, 규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의 행정활동들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이행하는 것으로서 규제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행정업무가 그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은 행정적 부담이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로 미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와 같은 확인 작업에 의거하여 행정부담을 철폐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표준비용모델의 절차를 이용하면 기업이 특정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원을 투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표준화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규제(법령)"로 인한 보고의무나 정보제공의무에

16) Davide Codoni/Nicolas Wallart, **Administrative Entlastung in Euripa mit Hilfe des Standardkostenmodells, Die Volkswirtschaft**, Das Magazin für Wirtschaftspolitik 2007.6, S.54.

서 유발되는 비용만을 산정할 뿐이다. 즉, 표준비용모델은 당해 규제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에 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규제의 적합성과 탈규제 등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정책담당자나 입법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다.

스위스정부는 연방차원에서 수행된 시범프로젝트 2건을 통해 표준비용모델이 스위스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에 주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에 관해서도 검증해보기로 하고, 그 대상을 소방영역에 적용해보기로 하였다. 측정대상을 소방영역에 초점을 둔 이유는 첫째, 스위스에서 소방영역은 헌법상 주의 입법권에 속한다. 따라서 각주에서는 별도로 소방법(Feuerwehrgesetz, Brandschutz-gesetz, Feuerschutzgesetz)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방영역에서의 측정을 통해 표준비용모델이 주의 법령에 있어서 주요한 비용유발처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분석도구로 입증하려는데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소방영역에서의 행정부담측정을 통해 이 분야에서 서로 다른 주차원의 절차와 집행과정에 대해 상호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수 사례(Good Practices)를 발굴하여 주차원에서의 소방법운용을 최적화하려는데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별 주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주상호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별 주의 규범을 조사, 확인하고 그 비용유발원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특정 주차원에 한정된 개별 규정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부담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측정으로 향후 주에서는 주의 법령 가운데 중점적으로 비용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하여 비용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단순히 개별 법규정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개별 법영역의 규정을 상호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범프로젝트는 독일 Hamburg에 소재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 전문 컨설팅회사(Ramboll Management)에 그 측정을 의뢰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표준비용모델의 측정기법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측정기법 개요	비 고
적용시점	• 사후측정형(Ex-post) 표준비용모델	• 비용과 감축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기재 • 현행법상의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판단자료 제공
적용절차	• 전통적 표준비용모델 중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을 사용	• 설문조사, 전문가설문조사
적용대상	• 3개주의 소방법령 및 관련 소방지침 및 기술기준	• 현행 법규범, 법분야 또는 규제분야에 존재하는 정보제공의무
적용범위	• 정보제공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표준비용모델	• 상세화된 분석과 측정 • 현행법상의 법규범과 법분야에 존재하는 행정비용 전체상 • 행정비용의 개별적 규모와 전체적 규모

Ⅱ. 측정을 위한 기본전제

1. 측정대상 법규범

이 프로젝트에서는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등 3개주의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법규명령)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스위스의 소방법은 전형적인 규제법분야로서 기업들에 의해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대표적 영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17] 또한 각 주의 소방법 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화재보험협회(Die 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erungen : VFK)[18]의 소방지침, 스위스 안전설비업자조합(Verbands Schweizerischer Errichter von Sicherheitsanlagen : SES)의 기술지침(Technischen Richtlinien)도 포함하였다.[19] VKF의 주요 소방규정은 소방기준(Brandschutznorm)과 18개 주제별에 따른 소방지침(Brandschutzrichtlinien)으로 구성되며, 건물과 시설의 소유자 및 이용자와 이러한 건물과 설

17) 독일에서도 소방법영역은 기업에게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측정된 바 있다. 즉, 2006년 6월 Hessen주, Niedersachsen주, Nordrhein-Westfalen주, Saarland주 및 Sachsen주 등 5개주 전체의 주법에 관한 표준비용모델 측정(SKM-Scan)에서 소방, 일반적 지원 및 재호구호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Brandschutz, die allgemeine Hilfe und den Katastrophenschutz)이 모든 주에서 Top 30에 해당하는 비용유발이 많은 법령에 포함되었다.

18) VKF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예방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주의 건물보험(Gebäudeversicherungen)서비스 및 관리기관이다. 주의 소방청은 이 기관에게 스위스내에서의 소방분야의 조정과 통일을 도모하고 유럽연합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VFK는 유럽규격에 상응한 소방설비 자격자를 인정하는 인증기관이기도 하다.

19) SES는 스위스내에서 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이다. SES가 편집한 기술지침은 첨단 기술문서(Stand-der-Technik-Papiere)로서, VKF 지침을 보완한다. 특히, SES 지침은 VKF 규정들과는 달리 주의 소방규정에 구속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술의 현황으로서 3개 주의 건물보험사(Gebäudeversicherung)에 의해 인정되고 적용된다.

비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소방기준은 소방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구조적·기술적 사항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이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지침은 소방기준에서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보충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각종 조치들을 정하고 있다. 이들 VFK의 규정은 3개주의 소방규정에서 구속력있는 것으로 제시한 것과 연관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법규범은 다음과 같다.

해당기관	내 용
Aargau주	• 소방법(Brandschutz)
	• 소방법 시행령(Brandschutzverordnung, BSV)
Luzern주	• 소방법(Gesetz über den Feuerschutz)
	• 소방법 시행령(Verordnung zum Gesetz über den Feuerschutz)
St.Gallen주	• 소방법(Gesetz über den Feuerschutz)
	• 소방법 시행령(Vollzu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en Feuerschutz)
VKF	• 소방기준(Brandschutznorm)
	• 소방지침(Brandschutzrichtlinie) - 화재예방(Brandverhütung) - 건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Sicherheit in Betrieben und auf Baustellen) - 건축자재 및 부품(Baustoffe und Bauteile) - 구조물(Tragwerke) - 피난 및 구조통로(Flucht- und Rettungswege) - 피난통로 표시(Kennzeichung von Fluchtwegen), - 안전조명(Sicherheitsbeleuchtung)

해당기관	내 용
	- 안전전원공급장치(Sicherheitsstromversorgung) - 소화기구(Löscheinrichtungen) - 스프링클러설비(Sprinkleranlagen) - 화재경보기(Brandmeldeanlagen) - 가스누설경보기(Gasmeldeanlagen) - 연기 및 열통풍설비(Rauch- und Wärmeabzugsanlagen) - 낙뢰방지기(Blitzschutzanlagen) - 승강기(Aufzugsanlagen) - 열순환설비(Wärmetechnische Anlagen) - 환기설비(Lufttechnische Anlagen) - 위험물(Gefährliche Stoffe) - 인화성액체(Brennbare Flüssigkeiten)
SES	• 기술지침(Technische Richtlinie) - 스프링클러설비(Sprinkleranlagen) - 가스누설경보기(Gasmeldeanlagen) - 화재경보기(Brandmeldeanlagen)

2. 정보제공의무의 관념

이 프로젝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각종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조사하였다.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서는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의 개념에 관해, “공공부문이나 제3자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규제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무이다. 정보제공의무는 정보가 공공기관이나 사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열람

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청이 있다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기본적으로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서 제시한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에 따라 "기본적으로 행정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의 준비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의무를 지칭한다. 정보제공의무는 어떤 정보가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사나 검사만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는 하나 이상의 자료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Datenanforderungen)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요구사항은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각각의 정보요소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각 주의 소방법에 포함된 모든 정보제공의무와 이에 속하는 자료요구들이다. 그리고 정보제공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자료요구의 이행을 위해 기업들은 일정한 활동(행정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이들 활동들은 표준비용모델에서 표준활동(Standardaktivitäten)으로 제시되어, 이른바 표준절차(Standardprozess)가 마련된다. 표준절차는 자료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며 하나 또는 다수의 표준활동들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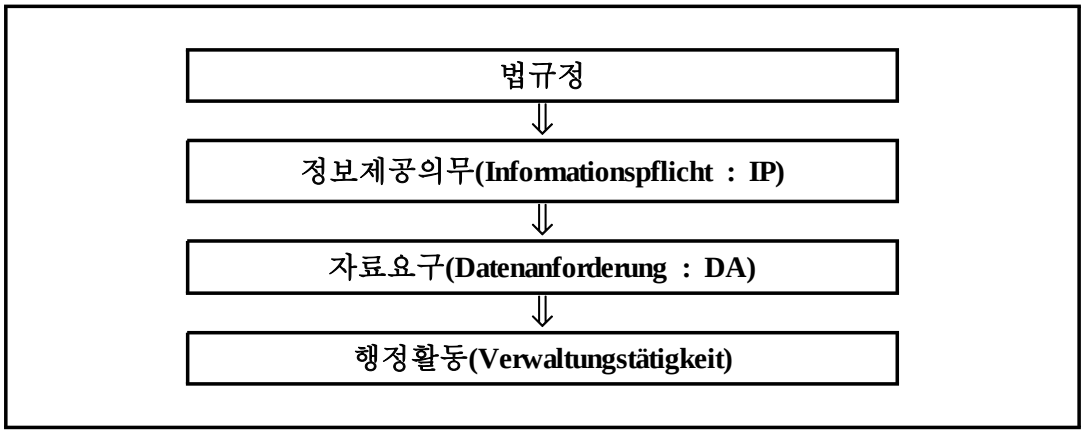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서는 이 표준활동을 16개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표준활동의 분류에서는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따라 13개의 표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표준비용모델 표준활동	
1	정보제공의무 숙지(Einarbeitung)
2	정보의 검색(Informationsabfrage)
3	평가(Einschätzung)
4	계산(Berechnung)
5	제시(Präsentation)
6	검토(Kontrolle)
7	정정(Korrektur)
8	설명(Beschreibung)
9	결정/지급(Zahlungen)
10	내부회의(Interne Meetings)
11	외부회의(Externe Meetings)
12	행정기관의 검사(Inspektionen durch Behörden)
13	행정기관의 검사결과 보정(Korrektur der Ergebnisse der Inspektionen durch Behörden)
14	교육, 법적 요구의 현실화(Training, Aktualisieren gesetzlicher Anforderungen)
15	복사, 배포, 정리(Kopieren, Archivieren)
16	보고/제출(Berichterstattung)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표준활동	
1	정보제공의무의 공고
2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구성원 및 고용자 교육
3	현 데이터로부터 관련정보의 추출
4	현 데이타의 조정
5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
6	정보요소의 설계(예 : 간략한 개요)
7	형식과 양식 기입
8	회의 개최(회계사, 변호사 등과 내/외부)
9	조사와 검사(공공기관에 의한 조사의 지원 포함)
10	제본(보고서 편집, 표지와 개요)
11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제출(예 : 관련기관에 송부)
12	정보의 파일화
13	정보제공의무 충족을 위한 특별한 (IT)기기와 장비 구매(예 : 라벨링 기계)

3. 측정산식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행정비용(정보제공비용)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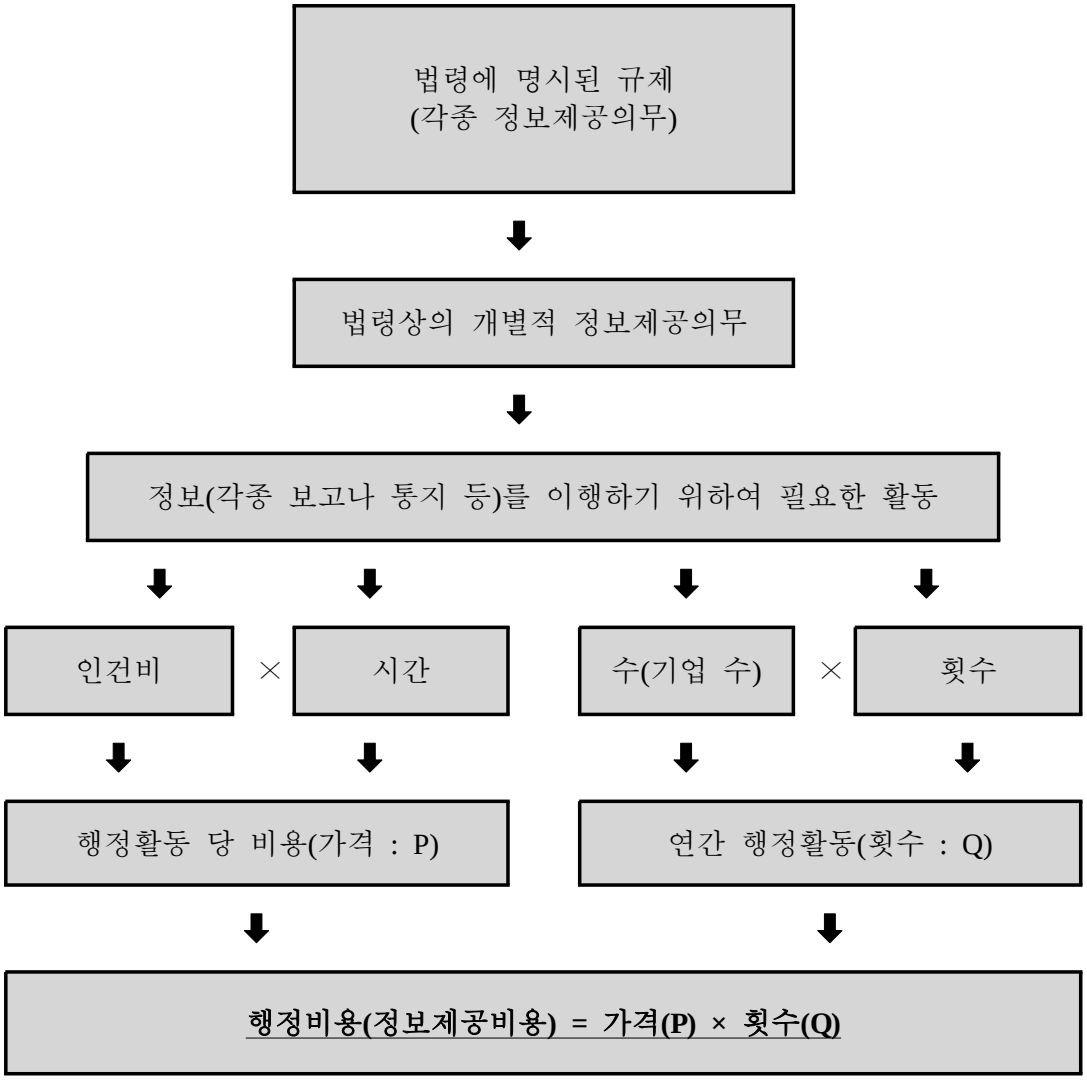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위의 측정산식에 따르고 있다. 시간에 대한 측정은 각각의 표준절차마다 이루어진다. 특히 각각의 활동들을 수행하는 인력의 수준(교육, 경험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확정한다. 이 질적 수준에 기초해서 임금표(Tarif)을 작성하는데, 이를 시간과 곱하여 개별 행정활동(정보제공의무) 당 비용을 측정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행정활동당 비용의 측정에서 구매비용(예컨대, 특정기계나 IT소프트웨어, 우편료 등)과 정보제공의

무 이행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 등의 외적 비용을 모두 측정한다. 특정 활동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시간당 비용의 산출을 위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외부전문가의 비용산정을 위해서는 외부요금표(eine externer Tarif)를 이용한다.

다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주별로 소방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등은 측정하지 않았다. 이 수수료는 행정비용이라기 보다는 재정비용(finanzielle Kosten)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재정비용이란 규제의 내용에 기인하는 비용으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분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측정은 법규정의 준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측면에만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른 비용들, 즉 상응하는 법규정없이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들은 행정비용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측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들을 위해 매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행되어지는지(주기)와 매년 어느 정도의 사례가 발생하는지(사례의 수), 즉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조사하여 이를 곱하여 연간 행정활동 횟수를 측정하였다. 이 행정활동 당 비용과 연간 행정활동 횟수를 곱하여 행정비용(정보제공비용)을 도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표준비용모델 산식과 측정기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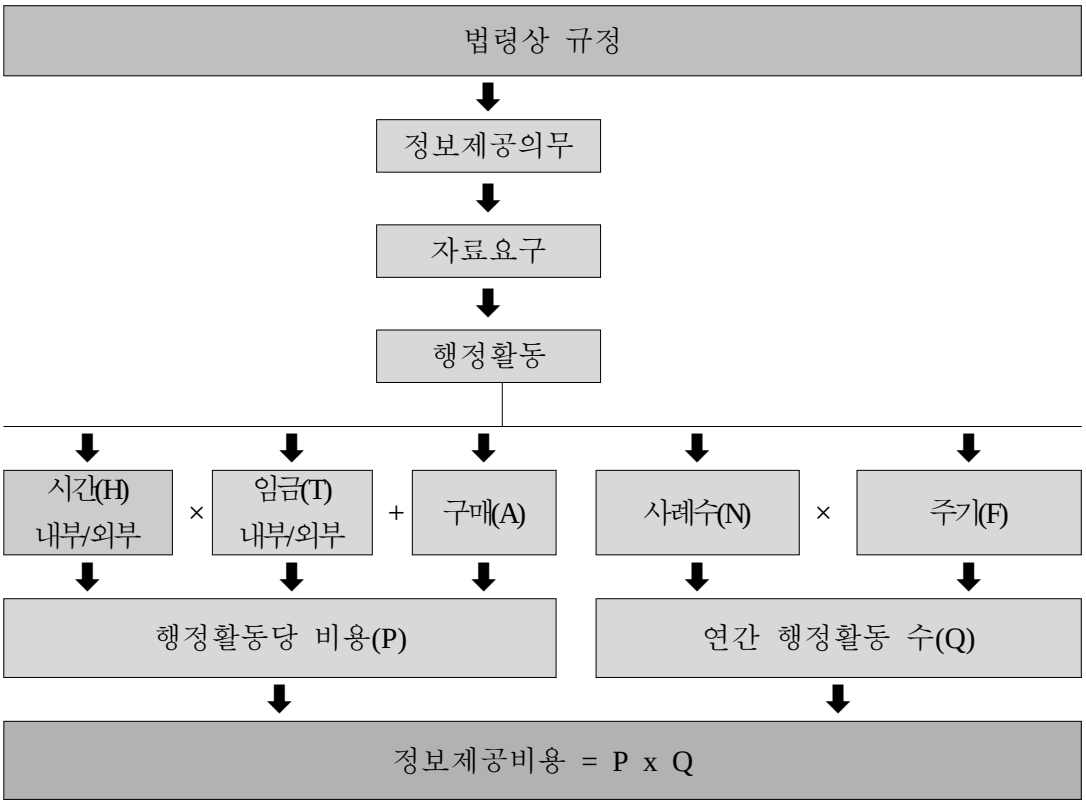

세부항목	내용의 설명
정보제공 의무의 기술	•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계의 비용만을 조사(해당 규율의 편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음)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탈출로, 비상구 및 금연 표지 등 표시의무)는 측정하지 않음 • 소방제품 및 회사의 인증(허가신청/소방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는 측정하지 않음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분석된 지침서와 실행설명서에 포함된 정보제공의무는 측정하지 않음

세부항목	내용의 설명
비용측정	•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발생되는 시간비용 뿐만 아니라, 구매비용(예컨대, 특정 물품이나 IT소프트웨어, 우편료 등)과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 활용 등 외부비용을 전부 포함하여 측정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예컨대, 각 주별로 소방허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 등은 측정하지 않음
정보제공 의무당 사례빈도수의 조사를 위한 근거자료와 가정	• 건물보험사의 영업결산보고서(Geschäftsbericht), 건물보험사의 통계, 건물보험사의 소방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를 통한 추계 • 기타 Rambøll Consulting회사가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추산, 다른 주들의 사례수와 스위스연방통계청의 2008년도 경영센서스(Betriebszählung)를 이용해 추산의 기초를 마련
임금확정을 위한 근거자료	• 스위스 임금구조통계조사에 근거한 월간총임금을 새로이 사용, 총임금(Bruttolohn)은 업무별 근로자들의 총소득을 반영 • 총임금에 이와 관련된 고용주분담금(Arbeitgeberanteile)과 25%가량의 표준비용모델 - 제경비 할증료(Gemeinkosten-aufschlag)를 추가 • 명목임금(Nominallöhne)의 상승도 고려, 이는 2006년 임금구조통계조사에 의거 • 계산된 월임금에 기인한 시간당 임금은 휴가, 병가, 사고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일한 시간을 기초로 조사

세부항목	내용의 설명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된 표준화된 처리기간	•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과정, 시간치(Zeitwerte), 직무요구능력의 조사를 위해 전체적으로 소방법분야와 관련된 총 44개의 스위스기업들과 인터뷰를 진행 • 인터뷰 중에서 12건은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32건은 전화상 인터뷰로 진행, 인터뷰 진행시간은 15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

4. 측정절차

이 프로젝트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절차로서 6개의 단계를 기술하고 있다.

단 계		내 용
단계 0	**프로젝트의 전개**	착수워크샵 개최
단계 I	**법규범 분석**	1. 법률 분석
		2. 보충적 문서분석
		3. 제1차 주 상호간 질적 차이분석(정보제공의무)

단 계		내 용
단계Ⅱ	자료조사 준비	4. 비용변수 측정
		5. 절차 워크샵
		6. 제2차 주 상호간 질적 차이분석(절차)
		7. 인터뷰 계획 및 대상 기업 모집
단계Ⅲ	자료조사	8. 기업 인터뷰 및 보충적인 전문가의견
		9. 표준화
단계Ⅳ	자료사정	10. 비용 산정
		11. 제3차 주 상호간 질적 차이분석(비용)
단계Ⅴ	최적화	12.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최적화제안의 정리
		13. 필요한 경우 잠재적인 최적화 산정
단계Ⅵ	종 결	14. 종결 워크샵 -결과에 대한 발표
		15. 보고서 작성

Ⅲ. 측정결과 개요

1. 규범분석결과

위에서 제시한 주의 법령 및 VFK 규정과 SES 지침분석을 통해 총 137개의 정보제공의무를 유발하는 조항을 확인하였다. 정보제공의무를 유발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대상규범	정보제공의무 숫자
Aargau주 소방법령	17개
Luzern주 소방법령	13개
St.Gallen주 소방법령	18개
VKF-규정	62개
SES-문서	27개

한편 위에서 보는 것처럼 VKF(주화재보험협회)지침에서는 62개, SES (스위스안전설비업자조합)지침에서는 27개 정보제공의무가 확인되었으나, 프로젝트경과에 대한 설명과 부합하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0개, 허가/소방안전 신청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12개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의 분류와 개수는 다음과 같다.

규 정	지침명	소방분류	정보제공 의무 총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 의무허가
VKF 1-03d	소방기준	건축/영업	3	1	
VKF 11-03	화재예방, 건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	건축/영업	3	2	
VKF 12-03	건축자재 및 부품	건축/영업	3		3
VKF 14-03	구조물	건축/영업	1		
VKF 16-03	피난 및 구조통로	건축/영업	1	1	
VKF 17-03	피난통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의 표시	건축/영업	5	2	
VKF 18-03	소화기구	기술	5	1	
VKF 19-03	스프링클러설비	기술	6	1	
VKF 20-03	화재경보기	기술	5		
VKF 21-03	가스누설경보기	기술	3		
VKF 22-03	연기 및 열통풍설비	기술	4		
VKF 23-03	낙뢰방지기	기술	4		
VKF 24-03	승강기	옥내 기술장비	5	1	

규 정	지침명	소방분류	정보제공 의무 총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 의무허가
VKF 25-03	열순환설비	옥내 기술장비	4	2	2
VKF 26-03	환기설비	옥내 기술장비	2	1	1
VKF 27-03	위험물	건축/영업	5	4	
VKF 28-03	인화성액체	건축/영업	1	1	
SES	스프링클러설비	기술	14	1	3
SES	화재경보기	기술	8	1	3
SES	가스누설경보기	기술	5	1	
		합계	89	20	12

절차분석의 결과에서 3개 주의 소방법규범은 서로 유사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상위 구조와 절차 등도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개 주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집행상의 차이였다. 각 주들은 서로 다른 서식을 이용하고 있고 허가, 점검 및 통제를 위한 요구조건들도 각각 달랐다. 이는 시간경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직접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작업하여 측정하는 표준비용모델의 방법에 따른 결과는 바로 행정부담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양적 측정결과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업들과의 인터뷰와 전문가들의 추산을 통해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시간적 경비와 비용변수(Kostenparameter)를 조사하였다. 행정부담을 각 규율차원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St.Gallen주가 행정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행정부담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사례수에 기인하였다. 조사대상인 3개 주 사이에는 기업수 또는 영업 단위(Gewerbeeinheiten)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다수의 기술적인 소방설비(Brandschutzanlagen) 및 화재경보설비(Brandmeldeanlagen)등이 존재하였다.

규율차원	행정부담(단위 : CHF)		
	Aargau 주	Luzern 주	St.Gallen 주
주 법령	679,217	352,363	992,910
VKF-소방지침	645,169	541,958	638,347
SES-기술문서	217,101	375,086	484,887
총비용	**1,550,487**	**1,269,407**	**2,116,145**

위의 총 행정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 정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 법률	568,666	82,552	587,346
주 법규명령	100,088	60,090	216,324
기타 주 규정	10,462	209,721	189,240
소방지침 구조물(14-03)	7,706	5,505	4,404
소방지침 피난통로표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17-03)	464,396	274,161	384,946
소방지침 소화기구(18-03)	76,997	95,256	134,658
소방지침 낙뢰기(23-03)	21,799	46,646	7,635
소방지침 스프링클러설비(19-03)	51,033	58,043	60,035
소방지침 화재경보기(20-03)	28,458	59,761	43,825
소방지침 가스누설경보기(21-03)	1,328	664	443
소방지침 승강기(24-03)	2,452	1,923	2,404
기술지침 화재경보기	126,782	299,442	399,512

규 정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기술지침 가스누설 경보기	1,579	789	526
기술지침 스프링클러설비	88,740	74,854	84,849
계	**1,550,487**	**1,269,407**	**2,116,145**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3개 주에서는 주의 법규정, VKF지침 17-03 (피난통로표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 및 SES-문서(화재경보기) 등 3가지가 비용집약적인 규정으로 나타났다. Aargau주와 St.Gallen주의 경우, 소방법이 비용집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uzern주에서는 계획 및 건축법에서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조명과 안전전원공급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는 점검매뉴얼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행정비용이 높았다. 주 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숫자의 차이 때문이다. 다른 소방설비에 비해 화재경보기가 비교적 행정비용이 높게 나온 것은 화재경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비형태이고 그 숫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각 주별로 기업의 전체숫자에 비례하는 절대적 행정부담을 측정해 본 결과, 개별 기업당 행정부담의 수준은 St.Gallen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2개주보다 주의 규모도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주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숫자와 해당 건수가 더 많다는 점에 의거한다. 또한 St.Gallen주의 경우 다른 2개 주와 달리 낙뢰방지기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비용(약 280,000 CHF)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아울러 다수의 사건발생수와 이에 비례한 지역 화재안전점검(Feuerschau)에 높은 비용(약 215,000 CHF)이 사용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이들 정보제공의무는 Luzern주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Aargau주에서는 사건발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별 기업숫자	23,022	13,320	19,167
주별 화재경보설비의 전체 숫자	1,068	1,750	2,370
개별 기업당 평균적인 행정부담(CHF)	**67.3**	**95.3**	**110.4**

3개주에서 비용부담이 높은 정보제공의무는 안전조명(Sicherheitsbeleuchtung)과 전원공급을 위한 매뉴얼(Kontrollbuch)의 운영으로 파악되었다. 이 정보제공의무는 St.Gallen주에서는 전체 행정부담의 18%, Luzern주에서는 20%, Aargau주에서는 30%에 가까운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30,000에서 220,000에 이르는 높은 사례수 때문이며, 정보제공의무의 개별단가는 대략 2 스위스프랑 정도로서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제공의무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안전조명등과 전원공급을 위한 매뉴얼 운영	447,871	260,390	374,962

3. 질적 측정결과

이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기업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부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는 바, 대상자들은 소방대책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고 효과적인 소방대책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결부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측정을 위한 설문은 크게 8가지 부문을 가지고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관련 설비의 설치자와 운영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방대책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가용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정보는 소방기술포럼(Forum für Technischen Brandschutz)과 VKF의 인터넷 사이트를 정보원(Quelle)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주(Aargau주)의 경우 인터넷상으로 소방허가 신청양식을 가져올 수 없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서류양식이 오로지 종이서류 형태로만 존재하고 전자서류 양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둘째, 관련 규정의 공지와 관련하여 VKF-규정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개정되나, 주나 다른 기관을 통한 개정안의 체계적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조사되었다. SES-문서는 필요에 따라(예컨대, 법적 또는 기술적 규정들의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셋째, 관련 법적 근거, VKF-규정 및 SES-문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안(스프링클러에 관한 VKF-지침)은 현재 개정 중에 있으나, 개정안에도 법적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설치자들은 VKF-지침의 해석이 주마다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결국 실행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VKF-지침은 건물보험사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석여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의 여지로 인해 각 주마다, 사람에 따라, 심지어 한 주 내에서도 상이한 해석을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상이한 요구들이 결국 가격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프로젝트 실행 시작 전에 비용과 관련하여 때때로 잘못 산정되기도 한다. 또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고 설비들은 어떻게 설치되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VKF-지침에 대해 ①해석의 여지와 이로부터 기인하는 실행상의 차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하고, ②이를 위해 지침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확정해야 하며, ③언제, 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하고, 어떤 차단막, 문, 빗장, 비상등 등이 계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현재의 소방관련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 여러 서류양식들이 존재하고 VKF와 SES 사이의 관할구분이 부분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통일된 서식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워드문서와 엑셀문서의 병존은 사라져야 하고, 통일적인 서식을 PC에서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설문응답자들은 각종 서류 등을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전자서명이 승인되어야 행정부담경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계자들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서면(종이 형태로)으로 보는 것을 화면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디지털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설문에 응한 설계자들은 건물보험사가 설계절차와 건축절차의 영역에서 소방대책을 유익하게 안내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보험사의 소방 승인절차에서 사전상담과 같은 무료 상담을 하는데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건물보험사는 3개 주 모두에서 설문응답 설계자들로부터 도움이 되고 협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협력활동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곱째, 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자치단체의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전문지식의 결여가 설계자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자치단체들은 소방대책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건축승인 신청에서 소방대책 측면을 심사하는 것은 건축행정 담당자에게는 전체 건축신청 심사에서 지엽적인 부분일 따름이다. 이들은 건축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소방법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소방대책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심화시킬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건물보험사는 설계자들의 소방지침적·기술적 전문능력을 개선하고 이 영역에서 많은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4. 최적화 방안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부담감축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정보제공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행정부담감축조치를 고려하게 된다.

정보제공비용의 구성요소	가능한 행정부담 감축조치
시간경비	• (신청서, 보고서 등) 양식의 간소화 • 안내서, 지침서 등의 간소화 및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자문기회의 제공 • 전자정부 적용의 개편을 통한 데이터송부의 간소화(예 : 원자료를 남겨두어서 이러한 원자료를 다시 조사하거나 송부할 필요가 없도록 전자정부 적용을 개편하는 것) • 송부할 정보의 범위 축소(예 : 현존하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독자적인 자료나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송부할 정보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 우선적으로 등재된 정보의 통제에 정보제공의무를 집중시키는 것

정보제공비용의 구성요소	가능한 행정부담 감축조치
단 가	• (시간경비의 감축과 연계하여)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보제공의무의 복잡성을 감축시키는 것
사례건수	• 정보제공의무의 수범자의 축소(예 : 수범자를 대기업 또는 특정 규모의 기업에 제한하는 것 ; 정보제공의무의 예외 인정 등)
주기성	• 특정한 정보를 송부해야 하는 빈도의 감축(예 : 특정한 통계를 2분기별 또는 4/4분기별로 송부하도록 한 것을 연 1회 송부하도록 하는 것)

스위스 소방법령에 대한 행정비용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은 행정비용부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인 소방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한데서 비롯한다. 소방영역에서의 행정부담 최적화를 위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제안들의 대부분은 실무적인 측면과 깊이 연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뷰대상자들은 VKF-지침 및 SES-기술문서들에 관한 통일되지 않은 해석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 지침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실무영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행정비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적화방안으로서, 다

양한 서식과 증명서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웹포탈 사이트를 개설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를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더 이상 서식을 검색하고 주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또한 서식의 비통일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방분야에서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행정부담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특히 실제 비용과 계획상의 비용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행위자들은 행정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다.

- 인터뷰에서는 행정요구에 대응하는 담당자들이 별다른 문제점들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물품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요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이었던 3개 주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지 집행과 계획상의 요구들에서 나타났다.

-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여러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VKF-지침과 SES-지침들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해석이 지적되었다. 정의와 개념에 대한 통일된 해석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자(Akteure)들의 업무, 특히 주의 상급 차원에서의 업무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의미있는 최적화는 공공조달에 관한 정보체계의 모범사례(www.simap.ch)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Ⅳ. 시사점

일반적으로 소방법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소방법제는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자유 제한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구비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게 하고, 인화성·발화성이 있는 위험물의 사용, 취급 및 저장에 관해 관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법제에서 도출되는 일정한 의무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정당화된다.

첫째, 사전예방의 원칙(Vorsorgeprinzip)이다. 이 원칙은 행위주체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이들이 가능한 위험방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의 기초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원리이다. 소방대상물에 대해 법령에서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전예방원칙을 소방법이 법원칙으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사전예방원칙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소방법에서는 원인자책임의 원칙(Verursacherprinzip)이 지배한다. 이는 누가 소방대상물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제거 및 손실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원칙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 및 환경의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피해의 방지와 제거 및 손실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 소

방대상물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또는 안전성검사서의 작성과 검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셋째, 소방법에서는 협동의 원칙(Kooperatonsprinzip)이 지배한다. 이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협동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소방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고, 경제와 사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관련된 모든 집단이 공동으로 협력할 때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존하는 위험을 국가가 상시 감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방대상물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민 등과 같은 사회분야에 속하는 일반인도 국가와 같이 협동하는 경우에 비로소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재로부터 안전성확보는 국민과 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참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협동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업무수행에서 두 가지의 작용방향을 설정한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행정기관과 개인에게 협동의 의무를 지우게 된다. 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책임으로 방화관리자를 법률이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상주하게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물론 방화관리자의 고용의무는 국가와 사회간의 협동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방대상물의 조직내적인 의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협동의 원리는 비용귀속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화재의 예방과 조기진압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에 의한 공동비용부담(gemeinschaftliche Kostentrage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검토대상이 된 스위스 3개주의 소방법에 관한 행정비용 측정에서도 화재안전과 화재로 인한 손실방지의 보호라는 소방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소방법령상의 규제비용은 비용-편익 관계에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측정결과에서는 3개 주의 소방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이 특별히 높지는 않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소방법분야에서 주된 비용유발원인은 각종 기술설비들에 대한 설비계획, 설치, 점검수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상 요구의 수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주별 정보제공의무들을 비교해보면, 위의 기술설비의 설치나 점검 또는 유지 등에 따른 각종 검사 등에 있어서 협조의무(Kooperationspflichten)가 시간 및 비용을 상당히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스위스의 경우 소방영역에서의 각종 기술설비의 설치, 검사, 관리 등에 관해서는 일종의 민간기준이라 할 수 있는 주화재보험협회(VFK)의 소방지침(Brandschutzrichtlinien), 스위스 안전설비업자조합(SES)의 기술지침(Technische Richtlinien) 등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소방법령과 일체가 되어 각종 소방설비의 설치, 점검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인허가절차, 신고 또는 증명,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종 지침에 규정된 일련의 절차는 대부분 3개 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등 각 주마다 약간씩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양식, 범위 그리고 내용도 약간씩 다르다. 또한 3개주의 규모(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숫자나 영업장 내지 사업장의 숫자 등)에 따라

의무 이행의 강도나 밀도도 약간씩 다르다. 따라서 이들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의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어서 소방허가의 신청에서 허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은 3개 주가 대체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소방허가는 대부분 건축주 및 건물주와 이와 관련된 기업들(중소기업을 포함한)을 대상으로 하나,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외부전문가들인 전문설계사를 이용한다. 따라서 건축주가 이들 외부전문가에게 소방허가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스위스에서는 소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건축주 또는 기업등으로부터 소방허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전문설계사)와 해당 행정기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다. 사전협의는 소방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허가 행정기관의 서비스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종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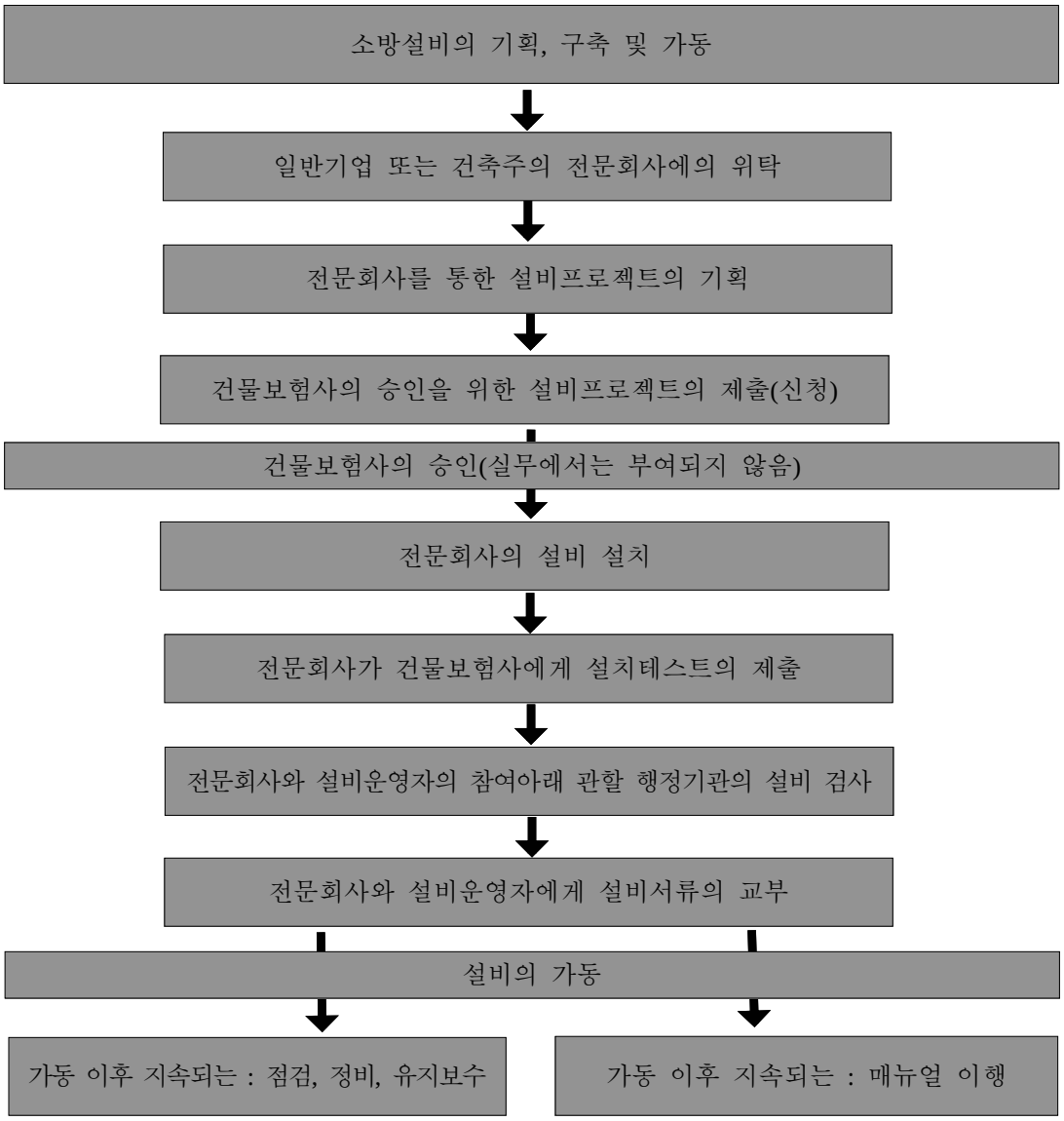

한편 우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그 밖에 전기 분야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가스 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건축 분야의 「건축법」(「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포함), 「주택법」 등에서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사항은 엄격하게 말하면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소방규제가 엄격할 경우에는 기업, 건축주, 영업주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는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소방분야규제는 규제수준의 합리화가 쟁점이 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스위스 소방법령에 관한 행정비용측정기법은 우리의 소방분야규제 수준의 합리화를 가름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방법령의 입법체계, 내용 및 각종 소방설비의 설치 등 절차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방법령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동일하므로 이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우리도 소방법령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그 비용을 측정하는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에는 민간의 기술기준이 소방법령과 연계되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 점이 우리와 다른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럽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굴뚝청소부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단순히 건축물의 굴뚝을 소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하에 일반적 화재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예컨대, Luzern주 소방법에서는 모든 건물은 최소한 1년에 한번 굴뚝청소부를 통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와는 다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위스 소방법령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 측정결과, 이해당사자들은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고, 효과적인 소방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 행정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소방행정을 규제라고 보기보다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고, 또한 소방관련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자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면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Eidgenössisches Volkswirtschaftsdepartement EVD/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Kantone Aargau, Luzern und St. Gallen, **Standardkostenmodell im Bereich Brandschutz. Abschlussbericht**, 2009.12.

-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Bericht der Bundeskanzlei zur Zukunft von www.ch.ch.**, Bern, 2006.1. (http://www.bk.admin.ch/dokumentation/publikationen/00293/index.html?lang=de.)

- Schweizerisches Bundesarchiv(Hrsg.), **Bericht des Bundesrates über Maßnahmen zur Deregulierung und administrativen Entlastung,** 1999.11.3. (http://ww.amtsdruckschriften.bar.admin.ch/.)

- Schweizerischer Bundesrat, **Bericht des Bundesrates zu Maßnahmen des Bundes zur administrativen Entlastung in den Unternehmen**, 2003.6. (http://www.admin.ch/ch/d/ff/2003/5999.pdf.)

- Schweizerischer Bundesrat, **Botschaft zum Bundesgesetz über die Aufhebung und die Vereinfachung von Bewilligungsverfahren(“Vereinfachung des unternehmerischen Alltags”)**, 2006.12. (http://www.newsservice.admin.ch/NSBSubscriber/message/attachments/5186.pdf)

- SECO, **Verwendungsmöglichkeiten des SKM. Ene Analyse des schweizerischen Kontexts Studie**, 2007.9.

- _____, **Analyse der internationalen Erfahrungen zur Anwendung des SKM und Implikationen für die Schweiz**, 2007.9.

- _____, **Messung der Bürokratiekosten der MWST-Gesetzgebung auf Basis des SKM**, 2007.9.
- _____, **Messung der administrativen Belastung durch den Lohnausweis mit Hilfe des SKM**, 2008.12.

[부 록]

소방영역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관한 최종보고서

(Standardkosten-Modell im Bereich Brandschutz)

2009.12

연방경제부

(Eidgenössisches Volkswirtschaftsdepartement EVD)

경제사무국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목 차]

[약 어] 77

1. 요약문 79

2. 서 론 85
   2.1 연구배경 85
   2.2. 연구목적 87
   2.3 연구범위와 대상 88

3. 프로젝트 개시 및 경과 91
   3.1 방법론 91
      3.1.1 방법 - 표준비용모델 91
      3.1.2 벤치마킹 도구로서의 표준비용모델 95
      3.1.3 방법론적 문제제기 97
      3.1.4 프로젝트관련 결정 98
   3.2 프로젝트 수행 99
      3.2.1 프로젝트 구조 99
      3.2.2 프로젝트 설계/진행 99

4. 법 및 절차분석 결과 113
   4.1 주별 정보제공의무의 비교 114
      4.1.1 자치단체 소방허가 분야 114

4.1.2 주 소방허가 분야 ····· 116
4.1.3 연소장치 분야 ····· 128
4.1.4 정기 화재안전점검 분야 ····· 134
4.1.5 굴뚝청소부 분야 ····· 136
4.1.6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분야 ····· 138
4.1.7 결 론 ····· 140

4.2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의 비교 ····· 141
4.2.1 건축/영업상 소방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 143
4.2.2 기술적 소방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 145
4.2.3 옥내 기술장비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 158
4.2.4 결 론 ····· 160

5. 측정결과 ····· 163
5.1 총부담의 비교 ····· 163
5.2 각 주별 비용집약적 정보제공의무 Top 5 ····· 167
5.3 주의 소방허가승인 신청으로 인한 부담의 비교 ····· 171
5.4 VKF/SES-정보공개의무로 인한 부담의 비교 ····· 177
5.4.1 화재경보기 영역에서의 행정부담 ····· 178
5.4.2 스프링클러 영역에 있어서 행정부담 ····· 181
5.4.3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의 개별단가 대비 ····· 185
5.4.4 가스누설 경보기에 있어서 행정부담 ····· 187
5.4.5 낙뢰방지기에 있어서 행정부담 ····· 189

6. 질적 설문조사 및 최적화 결과 ····· 193
6.1 질적 설문조사로부터 나오는 여론 ····· 193

6.2 최적화 ····· 204

7. 결 론 ····· 209

8. 부 록 ····· 213

8.1 부록 1 : 3개주의 비용표 ····· 213

8.2 부록 2 : 주 상호간 행정부담 비교 ····· 236

8.3 부록 3 :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의 측정관련성 ····· 242

[표목차]

[표 1] 규율차원에 따른 총 부담 ····· 81

[표 2] 기업 및 평균적 행정부담 ····· 82

[표 3] 조사대상 3개 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정보제공의무 ····· 82

[표 4] 연구대상 개관 ····· 89

[표 5] 보충적 문서 개관 ····· 101

[표 6] 신청서식 개관 ····· 102

[표 7] 임금표 개관 ····· 106

[표 8] 참여한 행위자들과 인터뷰의 수 ····· 110

[표 9] 정보제공의무 “자치단체 소방허가” ····· 115

[표 10] 정보제공의무 “주 소방허가” ····· 116

[표 11] “소방허가” 비교 ····· 127

[표 12] “연소장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 128

[표 13] 정기 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 134

[표 14] “굴뚝청소부” 정보제공의무 ····· 137

[표 15] 개별 주의 정보제공의무 ····· 139

[표 16]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의 분류와 개수 ····· 142

[표 17] “규율영역”에 따른 총부담 ····· 164

[표 18] 1개 기업당 평균 행정비용 ····· 164

[표 19] 규정별 전체총액 ····· 165
[표 20] Aargau주 정보제공의무 Top 5 ····· 167
[표 21] Luzern주 정보제공의무 Top 5 ····· 169
[표 22] St.Gallen주 정보제공의무 Top 5 ····· 170
[표 23] 주의 소방허가승인 신청으로 인한 부담의 비교 ····· 172
[표 24] 분석형태와 규정에 따른 행정부담 ····· 177
[표 25] 화재경보설비에서의 행정부담 ····· 179
[표 26] 주별 화재경보 설비 ····· 180
[표 27] 스프링클러 영역에 있어서 행정부담 ····· 181
[표 28]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의 개별단가 대비 ····· 185
[표 29] 가스누설 경보기에서의 행정부담 ····· 188
[표 30] 낙뢰방지기에 있어서 행정부담 ····· 189
[표 31] 최적화방안: 포털 사이트 설치 ····· 204

[그림목차]

[그림 1] 표준비용모델 ····· 92

[그림 2] 프로젝트 설계 ····· 99

[그림 3] Aargau주 소방허가 전체절차 ····· 121

[그림 4] Luzern주 소방허가절차 ····· 123

[그림 5] St.Gallen주 소방허가절차 ····· 126

[그림 6] Aargau주의 연소장치 절차 ····· 131

[그림 7] Luzern주의 연소장치 및 제연설비 과정 ····· 133

[그림 8] 기술적 소방안전의 기본적 정보제공의무 과정 ····· 145

[그림 9] 기술적 소방안전의 정보제공의무 개관 ····· 146

[그림 10] 옥내기술장비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 159

[약 어]

A	Anschaffung(구매)
Abs.	Absatz(항)
AFS	Amt für Feuerschutz(소방청)
AG	Aargau(Aargau주)
AGV	Aargauische Gebäudeversicherung(Aargau주 건물보험사)
Art.	Artikel(조)
AWA	Amt für Wirtschaft und Arbeit(경제노동청)
BKZ	Baugesuchskoordinationszentrale(건축신청조정센터)
BSN	Brandschutznorm(소방기준)
BS-RL	Brandschutz-Richtlinie(소방지침)
BSV	Brandschutzverordnung(소방법 시행령)
CHF	Schweizer Franken(스위스 프랑)
EU	Europäische Union(유럽연합)
ETH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schule Zürich(Zürich 공과대학)
EVD	Eidgenössische Volkswirtschaftsdepartment(연방경제부)
F	Periodizität(빈도)
FSG	Feuerschutzgesetz(소방법)
GVL	Gebäudeversicherung des Kantons Luzern(Luzern주 건물보험사)
H	Zeit(시간)
IP	Informationspflicht(정보제공의무)
IPen ggü. Dritten	Informationspflicht gegenüber Dritten(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IP Nr.	Informationspflichtennummer(정보제공의무번호)
KMU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중소기업)
kW.	Kilowatt(킬로와트)

lit.	Buchstabe(참조)
LU	Luzern(Luzern주)
MwSt.	Mehrwertsteuer(부가가치세)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	Kosten pro Verwatlungstätigkeit(행정활동당 비용)
Q	Jährliche Anzahl der Verwaltungstätigkeit(연간 행정활동 수)
RWA-Anlagen	Rauch- und Wärmeabzugsanlagen(연기 및 열통풍설비)
SECO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경제사무국)
SES	Verband Schweizer Errichter von Sicherheitsanlagen(스위스 안전설비업자 조합)
SG	St.Gallen(St.Gallen주)
SKM	Standard-Kosten-Modell(표준비용모델)
T	Tarif(임금)
TR	Technische Richtlinie(기술지침)
Vgl.	Vergleiche(비고)
VKF	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erung(주 화재보험협회)
WB	Weisungsblatt(지침서)
Zif.	Ziffer(호)
ZertES	Bundesgesetz über die elektronische Signatur(연방전자서명법)

1. 요약문

OECD는 2006년 스위스의 규제정책개혁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Best Practice를 활용한 '벤치마킹' 수단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어느 한 정책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인지하기 위해서는 연방주의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각 주정부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경제사무국(SECO)과 Aargau주는 다른 2개 주의 참여하에 -Luzern주와 St.Gallen주- 행정비용측정을 위한 시범사업(Pilot-projekt)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적 및 관료주의적 장애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력은 2008-2010까지 3개년을 위한 연방정부(Bundesrat)의 경제성장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행계획(Aktionsplan)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연방정부만이 독자적인 권한하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다. 그 외에도 경제정책과 더불어 현재 경제성장잠재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주정부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정부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대상은 소방법(Brandschutzrecht)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분야는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이면서도, 개별 주법령간의 협력과 주화재보험협회(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erungen : VKF)의 소방규정도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부분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 SKM) 적용을 이용한 관료비용의 측정과 더불어 소방안전의 행정영역에서의 절차를 분석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3개 주 상호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수사례(Good Practices)를 강조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최적화하려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차원에서 관료비용측정을 위한 SKM은 지난 2007년

부터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주정부차원에서의 적용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범 및 절차분석

법령분석을 통해 총 137개의 정보제공의무를 유발하는 조항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유발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argau주의 소방법령 : 17개 정보제공의무
- Luzern주의 소방법령 : 13개 정보제공의무
- St.Gallen주의 소방법령 : 18개 정보제공의무
- VKF-규정 : 62개 정보제공의무
- SES-문서 : 27개 정보제공의무

절차분석의 결과를 보면 3개 주의 소방법규범은 유사하게 조직화되어 있으며, 상위 구조와 절차 등도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개 주간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시행상의 차이라는 점이다. 각 개별 주들은 서로 다른 서식을 이용하고 허가(Bewilligungen), 승인(Abnahmen), 통제(Kontrollen)를 위한 요구조건들도 각기 다르다. 이는 시간적 경비(Zeitaufwand)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부담으로 귀결된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직접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측정하는 표준비용모델의 방법에 따른 결과는 바로 행정부담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2. 행정부담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업들과의 인터뷰와 전문가들의 추산을 통해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시간적 경비와 비용변수(Kostenparameter)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는 행정부담을 각 규율차원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규율차원에 따른 총 부담

규율차원	행정부담(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 법령	679,217	352,363	992,910
VKF-소방지침	645,169	541,958	638,347
SES-기술문서	217,101	375,086	484,887
총비용	**1,550,487**	**1,269,407**	**2,116,145**

위의 표는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이 낮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소방계획 부분과 비교하여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명확해 진다. 내용상 의무로 분류되는 계획상의 비용은 전체 건축비용의 2-3%를 차지한다.

St.Gallen주는 가장 높은 행정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부담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사례수(Fallzahlen)에 기인한다. 조사대상인 3개 주 사이에는 기업의 수 또는 영업장(Gewerbeeinheiten) 등과 관련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다수의 기술적인 소방설비(Brandschutzanlagen) 및 화재경보설비(Brandmeldeanlagen)등이 존재한다. 또한 각 주별로 기업의 총수에 비례하는 절대적인 행정부담을 측정해본다면, 개별 기업당 행정부담의 수준은 St.Gallen주가 가장 높다.

[표 2] 기업 및 평균적 행정부담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별 기업의 수	23,022	13,320	19,167
주별 화재경보설비의 총 수	1,068	1,750	2,370
개별 기업당 평균적인 행정부담(CHF)	**67.3**	**95.3**	**110.4**

3개 주에서 비용강도가 높은 정보제공의무는 안전조명등(Sicherheits-beleuchtung)과 안전전원공급을 위한 매뉴얼(Kontrollbuch)의 운영이 다른 의무조항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표 3] 조사대상 3개 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의무	행정부담 (단위: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안전조명등과 안전전원공급을 위한 매뉴얼 운영	447,871	260,390	374,962

위의 정보제공의무는 St.Gallen주에서는 전체 행정부담의 18%, Luzern주에서는 20% 그리고 Aargau주에서는 30%에 가까운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130,000에서 220,000에 이르는 높은 사례수에 때문이며, 개별단가(Stückkosten)는 대략 2 스위스프랑 정도로서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최적화와 결론

최적화를 위해 조사범위안에서 수집된 제안들의 대부분은 실제적(materielle)인 요청과 실행측면과 깊이 연관된다. 특히 인터뷰대상자들은 VKF-지침 및 SES-기술문서들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해석들을 지

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참여한 행위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규정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이 실행분야에서 가장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점인 것 같다.

행정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적화방안은 다양한 서식과 증명서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웹포탈/홈페이지(Webportal)를 개설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서비스를 통해서 행위자들이 더 이상 서식을 찾고 주문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서식의 비통일성으로 인한 비용을 변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업무는 간소하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소방분야에서의 행정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특히 실제 비용과 계획상의 비용과 비교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렇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 행위자들은 행정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 문제점들은 오히려 계획영역과 실행에서 보여진다.
- 인터뷰는 행정요구에 대응해야하는 담당자들은 어떤 문제점들도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물품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 요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조사대상이었던 3개 주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단지 집행과 계획상의 요구들에서 나타났다.
-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여러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VKF-지침과 SES-지침들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해석이 지적되었다. 정의와 개념에 대한 통일된 해석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자(Akteure)들의 업무, 특히 주의 상급 차원에서의 업무를 단순화시킬 것이다.
- 행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의미있는 최적화는 공공조달에 관한 정보체계의 모범사례(www.simap.ch)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일 것이다.

2. 서 론

2.1 연구배경

법규범은 사회 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규범에 포함된 명령과 금지는 사회와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법적 부담의 비중여부가 기업의 소재지 선정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료주의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상은 정치적 아젠다에서 높은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더 나은, 효율적인 입법을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행정부담을 철폐시키기 위해 비용유발자와 비용유발원인을 투명성있게 규명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보고의무, 신고의무, 문서작성의무 등과 같은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spflicht)가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상당한 비용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내용상 의무(화재위험경보시설이나 스프링클러 시설의 설치 및 정기점검을 위한 의무 등)와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규율의 정책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변경가능하다.

행정비용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은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경제부문에 대한 행정부담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정확한 정보비용과 비용발생원인 그리고 비용유발자의 식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도구가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 SKM)이라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이 성공한 것은 비용과 편익에 관한 논의를 분리한 것에 의거한다. 법규정상의 어떤 정보제공의무가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는가를 밝혀내지만, 정보제공의무의 편익에 관

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측정 결과는 조사대상 법규범으로부터 유발되는 비용과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감가능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몇 년전부터 표준비용모델을 전체법령을 대상으로 한 기초측정(Basismessung)으로서 또는 개별 정책 및 법영역에 초점을 두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은 개별 회원국들의 행정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1)]

스위스의 경우 표준비용모델은 연방차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연구로서 경제사무국(SECO)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급여증명제도(Lohnausweis)분야에서 두 차례의 표준비용모델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주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은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았다.

스위스의 광범위한 연방주의적 권한배분은 주정부의 정책실현에 있어서 다양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OECD는 2006년 스위스의 규제정책개혁에 관한 보고서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에 대응하는 벤치마킹 도구를 권고하였다. 연방주의의 특징에서 비롯하는 해결방안의 다양성은 체계적인 관점에서 주가 특정된 정책분야에서 성공적인 해결책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별 주의 여건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이런 맥락에서 SKM을 이용한 관료비

---

1) 예컨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행동프로그램(Aktionsprogramm zur Reduzierung von Verwaltungslast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참조.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better-regulation/administrative-burdens/index_de.htm. 또한 “운송분야 EU입법 벤치마킹 : 폴란드, 네덜란드(Benchmark Transport EU Legislation. Poland - The Netherlands, 2005)” 참조.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filesystem/2006/01/endreport_transport_benchmark_pol-nl_v4_final_192.pdf.

2) OECD, Country Studies, Switzerland -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Regulatory Reform 2005, OECD 2006.

용 측정의 결과는 다수의 주에게 단초를 제공한다.

행정적 및 관료주의적 장애요소들의 철폐와 측정을 위한 연방과 주의 협력은 연방정부(Bundesrat)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제성장 정책과 조화를 이룬다. 이를 위한 실제 행동계획은 연방정부의 단독 권한으로 그 조치를 의회에 제출할 수는 없다. 경제정책과 현재의 성장잠재력의 이용을 위해서 주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3)]

이러한 이유로 경제사무국은 Aargau주와 함께 소방(Brandschutz) 분야에서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Aargau주 외에 2개의 주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주차원에서 SKM을 최초로 적용한다는 점 외에도, OECD의 권고와 유사하게 우수사례(good practice)를 확인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체적인 간소화 제안들과 최적 잠재력의 강조를 허용했다는 점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대상을 소방법으로 정한 이유는, 소방법이 주의 관할에 속하지만, 각 주의 법령과 주화재보험협회(VKF)의 소방규정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부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분야의 법령을 선정한 결정은 기업에 의한 소방 업무는 상당한 비용유발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 분야는 확실히 다른 분야들과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2.2. 연구목적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선,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등 3개 주를 대상으로 소방법상의 법적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부담을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방법 분야에서 주 상호간의 절차와 집행과정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3)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Wachstumsbericht 2008 ; provisorische Fassung vom 31. März 2008, aktualisiert 2. April 2008.

보다 특별한 목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측정 및 주 상호간의 비교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위한 제안과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고, 가능하다면 비용효과는 수치로 추계하도록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한 비용측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사항은 이 프로젝트의 조사대상과 이 프로젝트와 동시에 진행되는 취리히 공과대학(ETH)의 학술 연구[4]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정보제공의무와 내용상 의무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취리히 공과대학의 연구에서 소방조치들에 대한 비용효율성을 조사한 목적은 소방법령의 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2.3 연구범위와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3개 주의 현행 소방법이다. 소방안전을 위한 개별 주들의 법률 및 이를 구체화한 법규명령(Verordnung)외에, 주화재보험협회(VKF)의 소방지침(Brandschutzrichtlinien)과 스위스안전설비업자조합(SES)의 기술지침(Technischen Richtlinien)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VKF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예방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주의 건물보험사(Gebäudeversicherungen)서비스 및 관리기관이다. 주의 소방청은 이 기관에게 스위스내에서의 소방분야의 조정과 통일을 도모하고, 유럽연합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VFK는 유럽규격에 상응한 소방설비 자격자를 인정하는 인증기관이기도 하다.[5]

---

4) 연구주제 : 소방에서의 경제적 최적화(Wirtschaftliche Optimierung im vorbeugenden Brandschutz)

5) http://www.kgvonline.ch/info.asp?pid=7&p=27.

VKF의 주요 소방규정은 소방기준(Brandschutznorm)과 18개 주제별에 따른 소방지침(Brandschutzrichtlinien)으로 구성되며[6], 건물과 시설의 소유자 및 이용자와 이러한 건물과 설비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소방기준은 소방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구조적·기술적 사항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이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지침은 소방기준에서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보충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각종 조치들을 정하고 있다.[7]

SES는 스위스내에서 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이다. SES가 편집한 기술지침은 첨단 기술문서(Stand-der-Technik-Papiere)로서, VKF-지침을 보완한다. 특히, SES-지침은 VKF 규정들과는 달리 주의 소방규정에 구속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술의 현황으로서 3개 주의 건물보험사(Gebäudeversicherung)에 의해 인정되고 적용된다.

다음의 표는 연구대상에 대해 최종적으로 개관한 것이다.

[표 4] 연구대상 개관

작성기관	번 호	제 명
Aargau주	585.110	소방법(Brandschutz)
Aargau주	585.113	소방법 시행령
Luzern주	740	소방법(Gesetz über den Feuerschutz)
Luzern주	740a	소방법 시행령
St.Gallen주	871.1	소방법(Gesetz über den Feuerschutz)
St.Gallen주	871.11	소방법 시행령
VKF		소방기준(Brandschutznorm)

6) 여기에는 포함되는 것은 증명(Zertifizierung)과 허가(Zulassung)를 받기 위해 필요한 소방시설의 심사를 위한 절차 및 조건들(Voraussetzungen) 등의 검사규정(Prüfbestimmungen)과 실행을 위한 VKF의 소방해석, 그리고 이용 및 주제와 관련된 실행설명서(Arbeitshilfe)(연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이다.

7) Aargau주 소방법 시행령 제9조 ; Luzern주 소방법 시행령 제3조 ; St.Gallen주 소방법 시행령 제7조.

작성기관	번 호	제 명
VKF	11-03	소방지침 - 화재예방, 건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
VKF	12-03	소방지침 -건축자재 및 부품(Baustoffe und Bauteile)
VKF	14-03	소방지침 -구조물(Tragwerke)
VKF	16-03	소방지침 -피난 및 구조통로(Flucht- und Rettungswege)
VKF	17-03	소방지침 -피난통로표시,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
VKF	18-03	소방지침 -소화기구(Löscheinrichtungen)
VKF	19-03	소방지침 -스프링클러설비(Sprinkleranlagen)
VKF	20-03	소방지침 -화재경보기(Brandmeldeanlagen)
VKF	21-03	소방지침 -가스누설경보기(Gasmeldeanlagen)
VKF	22-03	소방지침 -연기 및 열통풍설비(Rauch- und Wärmeabzugsanlagen)
VKF	23-03	소방지침 -낙뢰방지기(Blitzschutzanlagen)
VKF	24-03	소방지침 -승강기(Aufzugsanlagen)
VKF	25-03	소방지침 -열순환설비(Wärmetechnische Anlagen)
VKF	26-03	소방지침 -환기설비(Lufttechnische Anlagen)
VKF	27-03	소방지침 -위험물(Gefährliche Stoffe)
VKF	28-03	소방지침 -인화성액체(Brennbare Flüssigkeiten)
SES		기술지침 -스프링클러설비(Sprinkleranlagen)
SES		기술지침 -가스누설경보기(Gasmeldeanlagen)
SES		기술지침 -화재경보기(Brandmeldeanlagen)

3. 프로젝트 개시 및 경과

이 장에서는 우선 프로젝트의 기본이 되는 방법론인 표준비용모델을 소개하고 이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경과를 기술한다.

3.1 방법론

3.1.1 방법 - 표준비용모델

행정부담의 측정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로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제적인 입문서인 “국제 표준비용모델 매뉴얼(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aul)”[8]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계의 비용만을 조사한다.
2. 해당 규율의 편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
3. 기업들간의 효율성 차이는 표준화된 절차, 즉 극단적으로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절차는 조사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을 통해 필터링을 한다.

비용 측정은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발생되는 시간비용 뿐만 아니라, 구매비용(예컨대, 특정 물품이나 IT소프트웨어, 우편료 등)과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 활용 등 외부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예컨대, 각 주별로 소방허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 등은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측정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비용

8) http://administrative-burdens.com/default.asp?page=140.

이라기 보다는 재정비용(finanzielle Kosten)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재정비용이란 규율의 내용에 기인하는 비용으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강조되는 점은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소방법상의 비용측정은 법적 의무의 준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비용들, 즉 상응하는 법률의 규정없이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들은 관료주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측정대상이 아니다.

다음의 산정모델은 표준비용모델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개관에 관한 것이다.

[그림 1] 표준비용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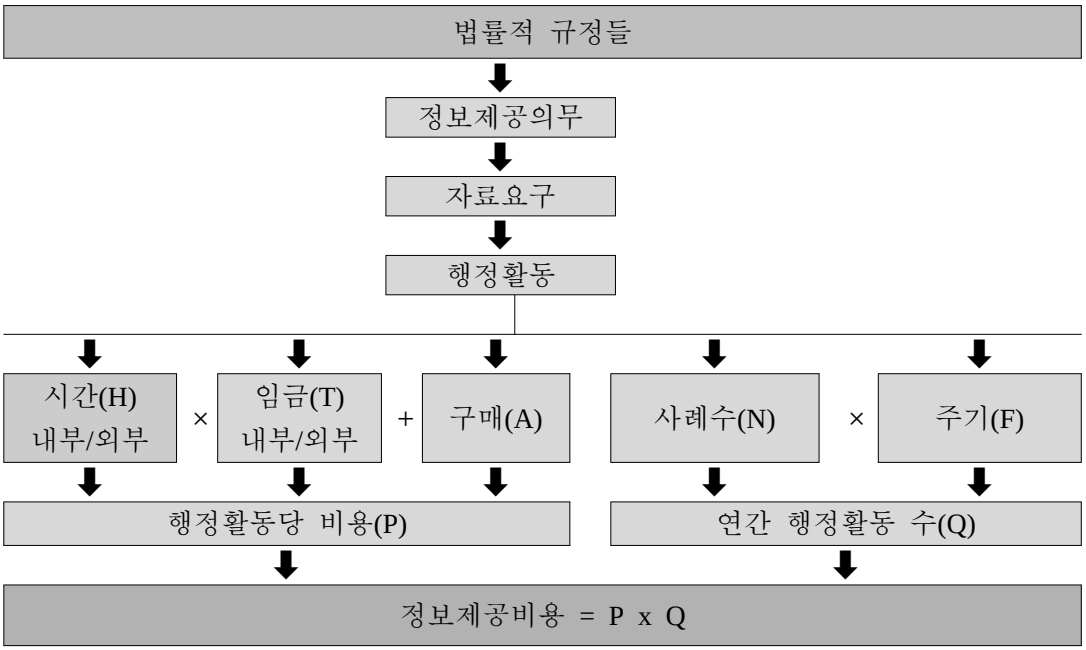

연구대상인 소방분야에서는 소방법에 규정된 모든 정보제공의무와 이에 속하는 자료요구(Datenanforderungen)들이다.

SKM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의 준비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의무를 지칭한다. 정보제공의무는 어떤 정보가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사나 검사만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9] 정보제공의무는 특히, 의무유형에 따라 분류된다.[10]

모든 정보제공의무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자료요구들로 구성된다. 자료요구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되고, 수집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개별적인 "자료군(Datenpakete)"들로 표현된다. 예컨대,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 신고(Anträge)
- 증명(Nachweise)
- 보고(Mitteilungen)
- 특정한 사안에 관한 진술(Angabe zu bestimmten Sachverhalten)

자료요구와 그에 수반되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기업들은 특별한 활동들을 수행해야 한다. SKM 측정의 범주에서 이는 표준활동(Standardaktivitäten)[11]을 이용하여 소위 표준절차(Standardprozess)를 설정한다. 표준절차는 자료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며, 하나 또는 다수의 표준활동들로 구성된다. 시간비용에

9) 국제표준비용모델 입문서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 :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 IO)란 공공부문이나 제3자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규제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무이다. 정보제공의무는 정보가 공공기관이나 사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청이 있다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될 수 있다.

10) EU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에 따른 의무유형은 국제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와는 다르다. EU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에 따르는 의무유형은 : 신고 및 등록의무, 증명 또는 보고의무, 허가 또는 승인신청, 동의신청,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 제3자에 대한 비통지의무, 운영상의 긴급계획의 작성과 업데이트.

11)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표준비용모델 입문서가 아닌 EU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에 따라 13개의 표준활동을 이용한다.

대한 측정은 각각의 표준절차마다 이루어진다. 특히 각각의 활동들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질적 수준)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기초해서 임금표(Tarif)를 작성하는데, 시간단위당 비용과 곱하여 개별 정보제공의무당 비용이 산출된다. 특정 활동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시간당위당 비용의 산출을 위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외부전문가의 비용산정을 위해서는 외부임금표를 이용한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구매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단위당 비용은 종류와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SKM 측정을 위해서는 이를 기업속성에 따라 구별해야하고, 각각의 속성별로 따로 조사해야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관료비용의 조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수량변수(Mengenparameter)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들을 위해 매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행되는지(주기)와 매년 어느 정도의 사례가 발생하는지(사례수), 즉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격(Preis) = 임금(Tarif) × 시간(Zeit) + 구매비용

빈도(Häufigkeit)= 사례 수 × 주기

이러한 SKM을 이용해 산출된 비용자료는 대표성에 관한 요구에 부응하지는 못한다. 아마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된 비용자료들은 각각의 규율에서 발생된 비용 규모를 정확하게 묘사하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조사대상인 3개 주(Aargau, Luzern, St. Gallen)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Werte)으로 이용할 수 있다.

3.1.2 벤치마킹 도구로서의 표준비용모델

벤치마킹 도구로서 표준비용모델의 효용은 연구의 일관성에 관한 특별한 요구에 있다. 3개 주사이에서 나타나는 비용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3개 주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1. 차이는 우선 정보제공의무를 발생시키는 각 주들의 법규정들에 기인하는데, 3개 주간에 정보제공의무의 수, 양식, 범위 그리고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확인된 정보제공의무의 숫자에서 차이를 이끌어내는 모든 정보제공의무가 3개 주들의 규정에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자료요구들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즉 어느 주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개의 증빙서류만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서류가 3개 또는 4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차이는 정보제공의무와 자료를 요청하는 양식, 범위 그리고 내용과도 관련하여 발생한다. 예컨대, 범위상의 차이 즉, 얼마나 우수한 성능(Leistungsstärke)을 가진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은 일반적으로 사례수의 차이를 유발한다.

2. 다른 한편 이러한 차이는 정보제공의무의 실행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서양식, 서로 다른 제출서류의 수, 다양한 감독방식 등은 서로 다른 절차들과 행정부담을 발생시킨다.

3개 주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비용을 계산하며, 표준화하고 산정하여 프로젝트 말미에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각각 중요한 프로젝트 단계별로 주상호간 비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규범분석단계에서는 3개 주들의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와 관련한 법적 차이를 분석하였다(제1차 주 상호간 차이분석). 공통요소와 이러

한 요소로 인해 결정적으로 측정가능한 요소들, 그리고 특정 주에서만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측면들의 분배는 관련한 정보수집의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수행되었다. 주차원을 넘어서는 법률분석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다. 또한 추후에 비용치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법적인 차이는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이는 주차원에서 실행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참여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찰될 수 있는 특별한 점들을 위탁자의 양해아래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제2차 주 상호간 차이분석). 또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내부적 절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여러 행정기관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SKM을 통한 측정을 위해 통상적인 과정인 전문가 또는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조사하는 절차보다, 자료수집이전에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쳤다. 기업들의 관점, 주 및 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주화재보험협회 그리고 소방전문가들의 대표자는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차이점들의 분석은 절차의 조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법적 차이점과 절차의 차이는 비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유발자에 대한 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제3차 주 상호간 차이분석).

이상 언급한 각 주들간의 차이에 대한 3단계의 분석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 SKM을 통한 비교프로젝트의 경과과정, 특히 자료수집의 단계에서 비교를 위해 재검증이 요구되는지 아닌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번 비교과정을 통해 유념해야 할 점은 SKM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표준화된 절차의 결과로 나타나는 표준비용을 이용해 계산하

는 하나의 모델이다. 담당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특성에 따른 관리활동 등 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실행상의 차이는 표준화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각각의 경우는 질적인 서술의 형태로 반영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비용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3.1.3 방법론적 문제제기

계획법 및 질서법의 구성요소로서, 소방법은 내용적으로 그리고 정보제공의무상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고, 경상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양한 가치는 엄밀하게 구분한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는 구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특히 소방허가절차와 소방계획수립(Brandschutzkonzept)과 관련된 사례들은 더욱 그렇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정보의 생산과 생성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허가신청절차는 건축허가절차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 계획(Vorhaben)의 검토를 위해 허가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들은 단지 허가절차를 위해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보들은 통합적인 계획의 구성요소이며,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아야하며, 문서비용과 계획에 제공되는 비용도 그러하다. 그러나 문서비용(Dokumentationsaufwand)을 계획비용과 분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먼저 계획을 종료한 다음에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 협력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화할 수 없는 소방계획수립을 위한 문서비용은 제외하고, 단지 정보의 선별을 위한 비용(예컨대, 수집, 선별 및 복사 등)과 허가관청으로 정보를 발송하기 위한 비용만을 계산한다.

소방법은 특히 행위자들의 전문적인 높은 자질요구를 포함한다.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볼 때 언급된 법령들은 대부분 건축주 및 건물주와 이와 관련된 기업들(중소기업을 포함한)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의무의 이행을 위해 기업들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가들인 설계사 및 전문설계사를 이용한다. 건축주가 (최소한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다양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 비용은 설계사/전문설계사(Planern/Fachplanern)에 의해 소요된다. 보충적인 설명들은 다음 장인 프로젝트 설계/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4 프로젝트관련 결정

확인된 정보제공의무의 많은 숫자, 수범자의 다양성과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된 인터뷰 수들을 고려하여 법분석을 통해 확정된 측정대상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프로젝트 진행자들과 함께 다음에 제시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법분석안에서만 확인하고, 측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1.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이는 해당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준비가 아니라, 소비자나 이용자 등과 같은 제3자를 위해 요구되는 의무들이다. 소방법내에서는 무엇보다 탈출로, 비상구 및 금연 표지 등 표시의무가 중요하다.

2. 소방제품 및 회사의 인증(허가신청/소방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들은 작성자들에 의해 한꺼번에 VKF에 제출되므로 이 정보제공의무는 주 간의 비교와는 관련성이 적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에서 나타나는 낮은 사례수들도 이유가 되는데, VKF에 따르면 전체 신청서의 85%가 외국계 회사들이 신청한 것들이다.

3.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분석된 지침서(Merk- und Weisungsblätter)와 실행설명서(Vollzugshilfe)에 포함된 정보제공의무

3.2 프로젝트 수행

3.2.1 프로젝트 구조

3개 주의 소방법상 관료주의 비용의 측정과 비교는 “Rambøll management Consulting”이 수행하였다. 다양한 프로젝트 단계마다 요구되는 전문적인 투입을 위해서 소방분야에 특화된 회사인 AFC(Airflow Consulting)의 자문을 얻었다.

프로젝트 의뢰인은 경제사무국의 규제분석부서(Sektion Regulierungsanalyse), 경제정책부서(Direktion für Wirtschaftspolitik) 및 Aargau주의 내각사무처(Staatskanzlei), 경제부처, 지역발전청(Regionalentwicklung des Amts für Raumentwicklung), Luzern주의 경제지원 및 지리정보과(Wirtschaftsförderung und Geoinformation)와 St. Gallen주의 경제청(Amt für Wirtschaft) 등이다.

전문적인 질문과 특히, 집행절차 및 측정, 타당성을 위해 Aargau주의 건물보험사(AGV), Luzern주의 건물보험사(GVL) 그리고 소방청(Amt für Feuerschutz)등이 관여하였다.

3.2.2 프로젝트 설계/진행

다음의 그림은 프로젝트의 의도와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프로젝트 설계

단 계		내 용
단계 0	**프로젝트의 전개**	착수워크샵 개최
단계 I	**법규범 분석**	• 법률 분석
		• 보충적 문서분석

단 계		내 용
		• 제1차 주 상호간 질적 차이분석(정보제공의무)
단계Ⅱ	자료조사 준비	• 비용변수 측정
		• 절차 워크샵
		• 제2차 주 상호간 질적 차이분석(절차)
		• 인터뷰 계획 및 대상 기업 모집
단계Ⅲ	자료조사	• 기업 인터뷰 및 보충적인 전문가의견
		• 표준화
단계Ⅳ	자료사정	• 비용 산정
		• 제3차 주 상호간 질적 차이분석(비용)
단계Ⅴ	최적화	•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최적화제안의 정리
		• 필요한 경우 잠재적인 최적화 산정
단계Ⅵ	종 결	• 종결 워크샵 -결과에 대한 발표
		• 보고서 작성

전체 프로젝트 경과와 각 프로젝트단계마다의 기획은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2.2.1 단계 Ⅰ - 법규범 분석

측정의 기초는 구체적인 법규범분석을 설정하고, 법규범과 보충적 문서분석 및 제1차 주상호간 비교로 구성된다.

법률분석(Gesetzesanalyse)

법률분석단계에서는 연구대상에 속하는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주기성과 수범자에 대한 규범들과 지침들을 조사한다. 추후적인 절차 및 단계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표준비용모델 변수들외에도 모든 법규정으로부터 유발되거나 관계되는 모든 추가적인 사항 즉, 해당 관청(정보수령자/관리부서)과 개별 정보제공의무의 이용범위(이와 관련된 건물/소방시설의 리스트작성)등과 같은 사항들이 결정된다. 특히 프로

젝트 의뢰인의 사전분석 결과가 이 분석과 연관된다.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ETH-연구 때문에 정보제공의무의 확인과정에서 내용상 의무와의 구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가능한 논쟁적인 구분 문제들은 분석과정에서 확정하고 프로젝트 의뢰인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보충적 문서분석(ergänzende Dokumentaenanalyse)

정보제공의무를 구체화하고 이 의무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에 대해 조망하기 위해 보충적 문서분석에서는 3개 건물보험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지침서(Merk- und Weisungsblätter)와 실행설명서(Vollzugshilfe)[12]들을 포함시켰다. 전체적으로 Aargau주에서는 13개의 지침서(Merkblätter)와 16개의 실행설명서, Luzern주에서는 6개의 지침서(Weisungsblätter), St.Gallen주에서는 4개의 지침서(Merkblätter)가 조사되었다. 아래의 표에서는 보충적 정보들을 얻기 위한 이용가능한 문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보충적 문서 개관

작성기관	번 호	제 목
Aargau주		내부 업무지침(interne Arbeitsanweisung) “정기화재점검”
Aargau주		실행설명서(Vollzugshilfe) 소방안전 일반
Aargau주		실행설명서 건물관리/화재점검
Aargau주		실행설명서 화재 및 폭발위험물
Aargau주		실행설명서 요식 및 숙박업/집회장
Aargau주		실행설명서 굴뚝청소업무
Aargau주		실행설명서 판매업소
Aargau주		실행설명서 열순환설비
Aargau주		지침서(Merkblatt) 실행설명서 사용을 위한 안내
Aargau주		지침서 공사현장의 소방

12) Argau; Luzern: http://www.gvl.ch/praevention/seiten/brandschutzvorschriften.aspx; St. Gallen.

작성기관	번 호	제 목
Aargau주		지침서 주차건물과 지하주차장
Aargau주		지침서 장식물
Aargau주		지침서 축제, 행사, 이벤트
Aargau주		지침서 가스제품
Aargau주		지침서 스프링클러설비 통제 및 정비작업
Aargau주		지침서 농업관광
Aargau주		지침서 소방펌프, 건조수직관
Luzern주	WB 1/7	지침서 공사현장의 소방안전
Luzern주	WB 1/9	지침서 소방차 및 구조활동을 위한 접근성
Luzern주	WB 7/1	지침서 폭죽(Feuerwerkartikeln) 저장 및 판매
St.Gallen주	FSB 3.2	AFS지침서 공간장식
St.Gallen주	FSB 3.3	AFS지침서 공사현장의 소방안전
St.Gallen주	FSB 3.5	AFS지침서 관할권

보충적 문서분석단계에서는 특히, 주와 VKF의 이용가능한 양식을 조사하였으며,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표 6] 신청서식 개관

작성기관	주 제
Aargau주	주 소방허가신청서(예외, 연소시설)
Aargau주	소방시설 - 주 소방허가 신청서
Luzern주	건축신청서
Luzern주	낙뢰방지기 설치증명서
St.Gallen주	건축신청서
VKF	스프링클러설비 사전소명서
VKF	스프링클러설비 신고서
VKF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증명서

작성기관	주 제
VKF	스프링클러설비의 총점검수리 사전소명서
VKF	화재경보기 신고서식
VKF	화재경보기 설치증명서
VKF	화재경보기 판정서
VKF	가스누설경보기 신청서식
VKF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증명서
VKF	낙뢰방지기 설치증명서

제1차 주상호간 차이분석 - 정보제공의무의 비교

첫 번째 프로젝트 단계의 마무리를 위해 주별 소방규정들 중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을 비교하였다(제1차 주상호간 비교). VFK 지침과 SES 지침에서 비롯된 정보제공의무는 3개주에서 모두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1차 비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조사한 정보제공의무는 6개의 주제분야별로 분류되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조사되었다.

- 정보제공의무의 수와 형태(Zuschnitt)
-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언(Wortlaut)
- 정보제공의무 적용분야의 범위
- 자료요구의 수, 형태 그리고 문언
- 수범자(Normaddressaten)
- 의무이행의 주기(Periodizität)
- 해당 관청(정보수령자/관리기관)

법규분석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고, 엑셀형태로 분류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프로젝트의뢰인에게 전달되고, 이 법규범분석과 제1차 주상호간 비교의 결과들은 이

어지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정된다.

3.2.2.2 단계 II - 자료조사 준비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는 스위스 기업차원에서 소방법분야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해서 유발되는 자료조사의 준비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나머지 비용변수들을 조사하고, 절차 워크숍과 제2차 주상호간 비교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인터뷰를 기획하여 인터뷰 대상기업들을 모집하였다.

비용변수(Kostenparameter)

우선 비용변수들을 측정했는데, 사례수와 임금표가 여기에 속한다.

사례수(Fallzahl)

사례수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사용하였다.

- 건물보험사의 영업결산보고서(Geschäftsbericht)
- 건물보험사의 통계
- 건물보험사의 소방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를 통한 추계(Schätzung)

건물보험사의 영업결산보고서와 기타 공식적으로 접근가능한 문서들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서 모든 정보제공의무와 각각 요구되는 사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포함된 건물보험사 사례수에 대한 표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물보험사의 통계에서 이용가능한 사례수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제시된 데이터의 의문사항을 명확히 하고, 특정한 사례수 요구를 구체화하고 추가하거나 빠진 사례수를 추산하였다.

두 번째 테스트질문의 전환으로도 제시되지 않은 사례수는 Rambøll Management Consulting회사가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추산하였다. 주로 다른 주들의 사례수와 스위스연방통계청의 2008년도 경영센서스

(Betriebszählung)를 이용해 추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13)]

Aargau주의 사례수의 대략 절반가량은 AGV(Aargau주 건물보험사)의 통계자료를 통해 수집된 것이고, 나머지 사례수는 부분적으로는 AGV와 협력을 통해 그리고 일정부분은 Rambøll Management Consulting이 이미 제시한 추계기반(Schätzgrundlage)에 근거하여 추산한 것이다. Luzern주는 모든 사례수를 GVL(Luzern주 건물보험사)의 통계자료에서 얻거나 GVL에 의해 추산된 것이다. St.Gallen주는 소수의 사례수만이 통계자료를 이용해 수집하였는데, 소방허가와 관련해서 St.Gallen주는 소방안전분야의 어떤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사례수는 서로 다른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다른 2개의 주의 건수를 기초로 하여 추산되었다.

임금(Tarif)

임금 확정을 위한 기초로서 스위스 임금구조통계조사(Lohnstrukturdatenerhebung)에 근거한 월간총임금(Bruttomonatslöhne)을 새로이 사용하였다.[14)] 총임금(Bruttolohn)은 업무별 근로자들의 총소득을 반영한다. 표준비용모델측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임금에 이와 관련된 고용주분담금(Arbeitgeberanteile)과 25%가량의 표준비용모델 - 제경비 할증료(Gemeinkostenaufschlag)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명목임금(Nominallöhne)의 상승도 고려하였는데, 이는 2006년 임금구조통계조사에 의거한다. 계산된 월임금에 기인한 시간당 임금(Stundenlohn)은 휴가, 병가, 사고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일한 시간을 기초로 조사하였다.

---

13) 2008년도 경영센서스에 따르면 3개 주에서 Aargau 23,022개, Luzern 13,320개, St. Gallen 19,167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업무, 요구되는 직무능력수준과 성별에 따른 월간 총임금 : http://www.bfs.admin.ch/bfs/portal/de/index/themen/03/04/blank/data/01/06_01.html.

임금구조통계조사에 따르면 월간 총임금과 관련하여 4단계의 직무요구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단계들 중 처음 2단계는 통합한다.

1 = 직무요구수준과 직무난이도가 가장 높은 업무의 수행
2 = 독립적이고 자격능력이 있는 업무의 수행
3 = 업무지식 및 전문지식이 전제된 업무
4 = 단순 반복적 업무

[표 7]은 과거 직무수행에 근거하여 계산된 직무그룹별 기업의 시간당 총임금을 나타낸다.

[표 7] 임금표 개관

행위자집단	임금구조에 따른 활동	총임금(CHF) 요구수준				
		1	2	1+2	3	4
설계자/전문설계자 "내부임금"	기획, 구성, 설계, 완성	88.97	72.93	75.01	60.33	50.17
설계자/전문설계자 "외부임금"	기획, 구성, 설계, 완성	110.09	72.93	75.01	60.33	50.17
소방시설설치회사 (서비스책임자, 프로젝트책임자)	기획, 구성, 설계, 완성	88.97	72.93	75.01	60.33	50.17
소방시설설치회사 (기술자)	기계설치, 서비스, 수리	77.93	63.83	64.79	60.09	51.14
소방시설설치회사 (프로젝트 보조)	비서 및 사무직 업무	95.97	63.99	64.86	59.02	53.72
시설관리자 (안전점검위임자)	기계설치, 서비스, 수리	77.93	63.83	64.79	60.09	51.14

* 업무에 따른 월 총임금, 직위와 성별에 따른 요구조건 - 민간 및 공공부문의 합계

설계자/전문설계자(Planer/Fachplaner)를 위한 임금표는 내부요금과 외부요금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배경은 설계자/전문설계자는 정보제공의무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범자는 오히려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설계자/전문설계자를 고용하는 건축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시간비용(Zeitaufwand)은 설계자/전문설계자에게 발생하지 않지만, 건축업자에겐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설계자/전문설계자는 건축업자를 통해 자신의 급부를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보상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자/전문설계자에 대한 "외부임금"은 건축업자의 측면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외부요금의 조사를 위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라 조사된 내부요금에 15%의 이윤(Gewinnzuschlag)과 7.6%의 부가세를 추가하였다.[15] 따라서 위의 [표 7]에서 자세히 나타낸 "내부 설계자/전문설계자 임금"은 단지 계산을 위한 중간단계를 묘사하는 것이며, 비용계산을 위해서는 이용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위해 이용된 임금에서는 종전 값(konservative Werte)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절차 워크숍(Prozessworkshops)

소방법상 정보제공의무를 둘러싼 과정과 절차의 조사를 위해 3개주에서 절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기업이 추후측정의 준비작업을 위한 법령분석을 보완하는데 기여하였다.

---

1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기초로 설계자를 위한 요금과 건축가의 보수와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를 이용하지 않는 결정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 기초한다. 기준은 건축허가절차를 위한 건축가의 보수는 전체 계획의 2.5%정도 차지한다. 2.5%의 일부분은 건축허가절차의 구성요소인 소방허가절차에 사용된다. 소방허가절차에 이용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보수에 대한 건축가의 행정적 업무비용은 간접적으로 추정된다.

Aargau주에서의 워크숍은 대표자의 참여아래 소방안전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참가하였다. AGV와 자치단체대표자(Gemeindevertreter) 그리고 VKF의 대표자들이 행정부를 대표하였고, 설계자, 건물운영자 및 설비운영자(Gebäude- und Anlagenbetreiber), 시설설치자(Anlagenerrichter)들이 기업을 대표하였다.

Luzern주와 St.Gallen주서는 워크숍을 건물보험사와 함께 개최하였고, St.Gallen주에서는 자치단체의 건축행정가들도 참석하였다.

준비작업을 위해 법규범분석 및 보충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기본절차를 개발하고, 도표로 준비하였다. 이 기본절차는 도표를 제시하여 워크숍에서 논의되고, 수정되었으며,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기본절차는 기업내부에서 진행되는 업무단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행정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

2개 주에서는 이 워크숍이 행정부 입장에서만 진행되었고, 상당히 광범위한 정보제공의무와 수범자의 수를 고려했을 때, 모든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 이 워크숍을 통해 논의되고 조사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제2차 주상호간 차이분석과 관련하여 핵심은 실행측면에 놓여있었다(특히, 문서상의 토대로부터 발생하는 것들). 예컨대, 빈도(Häufigkeit), 조직 그리고 주기적인 통제의 내용, 수범자의 통합, 특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수행 행정기관의 질문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문서화하였고 프로젝트 의뢰인이 내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2차 주상호간 차이분석

제2차 주상호간 차이분석에서는 주차원의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집행과정과 절차단계를 조사하였다. 제1차 법적 차이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여기서는 특히 실행상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인터뷰계획 및 인터뷰대상자의 모집

인터뷰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수범자들로 구성된 매트릭스(Matrix)를 기초로 하여 계획되었다. 기업의 모집은 무엇보다 전화로 하였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프로젝트와 각각의 인터뷰의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 구성된 정보패키지(Informationspaket), 표준비용모델을 위한 정보지(informationsblatt), 프로젝트의뢰인에 의한 공식적 확인문서(Bestätigungs-schreiben)등이 인터뷰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다.

3개 주와 서로 다른 다수의 수범자 및 행위자(건축업자, 설계자, 전문설계자, 건물주, 건물관리자, 디자이너 그리고 화재경보/가스누설경보/스프링클러/소방/RWA/피뢰시설의 관리자, 굴뚝청소부, 소방차, 가스공장, 자치단체들)를 고려하였을 때 프로젝트 의뢰인의 공식적 확인문서에도 불구하고, 모집은 확실히 시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3.2.2.3 단계 III - 자료조사

이번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과정은 자료조사과정이다. 여기서는 기업의 인터뷰와 전문가상담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평가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인터뷰와 보충적 전문가 의견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과정, 시간치(Zeitwerte), 직무요구능력의 조사를 위해 전체적으로 소방법분야와 관련된 총 44개의 스위스기업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중에서 12건은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32건은 전화상 인터뷰로 진행되었는데, 인터뷰 진행시간은 15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되었다.

44건의 인터뷰를 각 주별로 그리고 행위자그룹별로 분류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참여한 행위자들과 인터뷰의 수

협의파트너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설계자	6	4	5
설치업자	11		
소유주/관리자	3	2	6
굴뚝청소부와 소방대	2	2	2
가스공장		1	
합 계	**44**		

(소방)시설 설치업자(Anlagenerrichter)의 대부분 기업들의 영업범위는 개별 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업자들이 3개 주들 중에서 어느 주에 속하는지는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다.

기업인터뷰와 관련하여 10건 정도는 전화상으로 재인터뷰를 하였고, 건물보험사와의 다른 인터뷰들도 다수 진행하였다.

기업인터뷰를 위한 기초

- 과정과 시간적 가치의 양적 조사를 위해 13개의 표준활동(Standardaktivitäten)에 근거하여 구성된 인터뷰지침
- 행정부담, 소방 일반, 최적화제안을 위한 질적 질문을 포함한 조사양식

표준화(Standardisierung)

인터뷰가 끝나 후 수집된 양적 및 질적 자료들을 평가하였다. 표준화의 목적은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의 이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과정과 시간적 비용의 확인에 있다. 표준화된 수치는 후에 행정부담의 추산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표준화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시간 및 비용자료들에 대해 개별 자료요구와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비판적이고 질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가치들의 단순한 평균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의 과정에서는 질적 정보들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극단적 수치들은(extremwerte) -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수치들 - 배제하였다. 비교를 위해 표준화 과정에서 주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하였다.

표준화작업은 AFC의 소방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3.2.2.4 단계 IV - 자료사정

네 번째 과정에서는 개별 자료요구와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추산하고, 전체부담의 차원에서 최종수치를 산출하였다. 주별로 수집된 자료들은 비판적 평가(Würdigung)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비용유발행위(Kostentreiber)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용자료에 대한 주상호간 비교를 실시하였다(제3차 주상호간 비교). 법적 차이와 과정 및 실행상의 차이에 중심을 두었던 제1차와 제2차 차이분석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제3차 최종적 비교의 초점은 비용과 비용유발행위와 행정부담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법규범에 기인하는가 또는 실행상의 문제인가) 차이의 구분에 두었다.

3.2.2.5 단계 V - 최적화

다섯 번째 과정에서는 인터뷰와 전문가상담에서 수집된 제안들과 최적화수단들(Optimierungsvorschlag)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보고서 제출양식에 따라 준비하였다. 동시에 행정부담절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외에도 내용적 제안들도 제시되었다.

당초에 계획했던 프로젝트 참여 주들이 모두 참석하는 최적화워크숍은 프로젝트 의뢰인의 동의하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과 건물보험사는 이미 절차 워크

숍 또는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에 충분히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워크숍을 통해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두 번째는, 만족감이나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은 이미 인터뷰를 통해 질의응답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 상호간 공동워크숍을 통해 내용적인 부가가치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획득된 내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데, 몇가지의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3.2.2.6 단계 VI - 종결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작성이전에 잠정적인 결과를 최종워크숍에서 프리젠테이션하였고, 프로젝트의뢰인과 건물보험사 및 VKF의 분야별 전문적인 협의파트너들과 함께 토론하였다.

4. 법 및 절차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법 및 절차분석의 결과를 설명한다.

법규범분석을 통해서 총 137개의 정보제공의무가 확인되었다. 이 정보제공의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argau주 소방규정 : 17개 정보제공의무
- Luzern주 소방규정 : 13개 정보제공의무
- St.Gallen주 소방규정 : 18개 정보제공의무
- VFK-규정 : 62개 정보제공의무
- SES-문서 : 27개 정보제공의무

주별 규정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은 주로 건축 및 영업상 소방을 위한 내용에 속하고, 3개 기술문서(SES-문서)에 포함된 정보제공의무는 모두 기술적 소방영역에 속하는 반면, VKF-소방지침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와는 구분된다. 소방지침 11-03부터 17-03까지의 정보제공의무들은 건축 및 영업상 소방영역에 속하고, 소방지침 18-03부터 23-03에 속하는 규정들은 기술적 소방영역으로 분류되며, 소방지침 24-03부터 26-03까지의 규정들은 건물기술적 설비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27-03에서 28-03은 위험물질 및 인화성액체를 다루고 있다.

위의 2.1.4에서 기술한대로 VKF-규정과 SES-문서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 중에서 다음의 정보제공의무들은 다음 단계의 분석과 측정으로부터 제외된다.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0개
- VKF에의 허가/소방안전 신청을 위한 12개 의무사항

모든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리스트는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주별 법 및 절차분석의 결과를 비교해 본다. 동시에 주별 소방규정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와 VKF-규정과 SES-문서에 기인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을 구분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VKF/SES의 정보제공의무들과 관련한 차이들은 무엇보다 집행과 절차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3개 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4.1 주별 정보제공의무의 비교

구조화된 주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주별 정보제공의무들을 다음과 같이 6개 주제별로 구분하였다.

- 자치단체 소방허가
- 주 소방허가
- 연소장치
- 정기 화재안전점검
- 굴뚝청소부(Kaminfeger)
- 주의 소방규정들 중에서 그 주에서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

각각의 주제분야는 정보제공의무의 도표를 통해 주 별로 나타낸 것이다.[16] 정보제공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본문에서 각 주제별로 논의한다. 일부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4.1.1 자치단체 소방허가 분야

자치단체 소방허가는 총 8개의 정보제공의무로 분류되는데 다음의 표와 같다.

16) 모든 주제별 분류에 따른 주별 정보제공의무의 개관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정보제공의무 “자치단체 소방허가”

주제 분야	번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자치 단체 소방 허가	1	소방안전대상건물의 신축 및 개조를 위한 자치단체에의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건물신축 및 개조에 대한 자치단체에의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2	자치단체 허가에서 개업이전에 준공신고		*준공신고*
	3	자치단체의 완성검사를 위한 협력		*주 차원의 완성검사를 위한 협력*
	4	지역자치단체 허가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사소(Prüfstelle)의 감정서 제출		물질의 소방기술적 상태, 기술적 시설, 휴대용소화기구, 연소장치에 관한 증명

Aargau주에서는 주 소방규정으로부터 이 분야로 분류가능한 4개의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하였다. 처음 3개의 정보제공의무들은 전체과정의 시간적 흐름을 반영한다. 소방허가신청은 자치단체별 건축신청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제출하고, 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계획은 실현된다. 작업이 마무리 되면 준공신고(Fertigstellungsanzeige)한다. 운영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완성검사(Abnahmekontrolle)를 실시한다. 이 모든 정보제공의무의 수범자는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건축주이지만, 결과적으로 건축주에 의해 고용된 설계자(Planer/Fachplaner)가 실제로 수행한다.

Aargau주는 이 3가지 의무들이 명백하게 소방규정에서 발생되는 유일한 주이다. St.Gallen주의 경우 자치단체 소방허가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신고와 완성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소방법 제18조에서 도출되기도 한다. 특히 이 2개의 의무들은 명백하게 건축법으로부터 발생하

여 소방법으로 전달되어 채용된다. 건축법은 연구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채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표 9]에서 이탤리체로 인쇄한 두 가지 의무들은 소방법상의 명백한 규정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차후의 연구와 측정과 관련된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Luzern주에서는 자치단체 소방허가로 분류되는 정보제공의무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소방안전은 일반적으로 주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차원에서는 검토되지 않기 때문이다.

Luzern주와 St.Gallen주에서 각각의 정보제공의무가 자치단체 허가에 포함되는가와는 별도로, 주 소방허가 주제분야에서의 정보제공의무들은 동일한 연대(Chronologie)에 다시 나타난다. 관할 행정기관의 예외인 의무들이 동일하고 자치단체별 그리고 주별 소방신청의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법적 근거와 차이점, 그리고 절차와 과정상의 차이점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다시 살펴본다. 위의 표에서는 관련된 4개의 정보제공의무가 설명되어 있다.

4.1.2 주 소방허가 분야

다음 표는 주 소방허가[17]에 속하는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정보제공의무 “주 소방허가”

분야	번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 소방허가	5	건축, 건물이나 설비의 개축 또는 실질적 변경을 위한 주에의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건물보험사에의 소방허가 신청	건물과 건물부분의 신축 또는 변경을 위한 주에의 소방허가 신청
	6			건축허가 신청 이전 정기화재안전점검시의 협력(확장/사용변경)

17) 주제분야의 제목은 동시에 정보제공의무를 집계한 제목(aggregierte Titel)이다.

분야	번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7		*화재위험 물질의 저장, 생산, 가공, 운송 또는 판매의 허가 신청*	*화재 및 폭발위험물질의 생산, 저장과 가공을 위한 허가 신청*
	8	주허가에서 개업이전 준공신고	*준공신고(계획, 건축법)*	*준공신고(건축법)*
	9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건축법)
	10	주 허가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공인검사소의 감정서 제출		물질의 소방기술적 상태, 기술적 시설, 휴대용소화기구, 연소장치에 대한 증명

Aargau주와 Luzern주는 이 분야에 속하는 정보제공의무가 각각 4개씩, 그리고 St.Gallen주는 총 6개의 정보제공의무가 있다.

이 분야에서의 주요 정보제공의무는 주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인데, 이는 3개 주에서 모두 나타난다. 소방신청분야에서는 법적 소방안전이 어떤 조치들을 통해 이행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Aargau 소방법 시행령 제2조). 허가는 소방규정들을 모두 이행한(St.Gallen주 소방법 제15조) 경우에만 부여된다. 소방허가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위의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마다 정보제공의무의 숫자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St.Gallen주는 증축 및 개축의 경우 소방허가를 받기 전에 화재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유일한 주이다.

준공신고와 소방기술적 완성검사는 시간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둘 다 자치단체의 소방허가에서처럼 Aargau주의 경우 명백하게 소방규정에 나타난다. 다른 두 개의 주(Luzern, St.Gallen)에서는 이 정보제공의무는 건축법으로부터 발생하며, 위의 [표 10]에서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절차상 준공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신고인

데, 서면상 또는 전화상으로 통지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Luzern과 St.Gallen주에서는 허가신청서와 화재위험물질은 분리된 정보제공의무로 분류되고, Aargau주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18] St.Gallen주와 Luzern주에서 이 정보제공의무들은 범위와 관련해서 구분된다. St.Gallen주에서는 명백하게 생산, 저장, 가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Luzern주에서는 운송과 판매를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St.Gallen주의 경우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물질이라고 부르는 반면 Luzern주는 화제위험과 적용분야의 물질에 속한다. 절차상의 관점에서 신청서는 주 소방신청의 구성요소이다.

주의 허가관청과 자치단체의 허가관청으로부터 공인받은 검사기관의 시험과 검증(Attest und Nachweis)을 수행하고 소방기술적 재료의 특성(Beschaffenheit von Stoffe), 기술적 시설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행정부담의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 소방관청의 임시적인 요구들이 임시점검중에 나오기도 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임시점검상의 협력을 위한 비용을 통해 충당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주 및 자치단체의 소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3개 주사이에는 근본적인 법적차이가 발생한다. Luzern주에서 소방허가를 위한 해당관청은 언제나 GVL(건물보험사)이다. 다른 2개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건물 및 영업건물과 기타 지속적이거나 임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체류하는 건물의 경우 건물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Aargau주 소방법 시행령(BSV) 제4조에서는 AGV(Aargau 건물보험사)이 담당하는

18) Aargau 소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c호에서 주의 권한은 화재위험물질 및 폭발물질의 가공, 포장 또는 저장을 위한 허가로 규정하고 있다. Luzern과 St.Gallen주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argau주의 경우 분리된 정보제공의무가 아닌 일반적인 주의 소방허가신청서에 속한다.

건축, 설비, 시설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하고 있다. BSV(소방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건물보험사가 담당하지 않는 모든 허가신청은 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한다.

St.Gallen주의 경우 AFS(소방청)의 관할인 FSB 3.5의 업무를 규정하는데, 지침서는 담당업무의 확정을 위한 결정지원으로 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해야한다. 지침서(Merkblatt)는 주의 허가의무에 속하는 대상/이용(Objekten/Nutzung)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Aargau주와는 달리 이 리스트는 최종적인것이 아니며 또한 확정된 임계치(Schwellenwerte)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의 경우 소방청은 업무의 귀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계획들 중의 큰 부분은 2개 주에서는 동일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임계치(Flächengrenzwerten)와 이동무선통신안테나(Mobilfunkantennen)와 같은 아주 특수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는 St.Gallen주의 목록은 차이점을 발생시킨다.

소방허가의 전과정(Gesamtprozess Brandschutzbewilligung)

신청에서 주 및 자치단체의 소방허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3개 주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소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설계자(Planer)와 해당관청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는 조정협의는 건축계획의 사전소명(vorabklärung)과 계획의 최적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소방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협의는 허가관청의 서비스이며 계획자에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지속적인 계획의 발전과 발생가능한 조건(Auflagen)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이후에 소방허가신청은 각각 해당 자치단체(Gemeinde)의 건축행정에서 건축신청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제출하고 주의 관할업무인 경우 건물보험사와의 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다음의 단락에 나오

는 세 개의 그림들은 주의 특수성을 포함한 각 주의 전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Aargau주

Aargau주는 소방허가와 연결된 정보제공의무인 “준공신고”와 “완성검사에서의 협력”이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그림은 허가신청에서 검사(Abnahme)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며 위의 설명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Aargau주 소방허가 전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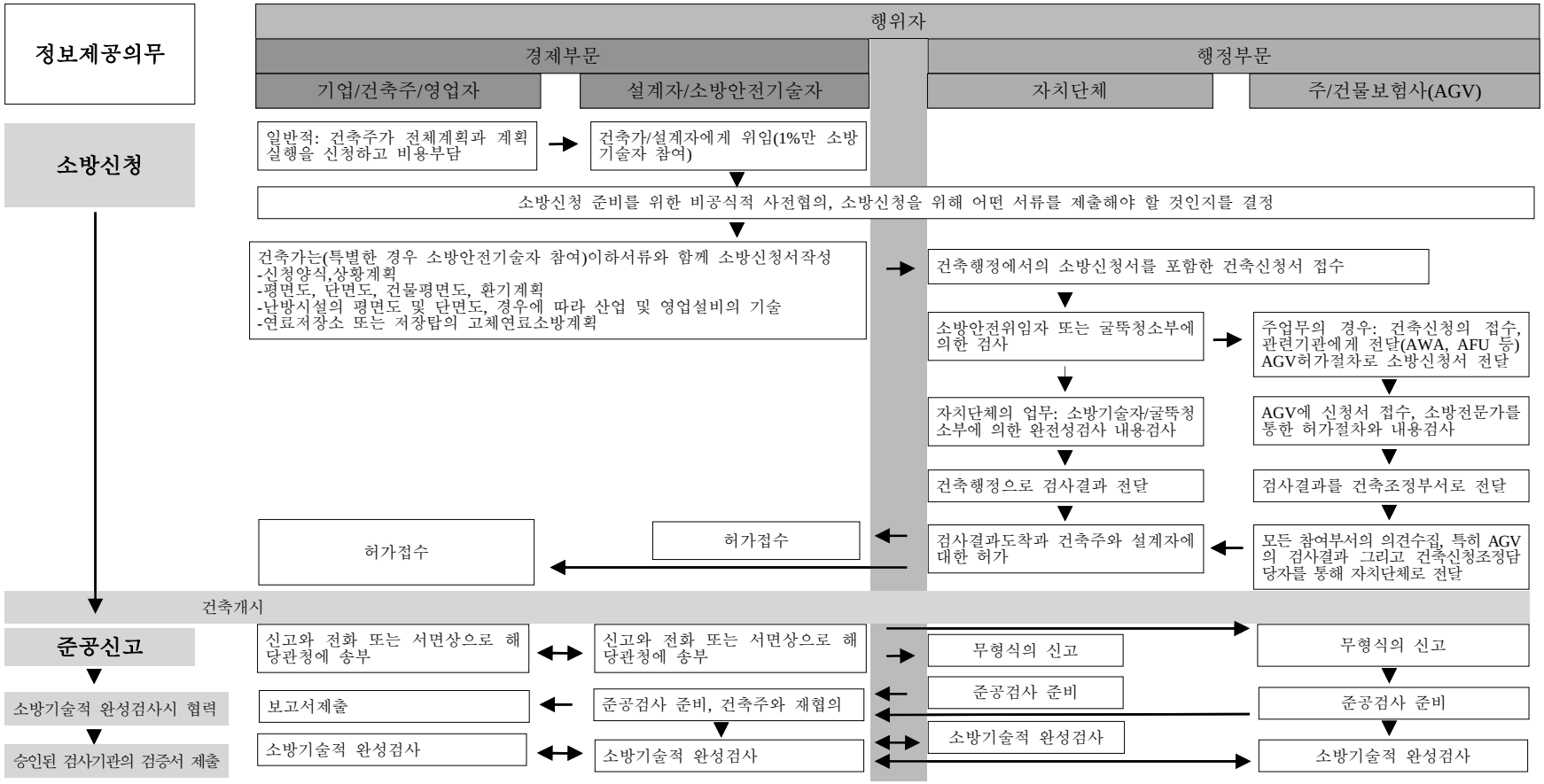

Aargau주의 특수성으로는 건축행정상 특히 소규모 자치단체의 건축행정상 소방안전과 관련한 지식의 부족분(Wissensmängel)을 굴뚝청소부(Kaminfeger)나 다른 소방안전전문인력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소방안전의 측면에서의 검사는 종종 굴뚝청소부에게 위임되고 있다.

Luzern주

Luzern주의 특징은 소방허가는 GVL(Luzern 건물보험사)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검사를 위해 자치단체에게 제출된 건축신청서는 자치단체에서 Luzern주 건물보험사로 전달된다. 이는 건축신청을 위한 자치단체의 기본적 업무로서 직접 처리되거나, 건축신청조정센터(Baugesuchskoordinationszentrale)를 통한 조정절차를 통해 건축신청과 관련한 주의 업무로 처리된다. 다음의 [그림 4]는 신청부터 소방허가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지는 준공신고와 완성검사의 절차는 주의 소방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그림 4] Luzern주 소방허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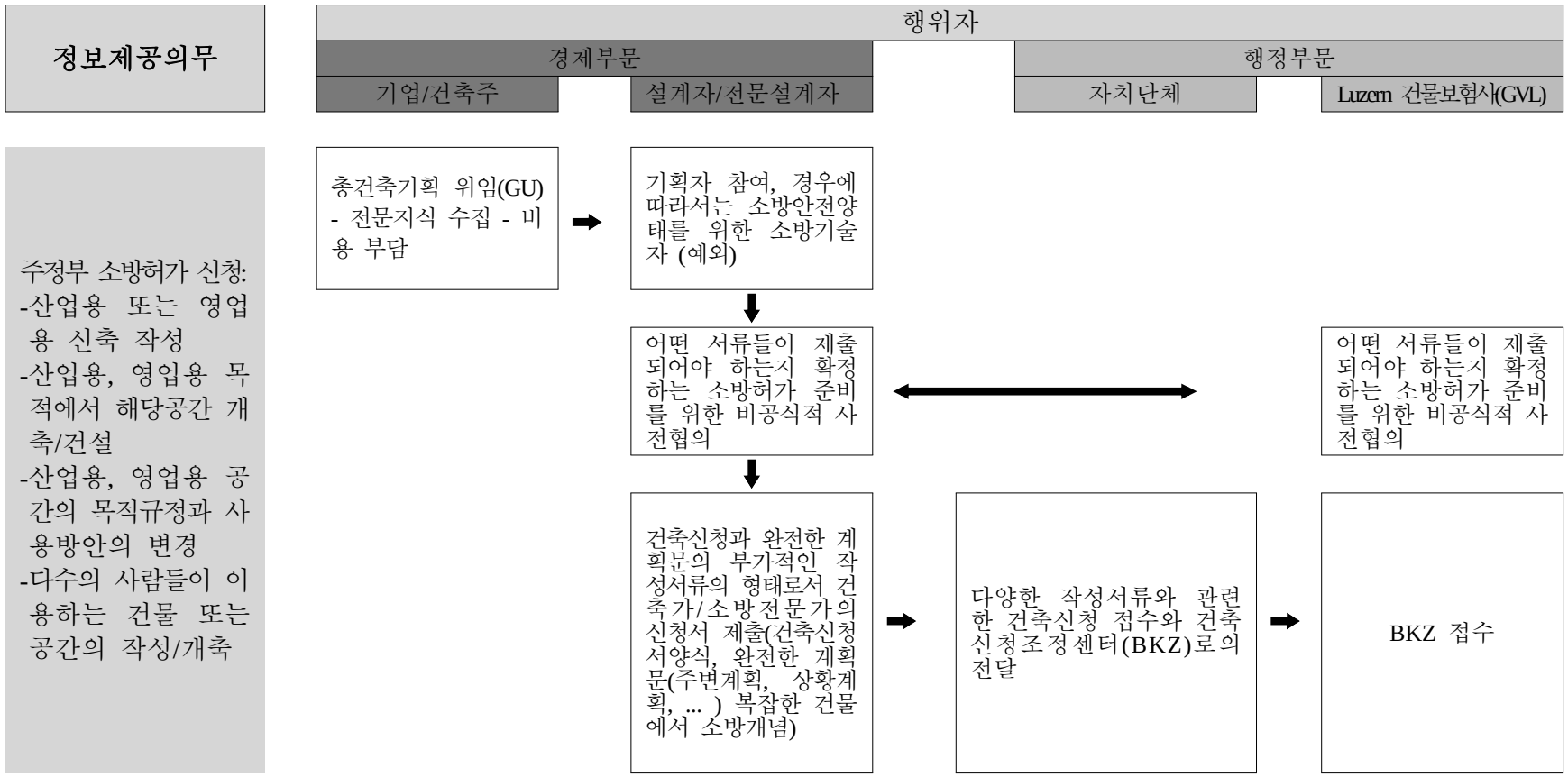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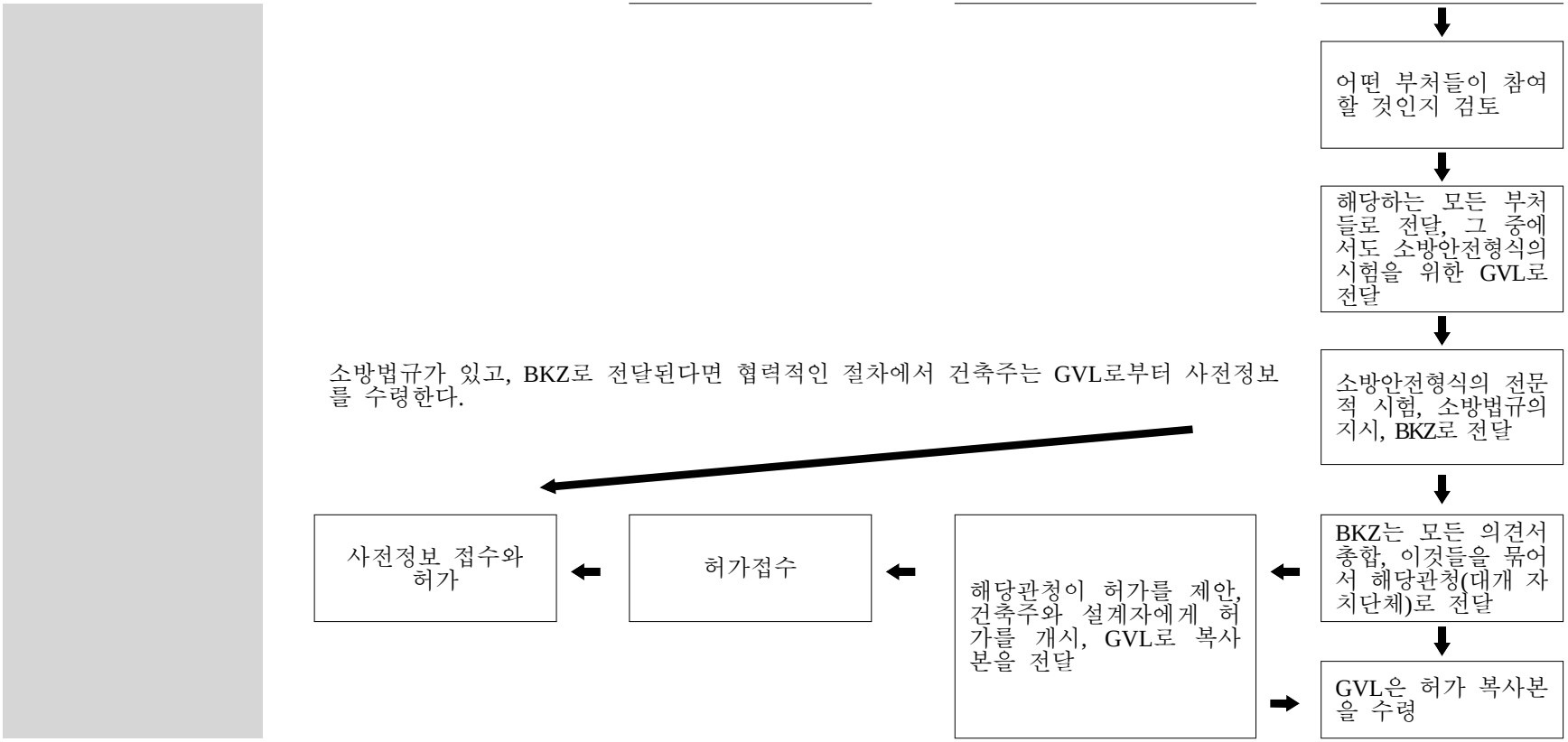
어떤 부처들이 참여할 것인지 검토
해당하는 모든 부처들로 전달, 그 중에서도 소방안전형식의 시험을 위한 GVL로 전달
소방안전형식의 전문적 시험, 소방법규의 지시, BKZ로 전달
BKZ는 모든 의견서 총합, 이것들을 묶어서 해당관청(대개 자치단체)로 전달
GVL은 허가 복사본을 수령
해당관청이 허가를 제안,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허가를 개시, GVL로 복사본을 전달
허가접수
사전정보 접수와 허가
소방법규가 있고, BKZ로 전달된다면 협력적인 절차에서 건축주는 GVL로부터 사전정보를 수령한다.

건축개시

Luzern주를 예외로 GVL은 자치단체의 허가와 관련해서 또한 소방시험에 책임이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Luzern주의 특징은 소방법규(Brandschutzauflagen)를 지시하고 이를 건축신청조정센터(BKZ)에게 전달한 후에, 건축주는 조정된 절차에서 Luzern 건물보험사로부터 사전정보를 수령한다는 점이다.

St.Gallen주

위에서 이미 법적 차이에 대해 기술한대로 St.Gallen주는 건축물을 개조할 경우 소방허가를 하기 전에 화재안전점검의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조정협의(Koordinationsgespäch)와 화재안전점검은 자주 연관이 된다. 이는 다른 주들에서도 자주 나타나지만 다른 두 개의 주들에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의 [그림 5]는 St.Gallen주의 화재안전점검을 포함한 전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조정협의와는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5] St.Gallen주 소방허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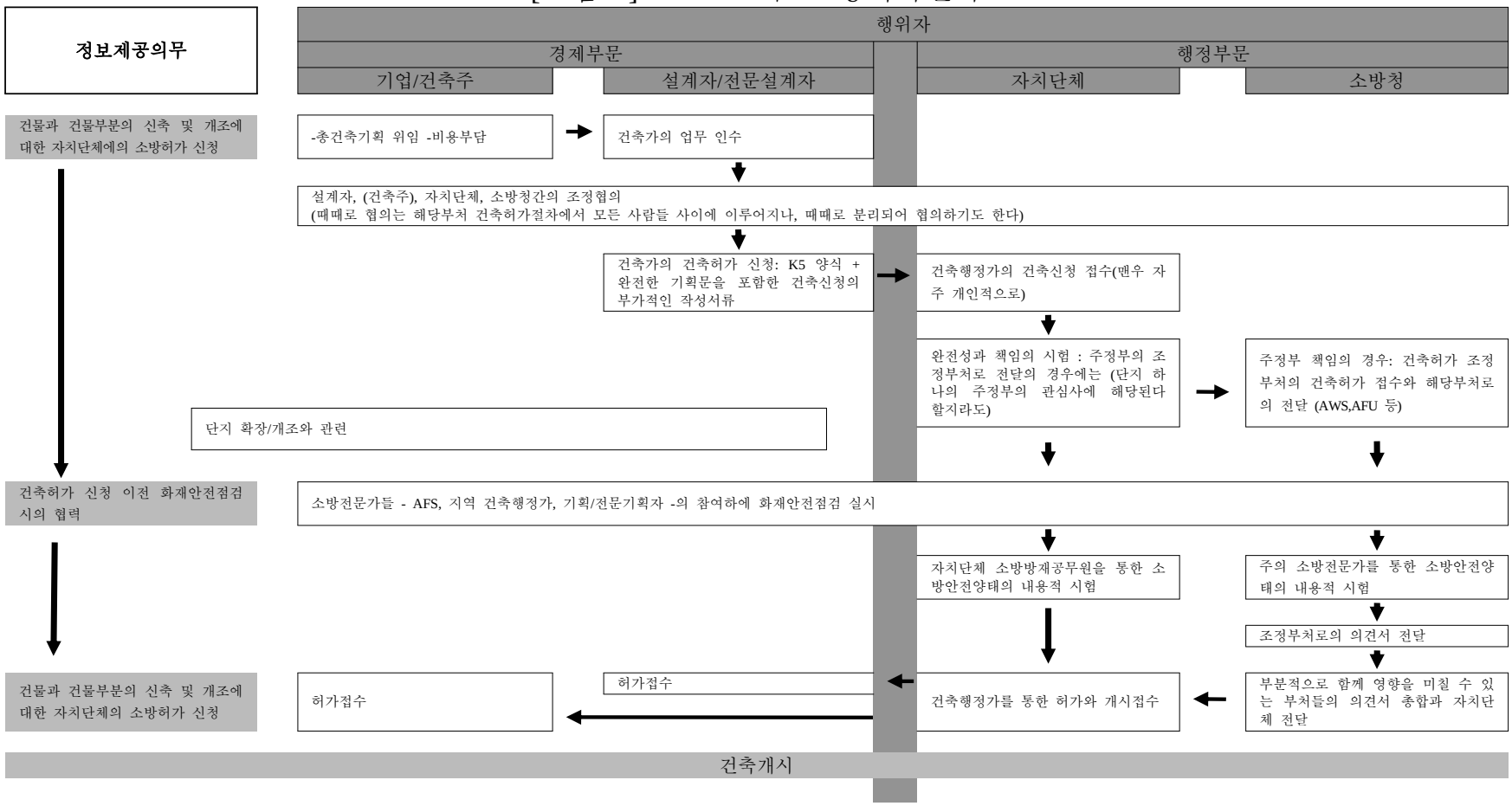

기본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요약

주 및 자치단체의 소방허가와 관련하여 3개 주들간의 기본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 11] “소방허가” 비교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자치단체의 허가 - 정보제공의무 숫자 -	4	0	5
주의 허가 - 정보제공의무 숫자 -	4	4	6
권한규율	소방법 시행령(BSV)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의 허가의무에 속하는 대상건물, 설비와 시설의 최종적 리스트 작성 부분적으로 다양한 임계치(Schwellenwert)	Luzern주의 건물보험사(GVL)가 항상 담당	지침서 FSB 3.5에서 규정하는 주의 허가의무에 속하는 대상/이용에 대한 리스트 작성(최종은 아님) 부분적으로 다양한 임계치(Schwellenwert)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항상 해당 자치단체에 건축신청서의 구성요소로서 제출		
자치단체 허가 신청서 양식	건축신청의 부가적인 작성서류		
자치단체 허가 신청서 검토	일반적으로 건축행정가를 통함;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종종 굴뚝청소부를 통함	건축행정가를 통함	
자료요구 / 주의 허가신청서 양식	특별한 신청서식과 완전한 계획서	추가적인 건축신청서 작성과 완전한 계획서	추가적인 건축신청서 작성, 완전한 계획서, 양식 K5 추가문서 건물묘사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소방개념	건물보험사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간단한 소방개념과 복잡한 소방개념은 상호간에 구별되어야 한다.		
사전협의	사전협의는 모든 건물보험사로부터 제안되고 설계들에 의해 규칙적으로 수용되어진다.		
준공신고와 완성검사	주 소방법에서 명확히 규정	계획, 건축법에서 도출	소방법(FSG) 제18조 또는 건축법에서 암시적 도출
기타 주별 특징		조정된 절차속에서 조건에 대한 건축주의 사전정보	개축시 소방허가 이전의 화재점검

4.1.3 연소장치 분야

다음의 표는 연소장치(Feuerungsanlagen)분야에 속하는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2] “연소장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분야	번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연소장치	11	연소장치를 위한 주에의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설치 고정된 열연소장치의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에의 허가신청
	12			기름연소장치를 위한 자치단체에의 허가신청
	13		연소 및 제연장치의 제작/변경의 신고	
	14	연소장치 준공신고	굴뚝청소부를 통한 연소 및 제연장치의 제작/변경 신고	

분야	번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15	연소장치의 자치단체에의 건축통제시 협력	(신축과 개축 및) 새로이 제작/변경된 장치 또는 굴뚝청소부를 통한 시설의 화재점검시 협력	
	16		가스시설의 허가와 통제시 협력	

연소장치와 관련하여 Aargau주에선 3개의 정보제공의무, Luzern은 4개 그리고 St.Gallen주는 2개가 발견되었다. Aargau와 Luzern주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연소장치의 신고 및 허가에서 시설점검까지 시간적인 흐름(chronologischer Ablauf)에 따라 나타나는 반면, St.Gallen주에서는 주 및 자치단체의 소방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허가 및 허가신청서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의무들의 수범자는 건축주이며, 이들은 의무이행을 위해 건축가/설계자 및 연소장치설치자를 고용한다.

주 들간의 근본적인 법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St.Gallen주와는 달리 Aargau주에서 기름연소장치(Ölfeuerungen)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용 및 영업용 연소장치의 경우 70kw이상의 연소장치의 경우엔 건물보험사에서 하는 소방허가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인 소방신청과 마찬가지로 이를 위한 별도의 형식[19]이 있는데, 건축계획(Bauvorhaben), 위치, 신청자(Gesuchsteller)등을 기입해야 한다. 또한 연소장치, 설치공간과 연료저장고의 건축구조, 연료와 가스의 유도(Ableitung der Gase)등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 Aargau주와는 달리 St.Gallen주에서는 모든 종류의 연소장치 - 고정된 열연소장치(wärmkraftanlagen)와 기름연소장치 - 를 위한 허

19) 연소장치- 주별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서.

가는 자치단체에게 신청한다.

- St.Gallen주의 경우 열순환설비(Wärmetechnische Anlagen)을 위한 서식-GA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설계자와 설치회사 그리고 열발생과 관련한 내용과 점화구 및 점화물질(Brenner und Brennstoff), 가스배출설비(Abgasanlage) 난방공간(Heizungraum), 경우에 따라선 연료탱크시설(Tankanlage) 및 연료저장공간(Tankraum) 등에 대해서도 기입해야 한다. 신청서와 요구되는 기입내용은 Aargau주에서 사용하는 서식과 유사하다.
- Luzern주의 과정은 이와는 다르다. Luzern주에서 연소장치 및 제연설비의 제작/변경은 굴뚝청소부에게 신고하며, 허가사항이 아니다.
- 연소장치의 “준공신고”와 “완성검사를 위한 협력”에서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는 Aargau주와 Luzern주의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St.Gallen주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소방안전기술적 건물점검 등과 같은 정보제공의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방법의 법률분석의 대상은 아니다.
- Luzern주는 가스공장(Gaswerk)을 통해서 가스시설의 통제와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다음의 [그림 6]은 Aargau주의 연소 및 제연설비를 위한 행정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Aargau주의 연소장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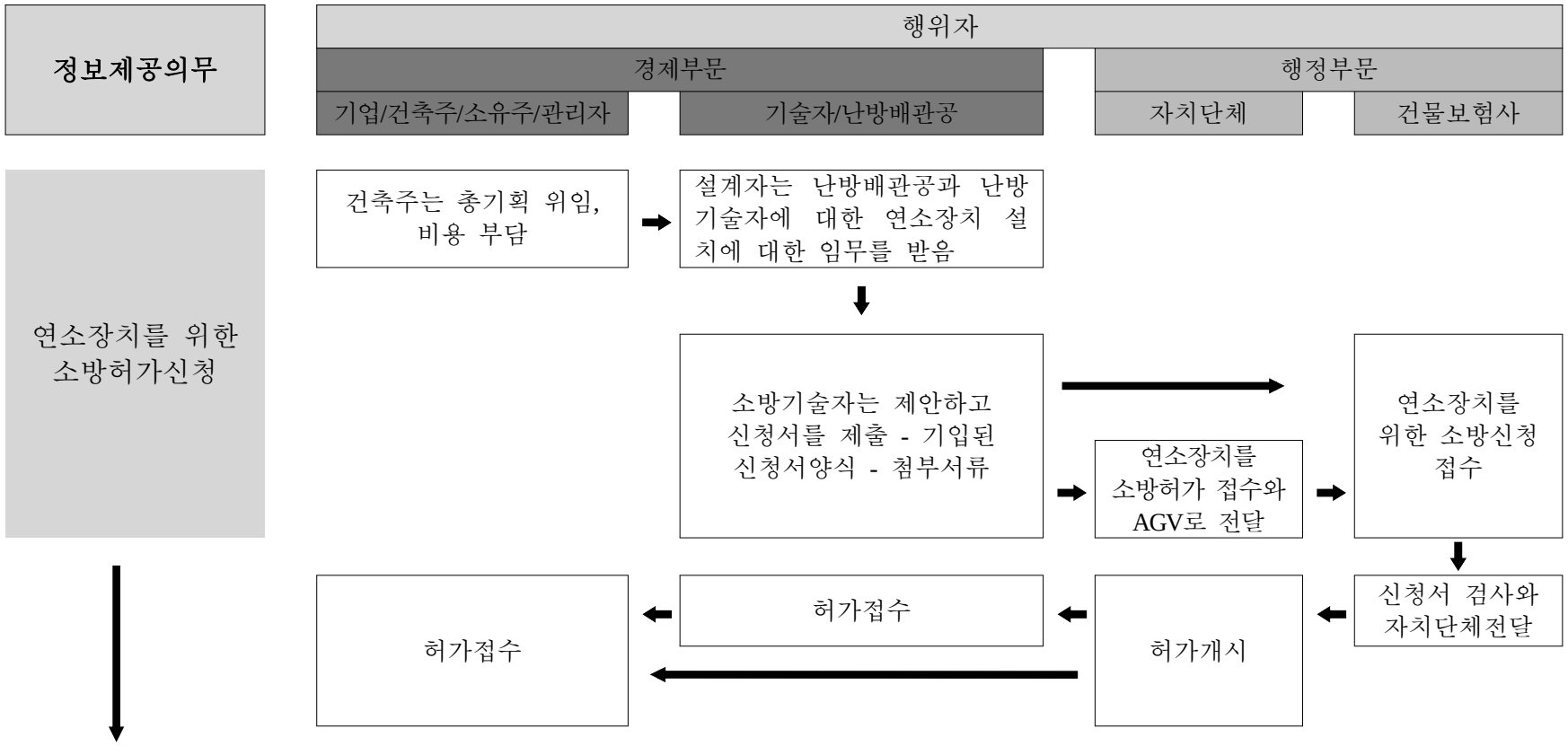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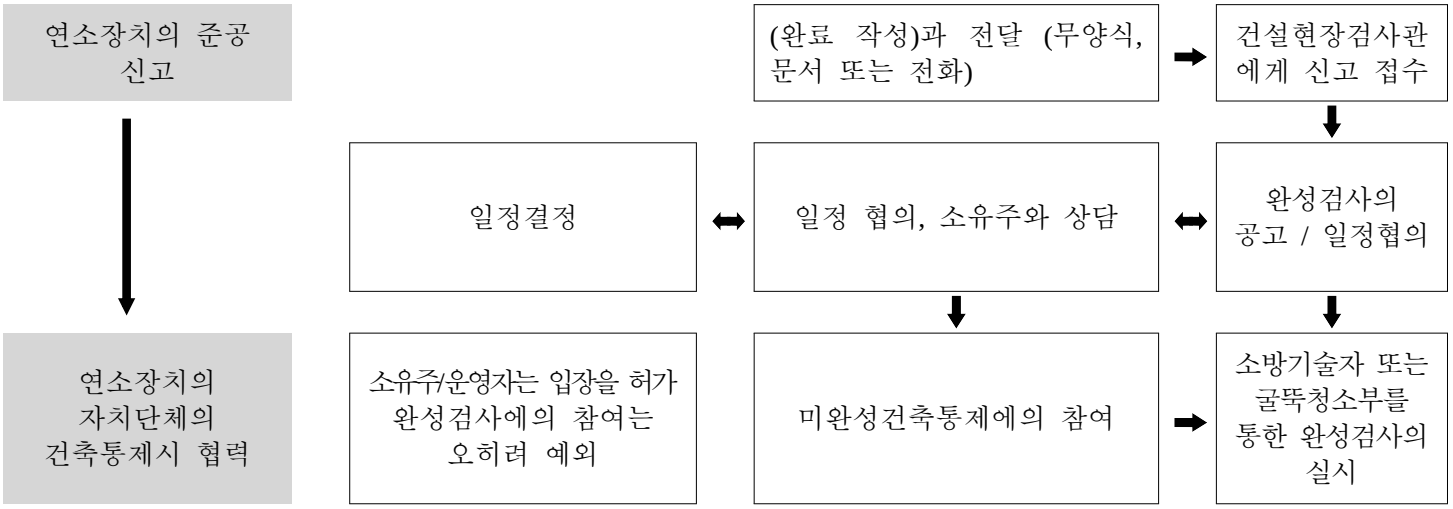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7]은 Luzern주의 연소장치 및 제연설비과정을 시간적 흐름순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Luzern주의 연소장치 및 제연설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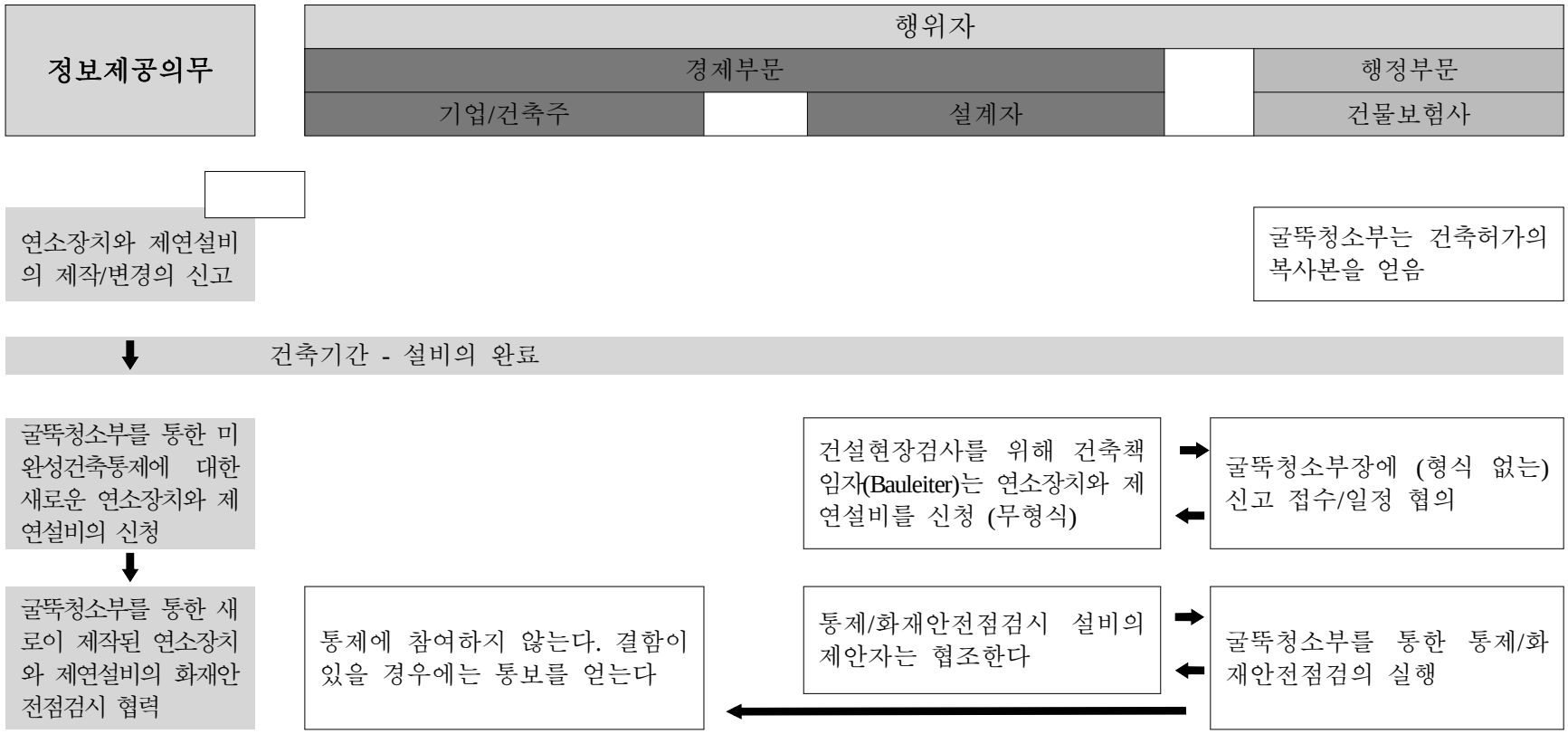

위의 그림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연소 및 제연설비의 설치/변경신고에 따르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실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굴뚝청소부는 건축허가의 복사본을 갖고 있고 건축주 및 계획자에게 별도의 통지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4.1.4 정기 화재안전점검 분야

다음의 [표 13]은 정기화재안전점검(Periodissche Kontrollen und Feuerschau)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13] 정기 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분야	번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정기 화재안전 점검	17	굴뚝청소부를 통한 연소장치의 정기점검시 협력	굴뚝청소부를 통한 정기화재 안전점검시 협력	굴뚝청소부를 통한 열순환설비 정기검사시 협력
	18	자치단체의 화재점검시 협력		화재안전점검시 협력
	19	주의 화재안전점검시 협력	Luzern주의 건물보험사를 통한 정기화재 안전점검시 협력	주의 화재안전점검시 협력

화재안전점검은 굴뚝청소부, 자치단체 그리고 주에 의해서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이에 상응하여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는 정기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각각 3개의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하며 Luzern 주는 두 개가 있다.

말하자면 임시/수시 화재안전점검(schwarze Feuerschau)은 연소장치를 청소하면서 굴뚝청소부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는 소방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결함(feuerpolizeiliche Mängel der Anlagen)과 설비의 주변상황에 대한 점검도 포함한다. 화재안전점검을 위한 협력의무에 대한 수범자

들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자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보제공의무에도 불구하고 각 주들간에는 여전히 특징과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Aargau주

Aargau주에서는 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건물보험사사이의 업부분담은 소방허가와 관련된 업부분담에 따른다. 건물보험사는 그들의 허가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주별 정기화재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주의 화재안전점검의 주기는 각각 이용정도마다 리스크 평가(Risikoabschätzung)를 통해 건물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정해진다. 화재안전점검은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특히, 지속적이거나 임시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머무르는 건물에서 수행된다. 산업 및 영업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받지는 않는다.

자치단체의 화재안전점검은 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는데, 소방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굴뚝청소부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의 정기화재안전점검은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에 한번은 수행되어야 한다. 1가구 또는 2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과 이 연구를 위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정기화재안전점검의무에서 제외된다.

St.Gallen주

St.Gallen주에서는 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하여 Aargau주와 같은 업부분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재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주에 의한 화재안전점검은 예외적인 경우로 자치단체가 특별한 폐해를 발생시키거나 편파적일 경우에만 수행된다.

St.Gallen주의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화재안전점검은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위험의 징조나 신고”등 점검을 해야할만한 근거가 생긴 경우에 수행된다. 자치단체의 화재안전점검은 보통 굴뚝청소부나 자치단체의 대리인에 의해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행된다. 또한 큰 자치단체일수록 보다 더 전문적인 화재안전점검팀이 관여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머무르는 건물은 일반적인 화재안전점검의 예외로서 법률에 따라 최소한 5년에 한번씩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예외사례에 해당하는 건물들도 점검을 해야 할만한 근거가 생긴 경우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Luzem주

St.Gallen주나 Aargau주와는 달리 Luzern주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화재안전점검은 실시되지 않는데, 소방안전은 “관할”영역상 순수한 주의 업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Luzern주에서 일반적인 화재안전점검은 굴뚝청소부가 수행하며, 따라서 법률적으로 규정된 검사범위는 연소시설에 대한 임시적인 화재안전점검의 수준을 넘어선다. 법률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최소한 1년에 한번 굴뚝청소부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점검주기는 Luzern주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매년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것은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소방법에서 화재안전점검에 대한 단락은 50년전의 유물이며 화재안전점검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과 화재안전점검의 수행에 대한 단순한 간접적인 정보라는 점이다.

4.1.5 굴뚝청소부 분야

다음의 [표 14]는 이 분야에 속한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4] “굴뚝청소부” 정보제공의무

분 야	번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굴뚝 청소부	20	굴뚝청소부 직업의 허가 신청	굴뚝청소부가 되고자 하려는 선택을 위한 풍부한 지식의 증명	

굴뚝청소부와 관련된 분야는 Aargau와 Luzern주에서 각각 한 개의 정보제공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활동허가(Zulassung zur Berufsausübung)에 관련된 내용이다.

Aargau주에서 굴뚝청소부로 활동하기위해서는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허가(eine Konzession des Gemeinderats)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위해서 신청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는 기능장시험(Meisterprüfung)을 통과했다는 것과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며 주거지는 Aargau주여야 하고, 소방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직업책임보험(Berufshaftpflichtversicherung)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굴뚝청소부는 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다.

Luzern주에서 굴뚝청소부는 법무안전부(Justiz- und Sicherheitsdepartment)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조건으로는 스위스의 기능장 학위(Meisterdiplom)를 소지하여야 하며 소방규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Luzern주에서 굴뚝청소부는 주의 관할하에 있다.

제출해야하는 증명서(Nachweise)들은 2개 주에서는 동일하다. Luzern주 소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증명서들로 “좋은 평판”과 직업책임보험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임기(Amtdauer)는 양쪽주에서 각각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St.Gallen주에서 굴뚝청소부는 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다. 소방법 제26조에 따라 굴뚝청소부로 선정될 자격은 스위스 학위(eidgenössische Diplom) 또는 직업교육에 대한 연방법에 따른 전문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다. 이에 상응하는 조건들이 St.Gallen주에서도 증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정보제공의무가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엄격한 법적 해석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신청서/첫 번째 지원서와 변경신청서 및 재선정을 위한 지원서간의 차이는 과정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양쪽 주 모두 허가를 받은 또는 선정된 굴뚝청소전문가(Kaminfeger-meister)는 매우 안정적이다. 따라서 임기동안에 중대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동의(Konzession)는 연장되거나 다시금 선정된다. 연장신청 및 재선정을 위한 지원서에 기입할 내용은 처음신청서 및 처음 지원서보다는 많지 않다. 요구되는 증명서들도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청서 및 지원서는 신청 및 지원을 위한 간략한 서술형태이며 새로 취득한 증명서들만 제출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측정의 범위에서는 연장신청 및 재선정지원서를 위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1) Aargau의 인터뷰에 의하면 매25년에 한번 새로운 굴뚝청소부에게 허가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건수는 무시할 만큼 낮다. 2) Luzern주의 경우 조사를 시행하였던 2008년에 모든 굴뚝청소부들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2008년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일반적 경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4.1.6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분야

다음의 표는 각 주에만 존재하는 개별적 정보제공의무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15] 개별 주의 정보제공의무

<table>
<tr><th>분 야</th><th>번호</th><th>Aargau주</th><th>Luzern주</th><th>St.Gallen주</th></tr>
<tr><td rowspan="3">낙뢰방지기</td><td>21</td><td colspan="2" rowspan="3"></td><td>새롭거나 변경된 낙뢰방지기의 완성검사시 협력</td></tr>
<tr><td>22</td><td>낙뢰방지기의 정기검사시 협력</td></tr>
<tr><td>23</td><td>낙뢰 신고</td></tr>
<tr><td>화재경보</td><td>24</td><td></td><td>손해위험 또는 화재발발시 소방대에게 통지</td><td></td></tr>
<tr><td rowspan="2">새로운 건축자재와 건축부분의 허가</td><td>25</td><td>화재보호구역에의 새로운 건축자재의 허가 신청 등</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26</td><td>새로운 건축자재의 허가의무의 예외 신청 등</td></tr>
</table>

어느 한 주의 소방규정에만 포함된 정보제공의무로는 낙뢰방지기, 화재경보, VKF-허가 등이다.

Aargau주는 소방법분야에 속하는 새로운 건축자재(Baustoffe), 건축요소(Bauselemente), 건축부품(Bauteile), 연소시설(Feuerungsaggregate)과 기술적 설비를 주의 소방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St.Gallen주와 Luzern주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주화재보험협회(VKF)의 소방지침에 의해서 발생한다. 허가/소방안전적용은 주화재보험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신청양식(Antragsformulare)은 주화재보험협회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허가받지 않은 생산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건물보험사에서 예외를 신청해야하는 경우의 건축계획도 역시 Aargau주에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화재

보험협회의 구체적 규정과 다른 두 주의 적용에서도 발견된다. 이의 수범자는 각각 건축주이지만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설계자/전문분야설계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한다.

위에서 언급된 이러한 의무들은 측정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화재보험협회의 허가의무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 연구를 위한 측정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건물보험사와 인터뷰대상자들의 응답(rückmeldung)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들은 매우 개별적인 예외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손상위험(Schadensgefahr) 또는 화재발생(Brandausbruch)시 소방대에 통지(Benachrichtigung)”와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는 **Luzem주**의 소방규정만이 유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의무는 주화재보험협회의 소방규범과 소방지침에서도 “화재예방(Brandverhütung), 관리와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시행 및 공사안전(Sicherheit in Betrieben und auf Baustellen)” 등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른 두 개의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St.Gallen주는 주의 규정에서 낙뢰방지(Blitzschutz)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의무가 발생되는 유일한 주이다. 다른 두 개의 주에서는 낙뢰방지기(Blitzschutzanlagen, Nr.23-03d)와 관련하여 주화재보험협회의 소방치침으로부터 3개의 동일한 정보제공의무가 나타난다. 부가적 정보제공의무로서 “점검받은 설비에 대한 신고(설치증명서)”도 규정하고 있다.

4.1.7 결 론

주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3개 주간에는 상당한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Aargau주는 조사된 3개 주 중에서 소방-정보제공의무가 건축법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제공의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유일한 주이다. 다른 2개 주, Luzern주와 St.Gallen주에서는 몇 가지의 정보제공의무들이 건축법에서 발생하고 또한 추가되기도 한다. 이는 소방법과 건축법간의 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행정부담의 구분을 위해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주 및 자치단체의 소방허가와 관련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위의 요약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4.2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의 비교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VKF(주화재보험협회)지침과 SES(스위스안전설비업자조합)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의 정보제공의무가 확인되었다.

- VKF지침 : 정보제공의무 62개
- SES 지침 : 정보제공의무 27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 중에서 위 2.1.4에서 프로젝트경과에 대한 설명과 부합하게 다음에 언급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측정하지 않았다.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0개
- 허가/소방안전 신청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12개

다음의 [표 16]은 VKF 지침과 SES 지침을 근거로 발생한 정보제공의무[20]와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허가의무들을 나타낸 것이다.

20) 주화재보험협회(VKF)의 화재경보, 스프링클러, 가스누설경보를 위한 소방지침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의 다수는 스위스 안전설비업자조합(SES)의 지침에서 구체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들은 SES규정이 아닌 VKF 지침으로 분류된다.

[표 16]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의 분류와 개수

규 정	지 침 명	소방분류	정보 제공 의무 총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정보 제공 의무 허가
VKF 1-03d	소방기준	건축/영업	3	1	
VKF 11-03	화재예방, 건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	건축/영업	3	2	
VKF 12-03	건축자재 및 부품	건축/영업	3		3
VKF 14-03	구조물	건축/영업	1		
VKF 16-03	피난 및 구조통로	건축/영업	1	1	
VKF 17-03	피난통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의 표시	건축/영업	5	2	
VKF 18-03	소화기구	기술	5	1	
VKF 19-03	스프링클러설비	기술	6	1	
VKF 20-03	화재경보기	기술	5		
VKF 21-03	가스누설경보기	기술	3		
VKF 22-03	연기 및 열통풍설비	기술	4		
VKF 23-03	낙뢰방지기	기술	4		
VKF 24-03	승강기	옥내 기술장비	5	1	
VKF 25-03	열순환설비	옥내 기술장비	4	2	2
VKF 26-03	환기설비	옥내 기술장비	2	1	1
VKF 27-03	위험물	건축/영업	5	4	
VKF 28-03	인화성액체	건축/영업	1	1	
SES	스프링클러설비	기술	14	1	3
SES	화재경보기	기술	8	1	3
SES	가스누설경보기	기술	5	1	
		합계	88	20	12

위의 분류에 따라 정보제공의무는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건축/영업상 소방안전
2. 기술적 소방안전
3. 옥내기술장비(haustechnische Anlagen)

다음에서 위의 구분에 따른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주 상호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다.

4.2.1 건축/영업상 소방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VKF지침중에서 01-03과 11-03부터 17-03, 그리고 27-03부터 28-03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들이 건축/영업상 소방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로 분류된다. 이들 중에서 실제로 측정대상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일부분만 포함되었다.

확인된 정보제공의무중에서 11개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로서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 포함되는 표시의무(Kennzeichnungspflichten)등도 중요한데, 이러한 표시의무에는 특히 비상구, 출구, 금연 등의 표시, 위험물질 또는 가연성액체의 주변표시를 포함한 화재 및 폭발위험에 대한 표시, 소방차의 진입로 및 주차공간에 대한 표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부품(Bauteile), 건축자재(Baustoffe), 도관과 배선(Rohr und Leistung)에 대한 허가 및 소방안전의 적용을 위한 신청의무(Antragspflichten) 3개도 제외되었다.

남은 8개의 정보제공의무중에서 3개만 정보제공의무로서 측정하였다. “화재경보(Brandmeldung)와 소방대 연락(VKF지침 1-03)”에 관한 의무이행은 자동화되어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 정보제공의무로 등록된 “경보 및 운용계획 수립시 협력(VKF지침 11-03)”의 경우 경보 및 운용계획은 소방대에 의해 작성되며 표준화된 설계자/전문설계자의 협력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력은 몇몇 경우에 설

계자가 건축계획과 소방전략수립 소방대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보험사도 소방대에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경우 비용은 계산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남은 VKF지침 27-03의 정보제공의무인 “폭죽사용허가”는 스위스 폭죽법(Sprengstoffgesetz)과 폭죽법 시행령(Sprengstoffverordnung)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폭죽법에 근거한 의무이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았다.

남은 정보제공의무들 중에서 3개는 공통적으로 주차원의 소방허가신청서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설계자/전문설계자(Planer/Fachplaner)는 특정조건하의 허가과정에서 해당건물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구조물들의 화재방지능력에 대한 증명서(지침 14-03)”를 제시해야 한다. VKF 지침 17-03에서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인 “안전조명과 허가를 위한 전기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제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전조명과 안전전원공급장치는 전기설계자에 의해 소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건축계획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은 분리되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로 분류되며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다. VKF 지침 11-03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인 “소방청의 요청에 대한 소방안전계획의 제출”은 일종의 자료요구로서, 주별 허가절차로 분류되며 이에 상응하여 측정되었다.

VKF 지침 17-03에서 발생하는 “안전조명과 안전전원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완성검사시 협력”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는 전체대상물에 대한 일반적 완성검사의 구성요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제공의무로서 측정되지는 않는다.

지침 17-03에서 발생하여 측정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정보제공의무는 “안전조명과 안전전원공급을 위한 점검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협조”이다. 시설관리자는 점검매뉴얼(Kontrollbuch)에 선작업의 실행(예컨대, 기능점검(Funktionskontrollen), 정비(Wartung), 유지보수(Instandsetzung))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주별 특징과 이런 특징에 기인하여 실행상에서 나타나고 측정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4.2.2 기술적 소방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기술적 소방안전에 포함되는 것들은 VKF 지침 18-03과 세 개의 SES 지침에서 발생하는 55개의 정보제공의무들이다.

여러 설비유형(Anlagetypen)에 적용되는 6개의 사례들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설비유형들 간의 정보제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서로 다르지만 법적 근거는 동일하게 VKF 지침이다. 기본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전체과정은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다음의 [그림 8]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단계는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이다.

[그림 8] 기술적 소방안전의 기본적 정보제공의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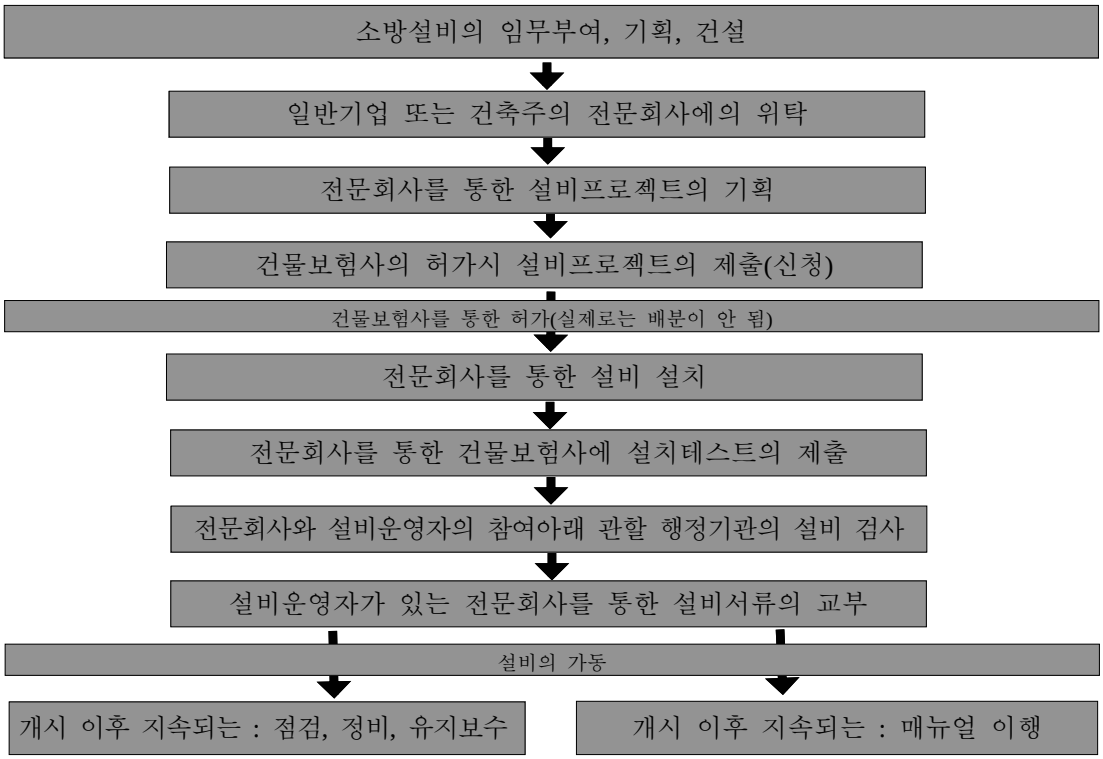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기술된 기본과정은 몇 가지의 설비유형에 적용되고 나머지 설비유형은 5개의 정보제공의무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설비들간의 차이는 특히 실행상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계획의 신고와 설치증명서 등은 각각의 설비유형에 따라 특별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실행관청이 담당하기도 한다.

기본의무 외에 몇 가지 설비유형의 경우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들이 적용된다. 다음의 [그림 9]는 기술적 소방안전설비분야에서 확인된 전체적인 정보제공의무들에 대한 개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수평란은 서로 다른 설비유형을 나타내고, 수직란은 기본적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정보제공의무가 어떤 유형의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그에 상응하는 칸에서 나타내고 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로 측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정보제공의무로서 집행상의 정보제공의무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9] 기술적 소방안전의 정보제공의무 개관

유형 / 정보제공의무	안전조명과 전원공급 설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연기 및 열통풍설비	낙뢰방지기	
허가를 위한 프로젝트의 제출(신청) (VKF와 SES)	x전기설계자 단지 소방허가 신청의 부분: 분리되지 않는 신청	x설계자/전문설계자 단지 소방허가 신청의 부분: 분리되지 않는 신청	x 스프링클러회사	x 화재경보회사	x 설비제조업자	x전기설계자/전문설계자 단지 소방허가 신청의 부분: 분리되지 않는 신청		
설치 테스트의 제출/검사 준비가 되어 있는 설비 신고 (VKF와 SES)		x설비제조업자 실제로 요구되지 않음(정보제공의무는 실행되지 않음)	x 스프링클러회사	x 화재경보회사	x 설비제조업자	x설비제조업자 실제로 요구되지 않음(정보제공의무는 실행되지 않음)	x 설비제공자	

유형 / 정보 제공의무	안전조명과 전원공급 설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연기 및 열통풍설비	낙뢰방지기	
완성검사 시 협력 (VKF와 SES)	x전기공 ≠분리된 정보 제공의무, 일반적인 검사통제의 부분	x설비제조업자와 설비운영자 ≠분리된 정보 제공의무, 일반적인 검사통제의 부분	x 스프링쿨러회사와 설비운영자	x 화재경보회사와 설비운영자	x 설비제조업자와 설비운영자	x설비제조업자와 설비운영자 ≠분리된 정보 제공의무, 일반적인 검사통제의 부분	x 설비제조업자와 설비운영자	
설비 관리자에게 설비서류의 교부(SES)			x 스프링클러회사	x 화재경보회사	x 가스누설기경보기의 제조자			
정기적 관청의 또는 관청의 유도되는 통제 시 협력 (VKF와 SES)			**xSI, GVL, 회사를 통한 정기 통제** **화재 정지 매 1-3년** 스프링클러회사와 스프링쿨러책임자	단지 내부 통제와 정비기업을 통한 통제 ≠ 정보제공의무	단지 내부 통제와 정비기업을 통한 통제 ≠ 정보제공의무		**x피뢰검사자를 통한 매 10년** 설비운영자	
감사부 지도(SES)	x설비운영자와 정비기업		x설비운영자와 정비기업	x설비운영자와 정비기업	x설비운영자와 정비기업			
경보조직 계획/소방 설비계획 (SES)			설비서류의 부분이다(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 부분적 정보제공의무		설비서류의 부분이다(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 부분적 정보제공의무			
특별설비 의무		**소화기구의 인도, 다시 채움, 정리와 관련한 정보등록**(VKF) 정비기업		**15년 후 설비의 판단**(SES) Aargau에서 정보제공의무는 실행되지 않음	정리에 대한 계약 제출(SES) 설비운영자 정보제공의무는 실행되지 않음	**제연설비의 효과 증명**(VKF) 설비제조업자	**낙뢰방지기의 신고**(VKF) 설비제조업자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GV는 보험으로부터 신고를 받음)	
	비상구 표시(VKF) 건축기업	**소화기 조작에서 종업원의 지시 등**(VKF) 기업주	**스프링클러센터 입구 표시**(VKF) 스프링쿨러회사				**피뢰 후 통제 시 협력**(VKF) 설비운영자	
			거품물질 품질 시험증명(SES) 스프링쿨러회사				**결함제거에 대한 보고 (법적으로 규정은 안 됨)** 설비운영자	
			설비 10년 검사에 대한 신고(SES) 스프링쿨러회사					

유형 / 정보 제공의무	안전조명과 전원공급 설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연기 및 열통풍설비	낙뢰방지기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 제출(SES) 스프링쿨러회사					
			AGV를 통한 총점검수리 이후 검사 시 신고(SES) 설비운영자와 스프링쿨러회사					
			스프링클러설비의 해제 신고(SES) 설비운영자	**화재경보설비의 작업중단 신고**(SES) 설비운영자				
			스프링클러설비의 재작동 신고(SES) 설비운영자					
			스프링클러설비의 마비 시 책임있는 부처와 협의(SES) 설비운영자					
연관있는 정보제공 의무 수	1	1	13	6	4	1	4	30

붉은색으로 표시된 8개의 의무들에서 제3자에 대한 의무로서 측정에서 제외된 의무들이 중요하다. 남은 2개의 표시된 의무들 외에 특히 “설비관리자에게 설비문서 교부(Aushändigen)”을 위한 의무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문서의 전달은 화재경보 및 가스경보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개별 설비유형들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보제공의무와 과정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세 주들 간의 실행상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재경보기(Brandmeldeanlagen)

가장 전형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소방안전설비는 화재경보기이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을 스스로 확인하고 신호화하며 위험에 처한 사

람과 투입인력(Einsatzkräfte)에게 경보를 울려준다. 화재경보기는 소방안전시설의 조종과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21] 화재경보기는 전체 또는 부분적 감시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 전체감시의 경우 적어도 비상구와 화재위험발생이 높은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22]

화재경보기를 위해 전체적인 기본정보제공의무들이 발생한다. 새로운 설비, 확장과 변경 등을 포함한 화재경보기의 계획은 시행이전에 화재경보회사를 통해서 "등록(Anmeldung)[23]"양식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설비의 설치가 끝난 이후에 바로 건물보험사의 화재경보회사는 "설치증명서(Instllations-Attest)" 양식을 이용해 신고해야하고, 화재경보기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일치를 확인해야 한다. 설치증명서와 함께 마지막 설비계획(Anlagepläne)을 제출한다.

설치증명서가 접수되면 완성검사가 건물보험사를 통해서 시행된다. 완성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화재경보기를 위한 규정을 이행하였는가 여부와 그 설비들이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완성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화재경보회사(Brandmeldefirma)뿐만 아니라 설비관리자(Anlagenbetreiber in Person des Sicherheitsbeauftragten) 및 설비담당자(Anlagenwarts)도 현장에 있어야 한다.

완성검사 이후 결함이 없다면 설비는 작동된다. 설비담당자는 설비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기능점검을 시행한다.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전문회사(일반적으로 설치회사)를 통해 설비를 점검해야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설비담당자는 정비계약(Wart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설비감독자가 정비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재경보회사가 건물보험사에게 통지하고, 경우에 따라서 건물보험사가 개입한다. 기능점검의 수행과 점검(그리고 유지보수)은 정보

21) 2.1.1 VKF-지침 20-03 화재경보기
22) 2.2 VKF-지침 20-03 화재경보기
23) 전체 양식은 VKF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bsronline.vkf.ch/D/Reg13c_d.asp.

제공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단지 내용상 의무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측정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건(Ereignis)과 같은 수행과 발생이유(Ursachen) 등은 점검매뉴얼(Kontrollheft)에 문서화 해놓아야 하며, 이는 중앙이나 주요기관에 보관된다. 설비담당자(Anlagenwart)에 의한 내부점검과 다른 사건들은 설비담당자에 의해 기록되고, 화재경보회사는 연간점검을 기록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설비에 기인하는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한다. 첫째, 설비의 운영이 24시간 이상 정지하는 경우 설비관리자는 이를 건물보험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서면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둘째, 15년 이상 운영된 이후에는 모든 화재경보기는 예정된 대로 개념해석(ihrekonzeptionelle Auslegung), 기술상의 처분가능성(technologische bedingte Verfügbarkeit), 효과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화재경보회사가 하며, 판단결과는 “판단(Beurteilung)”을 위한 양식에 기재하고 건물보험사에 제출한다.

모든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실행관청은 3개 주 모두에서 건물보험사가 담당한다.

실행상의 차이(Vollzugsunterschiede)

화재경보기와 관련하여 분류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실행상의 차이는 하나의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것이 없다. 예외상황은 Aargau주에서 발생하는데, SES 지침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인 “15년 후의 화재경보기에 대한 판단”은 실행되지 않는다.

가스누설경보기(Gasmeldeanlagen)

가스누설경보기는 공기중에 있는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의 특정한 응집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신호화해서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24] 따라서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연소시

24) 2.1 VKF-지침 21-03 가스누설경보기.

설이나 화학공장(Chemiebranche)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화재경보기와 비교했을 때 가스누설경보기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좁고 매우 적은 사례의 경우만을 반영한다.

또한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기본적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화재경보기의 실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계획의 신고와 설치증명을 위해 여기서도 VKF의 양식을 이용한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특성에 기인하는 의무로서 SES 지침은 가스누설경보기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보험사의 점검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3개 주에서 모두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Aargau주에서 15년이후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판단을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계약체결의 미시행도 실행의 결함으로(Vollzungsdefizit) 구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언급한 두 개의 의무들은 SES 지침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설비(Sprinkleranlagen)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경보를 울리며 스스로 소화수(Löschwasser)를 뿌려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투입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통제를 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안전시설의 조종과 유지(Ansteuerung und Inbetriebsetzung)를 위해 설치한다.[25)]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경보기보다는 훨씬 드물게 설치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통한 보호는 일정 규모이상의 판매상점(Verkaufsgeschäften), 주차장(Parkhäusern), 자동차 전시공간(Einstellräume für Motorfahrzeuge)에서 이루어진다. 산업건물, 영업건물 및 사무실건물과 특정 규모이상의 인력이 거주하는 건물과 시설의 경우 건물보험사는 스프링클

25) 2.1.1, VKF-지침 19-03 스프링클러설비, 2.1, SES-지침 스프링클러설비.

러설비를 요구할 수 있다.

화재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처럼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해서는 기본적 정보제공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설비, 10개 이상 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의 확장 그리고 근본적인 변경 등과 같은 스크링클러설비의 계획은 시행이전에 스프링클러회사를 통해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은 “사전소명(Vorabklärung)”과 “등록(Anmeldung)”양식을 포함하며, 수압계산(die hydraulischen Berechnung), 평면도 및 양식에 대한 계획(die Grundriss- und Schnittpläne), 저장 시 저장정돈 및 받침대정돈(bei Lagerung die Lager- bzw. Gestellanordnung)을 포함한다.[26)]

작업을 마친후 스크링클러회사는 완료된 설비를 “설치증명서”양식과 함께 건물보험사에 신고한다. 설치증명서의 복사본은 관할부서, 지역소방대, VKF, 상수도관리소(Wasserversorgung)와 설비관리자가 한 부씩 갖는다. 설치증명서의 제출 후에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다. Aargau주에서 완성검사는 소방안전협회(Sicherheitsinstitut)에서, Luzern주는 GVL(Luzern 건물보험사)에서 그리고 St.Gallen주의 경우 AFS(소방방재청)의 산하기관인 Feuer-Stop에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점검관청외에도 통상적으로 스프링클러회사, 스프링클러담당자, 상수도시설(Wasserwerk), 소방대와 대규모계획인 경우 설계자가 참여한다.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정비계약(Wartungsvertrag)을 담당회사와 체결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설치회사가 담당한다. 다른 소방안전설비와는 다르게 스프링클러설비는 1년부터 3년의 간격으로 관청에 의한 정기점검이 실시된다. 각 주마다 점검을 위한 관청은 점검절차와 같은 관청에서 담당한다. 주기적인 점검에 스프링클러회사는 참여하지 않으며, 설비관리자에 의한 스프링클러정비는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

26) 3.1.7, SES-지침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경보기와는 다르게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내부의 설비담당자(Anlagenwart)을 통해 실시되는 기능점검이 특별한 설비문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다양한 기능점검을 위한 빈도는 SES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하여 “관청의 주기적인 점검시 협력”외에도 총 7개의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한다. 화재경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이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경보기와 다른 점은 신고를 위한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점인데, 이 양식은 설비문서(Anlagendokumentation)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주문할 수 있다. 또한 재가동(Wiederinbetriebnahme)의 경우도 신고해야하며 작동중지를 신고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발포기(Schaumzumischung)를 포함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거품제(Schaummittel)의 품질을 검사하고 설비에 달려있는 검사진단서(Prüfattest)를 통해 검증을 한다. 운영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스프링클러설비의 재점검(Überprüfung)을 실시하는데 모든 스프링클러설비의 부품(Körper)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한다. 검토 결과는 설비관리자와 담당 건물보험사에게 “판단진단서(Beurteilungsattest)”양식과 함께 신고한다. 20년의 운영기간이 지나면 설비에 대한 총 점검수리(Generalüberholung)의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 사전소명(Vorabklärung Generalüberholung)”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St.Gallen주에서는 총점검수리의 허가를 위해 요구되는 사전소명은 AFS(소방방재청)의 유관기관/산하기관인 Feuer-Stop회사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의 제출(Einreichen der Generalüberholung zur Genehmigung)”은 St.Gallen주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점검수리는 그 자체로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고, 내용적 의무의 성격을 지니지만 St.Gallen주에서는 스프링클러회사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한다.

새로 설치된 설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점검수리를 한 설비의 경우 “설치증명서(Installationsattest)”를 제출해야 한다. 설치증명서의 제출후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두 가지의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한다.

예컨대, 건물의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정지시켜야 한다면 담당기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소화기구(Löscheinrichtungen)

소화기구에 대한 VKF지침 18-03의 적용범위에는 소화장치(Löschgeräte), 가스소화설비(Gaslöschanlagen), 특수냉각 및 소화설비(spezielle Kühl- und Löschanlagen) 등이 있다. 소화기구(Löschgeräte)는 특히 물소화기, 바퀴소화기 및 휴대용소화기구(Handfeuerlöscher)이다. 가스소화설비는 위험에 처한 사람의 경고에 따라 소화가스(Löschgas)가 자동으로 분사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특수 냉각 및 소화설비는 거품과 가루로 된 소화설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화설비들은 화재지역을 냉각시키거나 보호지역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27] 가스소화설비의 보호범위는 전체 공간, 개별적인 시설(einzelne Einrichtungen)이며, 특수 냉각 및 소화기구의 보호범위는 독립공간(Einzelräume), 건물내부의 시설과 공간(Bereiche und Einrichtungen) 그리고 설비 등이다.[28]

가스소화설비는 EDV공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다(전체 사례수의 70%). 그러나 소화재료저장소(Lösungsmittellager), 이동공간(Transformatorräumen)을 비롯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이용하면 손상이 큰 공간이라면 어디든 사용된다. 법률적 상황에 따르면 가스소화설비가 사용되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화재경보기로 충분하다. 가스소화기구의 설치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설치는 자율적이다. 특히 이러한 설비유형과 관련한 VKF의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27) 2.1부터 2.3까지, VKF-지침 18-03 소화기구.
28) 3.2.1부터 3.3.2 VKF-지침 18-03 소화기구.

법률적 기초에 상응하여 3가지의 기본정보제공의무가 가스소화기구와 특수냉각 및 소화설비에도 적용된다. “허가를 위한 계획의 제출” “설치증명서 제출”과 “완성검사시 협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터뷰와 건물보험사의 확인에 따르면 실제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스소화설비 또는 특수 냉각 및 소화설비의 계획은 설비회사(Errichterfirma)가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다. 건물보험사가 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시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설치증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한 VKF의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추측건데 이러한 설비유형은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설치된 가스소화설비에 대한 완성검사는 중대한 개조(Umbauten)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일반 소방안전기술적 완성검사 및 화재경보설비의 완선검사의 범위안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검사시의 협력”은 정보제공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이 재등록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보제공의무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소화장치, 가스소화설비와 특수 냉각 및 소화설비의 유지, (소화액)보충(Nachfüllung), 인도(Auslieferung)의 자료등록을 위한 설비관련 의무가 유일한 정보제공의무이다.

연기 및 열통풍시설(Rauch- und Wärmeabzugsanlagen : RWA-Anlagen)

RWA-설비는 모든 건축상 및 기술적인 시설들의 총체로서, 이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과 설비들로부터 발생한 연기와 열(Rauch und Wärme) 등을 배출하기 위한 설비들이다. 이에는 제연을 위한 개방시설(Entrauchungsöffnugen)과 입구(Öffnungen)등이 포함되며, 대체공기(Ersatzluft)를 흐르게 하거나 밖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것이다.[29)]

29) 2.1 VKF-지침 22-03 제연설비.

위의 그림에서 설명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RWA와 기계적인 RWA간에는 차이가 있다. 자연적인 RWA는 화재발생시 발생한 열에 의한 추진력(thermischen Auftrieb)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하며, 연기와 열을 통제하여 밖으로 배출한다. 이런 설비들은 과도한 화재노출로부터 건물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30] 기계적인 RWA는 화재발생시 환풍기를 통해서 연기와 열을 밖으로(ins Freie) 유도하는 설비이다. 이런 설비들은 특히 기차역, 공항, 여러 층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마당이 포함된 건축물 또는 상점이 포함된 건축물, 박람회전시장, 아트리움 같은 대규모 건축물에서 이용된다.[31]

기계적 RWA의 정의를 보면 주로 예외상황에 중요하게 이용이 되고, 자연적 설비는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화재사례 중에서 80-90%는 자연적 설비가 이용된다. 특수한 사례, 통계적으로 10-20%밖에 안되는 특수 상황에서 RWA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하는 건물이 주요 대상이다. “RWA의 성능 증명”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는 따라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그 절차는 비교적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은 기본적으로는 기계적 RWA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설비의 규격을 정하고, 허가를 위해 적합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설비설치 후에는 설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자연적인 RWA의 경우 계획서나 설치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설비는 허가절차의 범위안에서 제출된 건축계획에 포함시키면 된다.

자연적인 제연과 기계적인 제연 두 가지 경우에서 완성검사는 분리된 정보제공의무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점검은 전체 건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방기술적 완성검사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며, 화재경보기의 완성검사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30) 2.1 VKF-지침 22-03 제연설비.
31) 2.1 VKF-지침 22-03 제연설비.

인터뷰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에서는 기계적인 RWA의 경우에도 허가를 위한 계획이나 설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보험사에 의한 점검을 받지 않기도 한다. 또한 RWA는 아직까지는 VKF에 의한 증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신고나 설치증명서를 위한 VKF-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낙뢰방지기

낙뢰방지기는 건축물과 시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벼락(Blitzschlag)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낙뢰방지기는 번개(Blitzstrom)를 땅으로 유도해야 하며, 외적 피뢰(유도선, 콘센트, 접지)를 위한 조치와 내적 피뢰(저전압, 과전압보호)를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32)]

관청의 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의무적 설비(Pflichtanlagen)와 자율적인 설비는 구분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포함하는 건축물, 숙박시설, 고층 건축물, 위험한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및 영업시설 그리고 내용물이 특별한 가치를 내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문서보관실, 박물관)들은 보호해야 한다.[33)] 낙뢰방지기 설치의무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엔 건물보험사가 결정한다.

낙뢰방지기는 3개 주에서 모두 지원가능하다. Luzern주에서는 건물보험사가 자율적 설비(freiwillige Anlagen)의 경우 장치비(Erstellungskosten)의 20%, 의무적 설비인 경우 10%까지 지원해준다. 이를 위한 신청서는 구체적인 계산서와 지불영수증과 함께 설치 후 제출하면 된다. St.Gallen주에서는 소방청(AFS)에서 자율적 낙뢰방지기 장치비용의 30%를 지원해주며, 신청서는 건축개시 이전에 매매서류(Offertbeilage)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Aargau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

32) 2.1.2, VKF-지침 23-03 낙뢰방지기.

33) 이상전압보호(Blitzschutzpflicht)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설비목록은 3.2., VKF-지침 23-03번 참조.

위에서 서술된 기본적 의무 중에서 낙뢰방지기와 관련해서 Aargau와 St.Gallen주의 “완료준비가 된 설비/설치증명서의 신고(Meldung der abnahmebereiten Anlage/Installationsattest)”, “완성검사시 협조(Kooperation bei der Abnahmekontrolle)”, “10년 주기의 정기점검시 협조(Kooperation bei der periodischen Kontrolle nach 10 Jahren)”는 중요하다. 다른 설비 유형과는 다르게 낙뢰방지기의 경우 허가를 위한 계획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점검매뉴얼 운영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낙뢰의 신고(Meldung eines Blitzschlags)”과 “낙뢰이후 점검시 협조(Kooperation bei der Kontrolle nach einem Blitzschlag)” 등은 특정설비에 기인하는 의무사항이다. 첫 번째 의무는 측정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로 판단할 수 없는데, 소유주(Eigentümer)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 AGV(Aargau 건물보험사), GVL(Luzern 건물보험사), 소방청(AFS)으로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는 손해보전에 대한 소유주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거나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의무 측정대상이 아니다. Luzern주에서는 유일하게 관련된 정보제공의무가 “완료준비가 된 설비/설치증명서의 보고(Meldung über abnahmenbereite Anlage/Installationsattest)”이다. Luzern주와 다른 2개의 주간의 과정과 차이를 위한 실행은 다음에서 서술한다.

4.2.3 옥내 기술장비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옥내 기술장비는 승강기(Aufzugsanlagen)와 특히 소방승강기(Feuerwehraufzüge), 열순환설비(wärmetechnische Anlagen), 가스배출기(Abgasanlagen)와 환기장치(lufttechnische Anlagen) 등이다. 다음 [그림 10]은 옥내 기술장비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낸다.

[그림 10] 옥내기술장비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설비유형 정보제공의무	승강기	소방승강기	열순환설비	가스 배출기	환기설비 (환기와 온도)
허가를 위한 계획서 제출 (설비설치자)		소방허가신청서의 구성요소로서 제출 독립적 신고 불필요			
완성검사를 위한 협조 (설치자 및 설비관리자)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인 완성검사의 구성요소임			
점검 매뉴얼 운영 (설비관리자)		○			
표시/표제 붙임	○		○	○	○
정보제공 의무 수	1	3	1	1	1

위의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옥내 기술장비영역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정보제공의무가 확인되었으며, 게다가 그 중에서도 매우 적은 부분만이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한다. 승강기의 경우 “화재시 이용금지(Benützung im Brandfall verboten)”과 같은 표제를 붙이는 것 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들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로서 이 연구의 측정대상은 아니다.

소방승강기(Feuerwehraufzüge)로서 이용될 수 있는 승강기는 화재의 경우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화재시에는 소방대(Feuerwehr)의 투입 또는 대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34] 소방승강기는 50m이상의 고층건물에서 이용된다. 50m 이상의 고층건물인 경우 소방청은 어떤 경우에 소방승강기가 요

34) 2.4 VKF-지침 24-03 승강기.

구되는지 정한다.[35)]

VKF-지침의 승강기 규정에 따라 소방승강기에 대한 계획은 장치회사(Erstellerfirma)를 통한 실행개시(Ausführungsbeginn)전에 제출해야 하고, 완성검사의 작성 이후에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방승강기는 3개 주 모두에서 다른 의무들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소방승강기에 대한 계획은 건축계획에 포함되어 진행되며 소방허가신청의 구성요소로서 건물보험사에 제출된다. 법적 의무인 완성검사는 전체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소방기술적 완성검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보제공의무로서 계측되지는 않는다.

측정과 관련되는 유일한 정보제공의무는 따라서 소방승강기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führende Kontrollbuch)이다. 여기에는 기능점검(Funkktionskontrolle)과 유지보수작업(Instandhaltungsarbeiten) 등을 기록해야 한다.

4.2.4 결 론

연구의 범위안에서 확인된 실행상의 차이는 쉽게 개관할 수 있다. 요약적으로 VKF 지침과 SES 지침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상의 차이와 실행상의 차이를 유발시키며, 이는 행정부담에도 중요한 사항이다.

1. 화재경보설비 : Aargau주에서 SES 지침에 의한 화재경보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인 “15년간 사용이후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평가”는 시행되지 않았다.

2. 스프링클러설비

- St.Gallen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총점검을 위한 사전소명(Vorabklärung)은 AFS(소방청)의 유관기관인 Feuer-Stop이라는 회사에 의해 수행되며, 스프링클러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

35) 4.9.2 VKF-지침 24-03 승강기.

다. 따라서 “허가를 위한 스프링클러설비 총점검계획 제출”은 정보제공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특히 완성검사와 점검을 위한 해당관청도 차이가 난다. Aargau주에서는 둘 다 안전협회(Sicherheitsinstitut)에 의해 수행되는 반면, Luzern주에서는 GVL(Luzern 건물보험사)이 담당하고 St.Gallen주에서는 Feuer-Stop이라는 회사가 담당한다.

3. 낙뢰방지기 :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 낙뢰방지기는 건물보험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반면 Luzern주에서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피뢰설비의 건설업자가 지불한다. 점검과 정기검사의 경우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는 건물보험사의 낙뢰방지기 점검자(Blitzschutz-kontrolleure)에 의해 수행된다. Luzern주에서는 둘 다 승인된 전문회사가 담당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완성검사를 위한 협력”에서 정보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측정결과

아래에서는 측정결과를 서술하고 각 주들의 행정부담을 비교한다. 결과는 총비용의 집적단계에서 개별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라는 절차상의 기본단계와 개별단가(Stückkosten)에 이르기까지 연대순으로 서술한다.

총비용에서 시작한 후 “규율단계”과 “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서술하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개의 비용집약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부담과 VKF 및 SES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부담은 구분해서 서술한다. 주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주 소방허가신청을 자료요구에 따라 “분류하고” 절차들을 설명한다.

VFK-규정과 SES-문서로 인한 부담은 “규정” 단계에서 서술하고 설명한다. 이어서 모든 설비형태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을 서술하고 각 주들을 비교한다. 이와 동시에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는 개별 정보제공의무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5.1 총부담의 비교

2008년도 소방법으로 인한 행정부담 총액은 다음과 같다.

Aargau주	1,550,487	스위스 프랑(CHF)
Luzern주	1,269,407	스위스 프랑
St.Gallen주	2,116,145	스위스 프랑

행정부담은 주, VKF, SES라는 3개의 “규율영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표 17] “규율영역”에 따른 총부담

규율 영역	행정부담(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 규정	679,217	352,363	992,910
VKF - 소방지침	645,169	541,958	638,347
SES - 기술문서	217,101	375,086	484,887
계	**1,550,487**	**1,269,407**	**2,116,145**

각 “규율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총액을 부담하고 있는 주는 St.Gallen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의 크기를 고려할 경우에도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St.Gallen 주 소재 기업의 경우 1개 기업당 부담하는 행정부담이 가장 높다([표 18] 참조).

[표 18] 1개 기업당 평균 행정비용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별 기업수	**23,022**	**13,320**	**19,167**
1개 기업당 평균 행정비용	**67.3**	**95.3**	**110.4**

이는 주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수와 해당 사례수가 더 많다는 사실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수치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그 하나는 다른 2개 주와 달리 낙뢰방지기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비용(약 280,000 CHF)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사례수와 이에 비례한 자치단체의 소방점검(gemeindliche Feuerschau)에 높은 비용(약 215,000 CHF)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런 정보

제공의무는 Luzern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Aargau주에서는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위 표에서 3개주 모두에서 VKF-규정과 SES-문서로 인한 부담이 주의 규정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된 정보제공의무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로부터 당연히 추론될 수 있다. 주들 간의 차이는 포괄적으로 사례수의 차이와 관련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서 개별 기술적 소방설비에 따른 부담을 서술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래 표는 주의 법규정, VKF-지침 및 SES-문서로 "분류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조사한 각 주별 총액을 나타낸다.

[표 19] 규정별 전체총액

규 정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 법률	568,666	82,552	587,346
주 법규명령	100,088	60,090	216,324
기타 주 규정	10,462	209,721	189,240
소방지침 구조물(14-03)	7,706	5,505	4,404
소방지침 피난통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 표시(17-03)	464,396	274,161	384,946
소방지침 소화기구(18-03)	76,997	95,256	134,658
소방지침 낙뢰방지기(23-03)	21,799	46,646	7,635
소방지침 스프링클러설비(19-03)	51,033	58,043	60,035
소방지침 화재경보기(20-03)	28,458	59,761	43,825
소방지침 가스누설경보기(21-03)	1,328	664	443

규 정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소방지침 승강기(24-03)	2,452	1,923	2,404
기술지침 화재경보기	126,782	299,442	399,512
기술지침 가스누설경보기	1,579	789	526
기술지침 스프링클러설비	88,740	74,854	84,849
계	**1,550,487**	**1,269,407**	**2,116,145**

3개 주 모두에서 주의 법규정, VKF-지침 17-30(피난통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 표시) 및 SES-문서(화재경보기) 등 3가지가 비용집약적 “규정”이었는데 그 순위는 달랐다.

Aargau주와 St.Gallen주의 경우, 소방법이 비용집약적 법규정이다. 하지만 Luzern주에서는 계획 및 건축법(이는 비용집약적인 검사에 따른 관리가 따른다)에 가장 높은 비용이 들었다(약 204,000 CHF).

안전조명과 안전전원공급장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정보제공의무가 “점검매뉴얼 운영(Führen eines Kontrollbuchs)”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VKF-지침 17-03에 해당되는 비용이 높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또한 주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로지 사례수의 차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주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상의 경비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른 소방설비에 비해 화재경보기가 두드러지는 것은 화재경보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비형태이고, 사례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다른 2개 주에 비해 Aargau주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낮은 이유는, Aargau주에서는 “화재경보기에 대한 15년주기의 평가”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실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5.2 각 주별 비용집약적 정보제공의무 Top 5

이하에서는 각 주별 비용집약적 정보제공의무 Top 5를 표로 작성하여 설명하고, 각 주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이 표들은 정보제공의무의 명칭과 번호 및 규율영역도 제시하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에 기인한 총부담뿐만 아니라 개별단가 즉, 각 정보제공의무를 한 번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구매비용까지 포함)과 사례수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수는 SKM 공식에 맞게 해당기업 및 설비의 수를 의무이행 빈도수와 곱한 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Aargau주

[표 20] Aargau주 정보제공의무 Top 5

“규율영역”	정보제공의무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해당건수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9	안전조명 및 안전전원공급시설에 대한 점검매뉴얼 운영	223,600	2.00	447,871
Aargau	8	주의 완성검사 실행시 협력	935	340.36	318,237
Aargau	5	건축, 개축 또는 건축물·시설 및 설비의 본질적 변경에 따른 주 소방허가 신청	738	155.98	115,115
SES	50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55,536	2.00	111,239
VKF	22	자료송부의 기록, 소화기의 충전 및 유지관리, 가스소화설비, 특별한 냉각 및 소화설비	37,950	4.33	76,997

Aargau에서 비용집약적 의무는 “안전조명 및 안전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점검매뉴얼 운영”이다. 개별단가, 즉 하나의 사례에 드는 비용이 2 CHF으로 아주 적은 반면, 220,000건이 넘는 건수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또한 높은 빈도로 이어졌다. 즉, 기입이 2주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의 빈도가 26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로지 결과를 기록하는 것만이 행정비용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실제 점검은 행정비용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전자적 관리(elektronischen Kontrolle)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매 시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점검매뉴얼 운영과 더불어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인 안전관리자에 의한 설비의 지속적인 점검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자적 관리설비를 갖추는 것은 아주 많은 구매비용이 든다.

4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비 운영자에 의한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점검매뉴얼 운영”이라는 정보제공의무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든 정보제공의무는 “주의 완성검사(Abnahme-kontrolle) 실행시 협력”이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 것은 특히, 값비싼 개별단가에 그 원인이 있다. 완성검사는 통상적으로 전체 건물을 범위로 한다. 개별 시간은 건물의 크기와 복합성과는 무관하며 1시간에서 4시간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 경우 대상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차이는 없다.

Aargau주에서는 주 소방허가의 신청이 총비용 115,115 CHF으로 세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정보제공의무이다. 이 의무의 상세한 실행은 4.3에 기술되어 있다.

“자료송부의 기록, 소화기의 충전 및 유지관리, 가스소화설비, 특별한 냉각 및 소화설비”가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비용지출 원인은 해당 건수였다. 개별 단가는 4.33 CHF으로 아

주 낮았다. 이 정보제공의무의 1회 실행에 드는 비용은 겨우 1분 정도 걸리는 검사필증(Prüfplakette)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전부이다. 하지만 개당 3.25 CHF짜리 필증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중요하다.

Luzern주

[표 21] Luzern주 정보제공의무 Top 5

"규율영역"	정보제공의무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해당건수	개별단가 (in CHF)	행정부담 (in CHF)
VKF	9	안전조명 및 안전전원공급에 대한 점검 매뉴얼 운영	130,000	2.00	260,390
Luzem	4	주의 완성검사 실행시 협력	600	340.36	204,216
SES	50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점검 매뉴얼 운영 (설비운영자)	91,000	2.00	182,273
VKF	22	자료송부의 기록, 소화기의 충전 및 유지관리, 가스소화설비, 특별한 냉각 및 소화설비	22,000	4.33	95,256
SES	48	화재경보기에 대한 15년주기의 평가	700	127.14	88,997

Luzern주의 비용집약적 정보제공의무 Top 5 중 4개는 Aargau주와 같다. 여기서도 “안전조명 및 안전전원공급에 대한 점검 매뉴얼 운영”과 “주의 완성검사 실행시 협력”이 1・2위를 차지했다.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점검 매뉴얼 운영”과 “자료송부의 기록, 소화기의 충전 및 유지관리, 가스소화설비, 특별한 냉각 및 소화설비”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Aargau주를 참조하라.

Luzern 주에서는 “화재경보기에 대한 15년 주기의 평가”라는 정보제공의무가 5위에 새로이 등장했다. 여기서는 높은 개별단가가 현저히 높은 총비용을 야기했다. 화재경보기에 대한 다른 “서류작성의무(Formularpflicht)”와 비교해 볼 때, 필수 데이터의 수집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사실이 더 높은 개별단가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St.Gallen주

[표 22] St.Gallen주 정보제공의무 Top 5

“규율영역”	정보제공의무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해당건수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9	안전조명 및 안전전원공급에 대한 점검 매뉴얼 운영	187,200	2.00	374,962
St.Gallen	17	신설 또는 변경된 낙뢰방지기에 대한 완성검사시 협력	1,200	225.03	270,036
SES	50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점검 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123,240	2.00	246,850
St.Gallen	14	자치단체 소방점검에 대한 협력	3,580	60.09	215,122
St.Gallen	11	주의 완성검사 실행시 협력	441	340.36	150,099

St.Gallen주에서도 가장 비싼 정보제공의무 Top 5 중 “안전조명 및 안전전원공급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화재경보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각각 1・3위를, “주의 완성검사 실행시 협력”이 5위를 차지했다.

St.Gallen주에서는 다른 2개 주에서는 순위에 들지 못했던 “낙뢰방지기에 대한 완성검사”가 2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단가 외에, 검사한 낙뢰방지기의 개수가 특히 많았던 점이 그 원인이다. 앞서 설명한 주의 완성검사와 마찬가지로, 낙뢰방지기에 대한 완성검사도 평균적으로 3시간이 소요되고, 때문에 설비설치자(Anlagenerrichter)가 높은 개별단가를 지출하게 된다.

“자치단체 소방점검에 대한 협력”을 위해서는 1시간 정도만이 소요된다. 높은 총비용은 주의 관할영역 내에서 자치단체에 의해 실행되는 소방점검이 연간 3,580건에 이른다는 점에 기인한다.

5.3 주의 소방허가승인 신청으로 인한 부담의 비교

주의 소방허가승인 신청이 Aargau주에서만 비용집약적 정보제공의무에 속하지만, 이 의무에 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한다. 실행상의 차이(Vollzugsunterschiede)가 상이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정보제공의무와 내용상 의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각 주별 자료요구와 각 개별단가, 해당건수 및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3] 주의 소방허가승인 신청으로 인한 부담의 비교

자료요구	개별단가 (CHF)			해당건수			행정부담 (CHF)		
	AG	LU	SG	AG	LU	SG	AG	LU	SG
신청양식	66.22			738			48,870	0	0
설계도 상황설계도 층별 기본설계도 단면・전면 설계도	78.69			738			58,076	0	0
K5 건물설명 추가서류			55.05			441			24,275
건축신청 추가서류		80.69	80.69		600	441		48,416	35,586
소방계획안 - 단순	9.84	9.84	9.84	553	450	331	5,440	4,427	3,256
소방계획안 - 복잡	14.76	14.76	14.76	185	150	110	2,730	2,213	1,623
계	155.98	91.76	146.80	738	600	441	115,115	55,056	64,740

주의 소방허가승인 신청으로 인한 총부담은 Aargau주의 경우가 115,115 CHF으로 가장 높았고, Luzern주가 55,056 CHF으로 가장 낮았다. 이런 결과는 개별단가의 합계가 Aargau주의 경우 155.98 CHF으로 가장 높았고, Luzern주가 91.76 CHF으로 가장 낮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해당건수에 있어서 한 가지 예외는 Luzern주가 주 소방허가승인 신청이 2008년에 600건으로 St.Gallen주(441건)보다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별단가가 높은 St.Gallen주가 해당건수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Luzern주보다 총비용이 더 높았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 사이의 자료요구와 주의 소방허가승인 신청의 정보제공의무의 실행절차는 다르다.

모든 주는 보통 우선 승인신청에 소방계획(Brandschutzkonzept)을 요구한다. 소방계획은 소방법의 핵심을 형성한다. 비상구, 방화셔터(Brandabschnitte), 기술적 소방설비 등과 같은 설치예정 소방설비 전반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단순한(einfach) 소방계획과 복잡한(komplex) 소방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잡한 소방계획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과 같은 대형 산업・기업건축물에 요구된다. 이런 이유에서 보면, 모든 경우 중 75%는 단순한 소방계획만으로도 충분하며, 25%만이 건물보험사에 의해 복잡한 소방계획이 요구된다.

표에 나타난 개별단가는 오로지 계획서의 복사에 드는 경비만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소방계획의 경우 10분이 걸린다. 복잡한 소방계획의 경우 15분으로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이 경우 계획의 본문 부분도 모두 복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계획 작성에 필요한 더 많은 경비는 비용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문서화를 위한 경비(Dokumentationsaufwand)를 소방설계에서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며, 그 설계라는 것 자체가 내용상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상세한 설명은 앞 장의 소방계획에 관한 보론에 기술되어 있다.

Aargau주의 경우 주 소방허가승인 신청은, 필수 설계도(상황설계도, 기본설계도, 단면・전면 설계도)와 소방계획에 제안되어 있는 여러 신청양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시간비용은 140분이다. 서류에는 프로젝트, 소재지, 신청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 건물과 건물의 구조 및 건물용적과 소방설비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AGV(Aargau주 건물보험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많은 법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지만, 이 서류들은 오로지 종이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만 해 두었고 전자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서류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 다음 서류는 수기로 작성하고, 검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고 복사한다. 이 절차는 약 30분이 소요된다. 각 설계도를 복사하고 접어서 포

장하는데 시간비용이 10분 소비된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8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80분이 사용된다. 소방계획 복사에는 매번 이런 비용이 추가된다.

반면 **Luzern주와 St.Gallen주**에서는 소방허가승인 신청에 필요한 특별 서류가 없다. 소방계획 심사를 위해서는 필수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건축신청이라는 추가 서류(eine zusätzliche Ausfertigung des gesamten Baugesuchs)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설계도가 포함된 건축신청의 복사를 위해서도 80분이라는 시간비용이 든다. 소방계획 복사에는 매번 이런 비용이 추가된다.

St.Gallen주에서는 K5(건물설명 추가서류)가 추가된다. 이 서류에는 구조, 사용자재 및 소방설비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추가서류에 필수적인 보고사항의 작성은 Aargau주의 경우 신청서류 2, 3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 St.Gallen주에서는 건축신청이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PC로 작성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다양한 서류들 외에도 상응하는 서류들을 선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서류에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그리고 서류작성을 위한 시간비용은 30분이다.

보론 : 소방계획(Das Brandschutzkonzept)

소방계획은 소방법의 핵심이다. 소방계획은 프로젝트상의 소방안전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건축주의 이름으로 설계자에 의해 제안되며 건축보험의 승인요건으로 사용된다. 게다가 이런 확정조치들은 그 밖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설계도의 참고가 되며, 감정의뢰의 기초로 그리고 추후에는 건물 운영자/사용자에 의해 안전기준의 문서로 사용된다.
계획은 건설설계 진행과정에서 설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 조치들이 기입되어 있는 건설설계도들은 소방계획의 기초가 된다. 소방계획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용도 건물 모두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단순한” 소방계획과 “복잡한” 소방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순한” 소방계획에는 개별 방화셔터, 비상구의 길이와 방향에 대한 중

요한 정보, 비상구의 위치와 그에 대한 안내, 그리고 소방장비에 대한 정보 및 개별 소화기구의 위치 등이 들어있다. 통상적으로 설계자가 이것을 작성한다. 건축물 전체 및 층별 도면이 토대가 된다. 이것은 설계자와 건물보험사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1차 회담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소방계획의 토대로 논의된다. 이 계획은 건물보험사사와의 사전상담 이후, 건물보험사사의 조건과 의견을 삽입하게 위해 수정된다.
복잡한 소방계획에는 단순 계획에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의 정확한 위치 및 이들 설비들의 각 센터의 위치들이 추가되어 있다. 더불어 건물의 안전조명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 이 계획안은 대체로 설계자와 설치되어야 하는 각 설비에 대한 부분설계자 사이의 협력작업으로 만들어진다. 몇몇 경우에는 복잡한 소방계획의 작성도 소방대책 전문가에게 맡겨진다. 복잡한 소방계획도 건축설계의 기초로 작성된다. 이 구상안의 복사본은 각각의 부분 설계자들에게 교부되고, 부분 설계자들은 자신의 담당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이를 이용한다. 복잡한 소방계획은 설계도들의 설명 외에도 종종 토대가 되는 근거, 보호목표, 건축, 용익(Nutzung), 건축양식, 구체화(Materialisierung), 건축상・기술상・운영상 필요사항 및 비상구, 연기배출, 예방적 소방, 건축기술적 설비 등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도 포함한다.
소방계획을 세우는데 드는 시간비용은 아주 상이하다. 비용은 건물의 크기 및 복잡성 외에도 특히 설계자의 경험에 좌우된다. 건물의 상세한 깊이와 크기에 따라 시간비용은 4시간에서 40시간에 이른다.

보론: 사전협의(Das Vorabgespräch)

소방허가승인 신청서의 제출에는 통상 설계자와 건물보험사사의 사전협의가 전제된다. 이런 사전상담이나 협조상담은 각각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명과 프로젝트 최적화에 기여한다. 더불어 신청에 있어서 어떤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사전협의를 위한 시간비용은 소방승인 신청의 비용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1. 사전협의는 3개 주의 모든 건물보험사사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본 상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정보제공의무의 실행을 위한 절차단계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설계자들은 건물보험사와의 상담을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담이, 이어지는 신청과정과 프로젝트 과정을 현저하게 최적화해주기 때문이다. 설계자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허가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설계자에게 상담이란, 상담시에 설명되었던 것과 같은 화재방지 예정 조치들이 허가절차에서 건물보험사에게 받아들여지고, 절차 중 일부를 지연시킬 수도 있는 조건들이 더 이상 부가되지 않는 것을 담보해주는 방법이다. 이런 배경에서 사전상담을 소방허가 신청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의 절차단계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설계자 입장에서 사전상담은 허가절차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그런 점에서 설계자는 상담제공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강제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2. 사전상담을 소방허가 신청 절차단계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프로젝트 설계와 최적화에 대한 사전상담은 허가절차에 속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내용적 의무이라는 점에 있다. 설계자는 통상적으로 상담 전에 건설설계도를 이미 다 작성하고 소방안전계획에 대한 대강의 초안을 만든다. 상담 단계에서는 소방안전의 본질적이고 복합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게다가 상담에서는 전문적이고 법률에 규율되지 않은 특수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전협의는 사전설계안의 크기와 복합성에 따라 한 시간에서 네 시간이 소요된다. 복잡한 설계안의 경우 한 번에 약 두 시간이 걸리는 상담이 종종 2차에 걸쳐 진행된다. 비용 측면에서 소규모 설계안에 대한 한 시간 가량의 상담에는 110 CHF이 들고 아주 복합적인 설계안에 대한 두 시간 가량의 상담에는 660 CHF이 든다.

소방허가 신청에 대한, 전술한 비용가치를 고려할 때, 사전상담이 소방허가신청의 중요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행정부담을 계산할 때 이런 상담을 고려한다고 하면, 상담은 전체비용의 40%에서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설계자 대부분은 상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기꺼이 시간적 비용을 투자한다. 이것이 최적화된 절차과정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차후에 일어날 예기치 못한 사건을 예방하기 때문에, 종종 결과적으로 이어서 설계안을 수립하고 승인절차를 밟는 데 드는 시간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

5.4 VKF/SES-정보공개의무로 인한 부담의 비교

VKF 및 SES-정보제공의무에 기인하는 행정부담은 우선 VKF-지침 및 SES-문서 등과 같은 규정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아래 표는 설비형태와 규정에 따른 각 주의 비용을 표시하고 있다. VKF-지침에 근거한 정보제공의무의 많은 부분은 SES-문서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당해 비용들은 VKF-지침에 편입된다. SES-문서에 편입된 비용은 오직 그곳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기인한다.

[표 24] 분석형태와 규정에 따른 행정부담

형 태	"규 정"	행정부담 (CHF)		
		AG	LU	SG
화재 경보기	VKF BS-RL 화재경보기 (20d-03)	28,458	59,761	43,825
	SES TRL 화재경보기	126,782	299,442	399,512
	계	**155,240**	**359,203**	**443,337**
스프링 클러	VKF BS-RL 스프링클러(21d-03)	51,033	58,043	60,035
	SES TRL 스프링클러	88,740	74,854	84,849
	계	**139,773**	**132,897**	**144,884**
가스누설 경보기	VKF BS-RL 가스누설경보기(19d-03)	1,328	664	443
	SES TRL 가스누설경보기	1,579	789	526
	계	**2,907**	**1,453**	**969**
소방 시설	VKF BS-RL 소방설비(18-03)	76,997	95,256	134,658
낙뢰 방지기	소방지침-낙뢰방지기 (23-03)	21,799	46,646	7,635
	총계	**396,716**	**635,455**	**731,483**

각 주 사이의 차이는 무엇보다 상이한 해당건수에서 비롯된다. 비용에 영향을 주는 약간의 실행상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소방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실행절차는 세 주 모두에서 동일하다.

실행상의 차이가 주는 영향(3.2.2 참조)은 해당 분석형태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VKF-지침 18-03 소방설비에 편입되어 있는 비용은 단 한 번 평가된 정보제공의무인 “자료송부의 기록, 소화기의 충전 및 유지관리, 가스소화설비, 특별한 냉각 및 소화설비”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3.2.2에서 설명했다. 새로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한다.

아래 항에서는 개별 분석형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 각 분석형태상에 따른 비용을 개별 정보제공의무의 영역에 따라 서술한다. 정보제공의무(VKF-지침 또는 SES-문서)와 수범자의 “규율영역”도 입증된다. 수범자, 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설비 설치자 또는 설비 운영자이다.

5.4.1 화재경보기 영역에서의 행정부담

화재경보기는 세 주에서 모두 가장 많이 적용되고/요구되는 소방설비이다. 화재경보설비는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화재경보기를 통해 통상적으로 전체 건물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알아서 화재신고센터(Brand-meldezentrale)에 화재를 신고한다. 이 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소방센터(Feuerwehrzentrale)에 연결되어 있다.

아래 표는 VKF-지침 20-30과 SES-문서(화재경보설비)에서 비롯되는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해당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5] 화재경보설비에서의 행정부담

“규율 영역”	정보 제공 의무 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행정부담(CHF)		
				AG	LU	SG
SES	43	화재경보설비 승인을 위한 프로젝트 신청(신고)	설치자	3,635	7,573	5,528
SES	44	특수 화재경보설비 승인을 위한 신청(등록)	설치자	320	1,602	641
VKF/ SES	45	화재경보설비 장치감정서 제출	설치자	8,193	17,205	12,617
VKF/ SES	46a	화재경보설비 완성검사시 협력(시설 설치자)	설치자	11,252	23,628	17,327
SES	48	15년마다 화재경보 설비 평가	설치자	0	88,997	120,781
SES	50a	점검매뉴얼 운영(시설 설치자)	설치자	11,533	18,897	25,592
VKF/ SES	46	화재경보설비 완성검사시 협력(설비 운영자)	운영자	9,014	18,928	13,881
SES	49	작동중단 신고	운영자	55	100	120
SES	50	점검매뉴얼 운영(설비 운영자)	운영자	111,239	182,273	246,850
		계	**설치자**	**34,932**	**157,901**	**182,486**
		계	**운영자**	**120,307**	**201,302**	**260,851**

Aargau가 다른 두 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총비용을 사용한 이유는 상이한 해당건수 외에 “15년을 주기로 하는 화재경보 설비의 평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Aargau에서는 이런 SES-의무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은 기초적 산정의 토대가 된다.

[표 26] 주별 화재경보 설비

주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새로운 화재경보기의 수	48	100	73
특수한 새로운 화재경보기의 수	2	5	4
주 영역 안에서의 화재경보 설비의 총수	1,068	1,750	2,370
15년마다 평가받아야 하는 설비의 총수	0	700	950

비용집약적 정보제공의무는 설비 운영자에 의한 화재경보기에 대한 점검매뉴얼의 운영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은 높은 해당건수에 기인한다. 각각의 설비들에 대해 점검매뉴얼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주 영역 내에 존재하는 설비의 총수가 이에 관련된다. 나아가 안전수임자 및 설비 책임자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하고, 이 점에 있어서 말 그대로 기재가 이루어진다는 것(25회)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개별단가, 즉 한 번 기재하는데 드는 비용은 2 CHF(2분의 시간비용)로 아주 낮다.

Luzern주와 St.Gallen주의 경우, Aargau주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 “15년 주기의 화재경보 설비 평가”라는 정보제공의무에 두 번째로 많은 행정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행정비용이 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은 해당 건수에 있다. 현존 설비의 90%가 15년마다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127.14 CHF이라는 비교적 높은 개별단가도 한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개별단가가 비싼 이유는 “평가”를 실시해서 작성하고 시험해보며 출력하여 송달하는데 총 105분이라는 시간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있다.

5.4.2 스프링클러 영역에 있어서 행정부담

스프링클러는 건물전체를 보호하는 소화시설이다. 항상 스프링클러 본부가 시설의 구성부분이 된다. 이에 더해 기업은 스프링클러 관리 감독자를 고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는 VKF가 증명서를 교부하는 유일한 소화시설이다. 스프링클러는 VKF-지침 19-03d와 SES-기술문서(스프링클러)에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는 VKF-지침 21-03과 SES-문서(스프링클러)에 기인하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그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7] 스프링클러 영역에 있어서 행정부담

“규율 영역”	정보제공의무 번호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수범자	행정부담 (CHF)		
				AG	LU	SG
VKF/ SES	26	스프링클러설비 승인을 위한 프로젝트 신청(신고)	설치자	5,414	7,580	6,768
VKF/ SES	27	스프링클러 설치증명서 제출	설치자	5,250	7,350	6,563
VKF/ SES	29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 협력(설비 운영자)	운영자	7,211	10,035	9,014
VKF/ SES	29a	스프링클러 완성검사시 협력(시설 설치자)	설치자	9,001	12,527	11,252
VKF/ SES	30	스프링클러 정기검사 협력	운영자	24,156	20,551	26,440
SES	31	스프링클러 점검매뉴얼 운영(설비 운영자)	운영자	51,533	43,842	56,404
SES	31a	스프링클러 점검매뉴얼 운영(시설 설치자)	설치자	4,341	3,693	4,751
SES	32	포말 물질의 품질심사 증명	설치자	3	3	3

“규율 영역”	정보제공의무 번호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수범자	행정부담 (CHF)		
				AG	LU	SG
SES	33	매 10년 스프링클러 시설 검사 신고	설치자	2,047	1,742	2,241
SES	34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서 제출	설치자	11,198	9,285	0
SES	35	총좀검수리에 따른 스프링클러의 설치 증명서 제출	설치자	4,731	3,923	5,178
SES	36	총점검수리에 따른 스프링클러 완성검사시 협력(설비 운영자)	운영자	6,529	5,408	7,133
SES	36a	총점검수리에 따른 스프링클러 완성검사시 협력(시설 설치자)	설치자	8,150	6,751	8,904
SES	37	스프링클러의 미가동 상태 신고	운영자	104	104	117
SES	38	스프링클러의 재가동 신고	운영자	104	104	117
		계	**설치자**	**50,135**	**52,853**	**45,659**
		계	**운영자**	**89,637**	**80,044**	**99,225**

새로운 정보제공의무 모두가 설비 설치자와 관련된 것이고, 설비 운영자는 단지 6개의 정보제공의무만을 실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설비 운영자의 총행정비용이 모든 주에서 설비 설치자의 총행정비용보다도 높았다. 세 개의 정보제공의무는 두 수범자그룹 모두에 관련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선 완성검사(의무 29, 29a 및 의무 36, 36a)가 있고, 나머지는 점검매뉴얼의 운영(의무 31, 31a)이 여기에 해당된다. 설비 운영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연간 점검은 설비 설치자가 기입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설비 운영자의 비용은 전체적으로 비용집약적인 정보제공의무인 스프링클러 책임자의 “점검매뉴얼 운영”에 기인한다.

건당 비용은 아주 낮다. 화재경보설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회 기재하는데 드는 비용은 겨우 2분이다. 높은 비용은 해당건수 때문이다. 하나의 스프링클러마다 하나의 점검매뉴얼이 운영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 책임자는 점검시간, 점검결과, 현재 작동상태, 변경, 확대 및 설비작동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마다 그리고 달마다 이루어지는 기능관리를 고려하면, 하나의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연간 최소한 64회의 기재가 행해진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비싼 정보제공의무인 "스프링클러 정기검사시 협력"은 설비운영자에 관련되는 것이다. 정기검사는 설비의 위험산정에 따라 1 내지 3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평가는 2년의 평균치를 근거로 삼는다(빈도 = 0.5). 정기점검은 평균적으로 2시간이 걸리고, 설비 운영자에 의해 특정되어 모든 방에 출입이 허용되고 이미 공지가 된 스프링클러 책임자의 참여하에 검사가 이루어진다. 건당 비용은 120,18 CHF이다. 행정기관의 정기검사라는 것이 다른 설비형태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점검이 오로지 설비 책임자/안전 책임자에 의해 또는 부득이하게 위탁을 받은 관리책임회사에 의해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완성검사시 협력"은 모든 주에서 총비용에 따를 때 설비설치자에게는 비용집약적인 정보제공의무에 속한다. Aargau주에서는 안전연구소(Sicherheitsinstitut)가, Luzern주에서는 GVL(Luzern주 건물보험사)이, St.Gallen주에서는 소방회사(Firma Feuer-Stop)가 급수시설과 소방대원의 가동하에 점검이 이루어진다. 설비설치자 외에 설비운영자도 스프링클러 책임자의 일원으로 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협력의무는 설비 운영자에게도 동일한 정도로 관련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자 및 전문설계자도 참여한다. 점검시 작동, 장치, 경보가 내·외부적으로 점검되고 연소제

어(Brandfallsteuerung)도 점검된다. 점검시간은 설비의 크기, 평가를 위한 인터뷰에 대한 응답과 점검위원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평균적으로 4시간이 산정된다. 점검시 사례의 약 80%에서 수량계(Wassermessung)가 추가적으로 검사된다. 이럴 경우 4시간에 평균적으로 2,5시간이 더해진다. 인터뷰의 응답에 따르면, 주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행해지는지에 대한 어떠한 규칙성도 찾을 수 없다. 수량계의 점검이 추가되지 않는 검사의 개별단가는 설비 설치자의 경우 300 CHF이고, 설비 운영자의 경우 240 CHF이다. 수량계 점검이 함께 이루어진 검사의 개별단가는 설비 설치자의 경우 약 490 CHF이고, 설비 운영자의 경우 390 CHF이다. 비용의 차이는 상이한 요금에서 나온다.

"허가를 위한 스프링클러의 총점검수리서 제출"이라는 의무는 개별단가가 600 CHF 이상으로 산정되며, 설비설치자에게는 비용집약적인 정보제공의무에 속한다. 개별단가는 시간비용이 약 500분이라는 점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여기에서 시간비용의 대부분(약 3/5)은 "총점검수리 예비조사(Vorabklärung Generalüberholung)"이라는 서류양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할애된다. 이러한 수집은 대부분 어렵다. 20년이 경과한 경우 많은 정보와 서류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고의 기재(Bestandsaufnahme)는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그 외 시간비용의 대부분(120분)은 서류의 작성에 할애된다. 모든 부족분이 똑바로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비용은 작성된 서류 점검, 6개의 부속서류(Begleitschreiben) 작성과 복사, 6개의 편지를 봉해서 송달하는데 쓰인다. 이 서류는 건물보험사 외에 관련 전문부서(Fachstelle), 관할지역 소방대(Ortsfeuerwehr), VKF, 수도국 및 설비 운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많은 다른 의무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고비용 의무는 비용집약적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스프링클러의 약 90%가 총점검수리를 받는다. 하지만 20년에 한 번 꼴이기 때문에, 그

빈도는 겨우 0.05이다.

St.Gallen주에서는 설비 설치자 측에 “승인을 위한 스프링클러의 일반 검사수리서 제출”에 관한 어떤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예비조사를 소방회사가 AFS(소방청 : Amt für Feuerschutz)의 위탁에 의해 실행하고, 그 한에서 소방회사는 행정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5.4.3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의 개별단가 대비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의 경우 기초정보제공의무는, 법분석과 절차분석의 결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하지만 개별단가는 다르다. 왜냐하면, 실행에 상이한 서류들이 사용되고 또는 상이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에 있어서 “승인을 위한 프로젝트 제출(신고)”, “설치증명서의 제출” 및 “완성검사시 협력(설비 설치자)”이라는 기초정보제공의무의 개별단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28]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의 개별단가 대비

정보제공의무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프로젝트 신고	75.73 CHF*	270.71 CHF
설치증명서	163.85 CHF	262.51 CHF
완성검사	405.30 CHF	878.15/540.40 CHF**
* 특별 적용 없는 화재경보기 신고의 개별단가 ** 수량계 검사가 포함된 검사원의 점검 / 수량계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검사원의 점검		

위의 세 가지 정보제공의무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경우가 화재경보기의 경우 보다 개별단가가 더 높다.

화재경보기의 경우, **프로젝트 신고**시에는 오직 작성된 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프로젝트 서류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양식을 작성한 후, 검사하고 첨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비치하는데 드는 시간비용은 65분에 달한다. 신고서류는 건물보험사 외에 해당지역 소방대와 설비 운영자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세 개의 일반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편비용은 3 CHF이 든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신고서류는 “예비조사”와 “신고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단면·전면 설계도와 유압계산(hydraulische Berechnung)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간비용은 200분이 소요된다. 이 비용의 절반은 설계도면을 작성하고/복사하며 포개어 접는데 할애된다. 화재경보기의 경우와는 달리 스프링클러 설비 신고서는 5군데에 송달해야 한다. 건물보험사 외에 전문부서, 지역 소방대, 수도국, 설비 운영자에게도 작성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는 더 높은 시간비용 외에도 더 높은 우편비용을 야기한다. 함께 보내야 하는 설계도 때문에 신고 1건당 6 CHF의 우편비용이 지출된다.

설치증명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화재경보기의 경우에도, “설치증명서”라는 서류 외에 설계도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간비용은 총 135분이다. 이 중 절반보다 약간 작은 정도가 설계도면의 작성/복사에 할애된다. 나머지 비용은 프로젝트 서류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 서류 작성, 첨서 작성, 출력, 완전성 점검, 봉투에 넣고 비치하는데 쓰인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증명서 외에 적정 유압 계산 및 수정설계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총시간비용은 216분인데, 여기에서도 약 절반 가량은 설계도를 작성하고/복사하며 포개어 접는데 쓰인다.

스프링클러의 경우에 더 높은 시간비용이 든 이유는, 설계도와 계산서를 포함하는 설치증명서를 6부 작성해애 하기 때문이다. 화재경보

기의 경우에는 3부만 작성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스프링클러는 첨서의 작성과 출력, 설계도의 작성/복사, 봉투에 넣어 송달하고 비치하는데 시간비용이 두 배 지출된다. 양 설비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감정서 한 개당 6 CHF의 우편료가 구입비용으로서 추가된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완성검사의 개별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전 항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완성검사는 수량계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수량계가 포함되지 않은 검사는 평균 4시간이 걸리지만, 수량계가 포함된 검사는 2.5시간이 추가로 걸린다. 검사에는 기본적으로 작동, 장치, 내외부의 경보장치, 화재제어가 점검된다.

화재경보기 검사의 경우, 자세한 기술적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건물 내 전체 경보기가 개별적으로 검사된다. 이에 대해 설비의 전체기능과 작동이 점검된다. 검사는 평균 3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스프링클러의 경우보다 현저히 짧은 것이다.

5.4.4 가스누설 경보기에 있어서 행정부담

가스누설 경보기는 VKF-지침 21-03d와 SES-기술문서(가스누설 경보기)에 규율되어 있다. 가스누설 경보기는 공기 중 가연성 가스와 연기의 특정 농도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 설비는 소수의 산업용 건물에만 설치되고, 대부분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특정 공간에만 설치된다. 따라서 해당건수가 아주 낮아 행정부담이 적다.

아래 표는 가스누설 경보기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내고 각각의 규율영역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오른쪽 마지막 세 항목들은 주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별 비용을 나타낸다.

[표 29] 가스누설 경보기에서의 행정부담

규율 영역	정보 제공 의무 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행정부담 (CHF)		
				AG	LU	SG
VKF/ SES	51	가스누설 경보기 프로젝트 승인 제출(신고)	설치자	517	259	172
VKF/ SES	52	가스누설 경보기 완성검사시 협력 (설비 운영자)	운영자	361	180	120
VKF/ SES	52a	가스누설 경보기 완성검사시 협력 (설비 설치자)	설치자	450	225	150
SES	53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증명서 제출	설치자	1,579	789	526
		계	**설치자**	**2,546**	**1,273**	**849**
		계	**운영자**	**361**	**180**	**120**

가스누설 경보기의 경우, 운영자 부담이 시설 설치자의 부담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설비 운영자에게는 새로 설치되거나 변경된 가스누설 경보기에 대한 완성검사에 협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스누설 경보기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는 화재경보기에 있어서의 의무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행정기관에 의한 승인과 운영자에 의한 설비작동 이후에는, 화재경보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존재했던 의무들이 가스누설 경보기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시간적 간격 이후의 설비에 대한 점검이 행하여지지 않으며, 또한 가스누설 경보기에 대한 점검매뉴얼도 작성될 필요가 없다. 낮은 해당건수 외에, 바로 이런 점이 가스누설 경보기에 있어서

의 행정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가스누설 경보기에 있어서 비용집약적 정보제공의무는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증명서 제출”이다. 이것의 개별단가는 245.14 CHF에 달하는데, 이는 당해 의무를 실행하는데 드는 시간비용이 240분이고, 우편비용이 6 CHF이라는데 기인한다. 장치 점검서는 3부가 작성되어야 하고, 건물보험사와 전문부서 및 설비 운영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장치설계도를 작성하고/복사하며 접는데 총시간의 약 70%라는 가장 높은 시간비용이 할애된다. 나머지 시간비용은 프로젝트 서류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뽑아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를 완성하여 여러 부 복사하며 3부의 첨서를 작성하여 세 개의 봉투에 담아 송달하는데 사용된다.

5.4.5 낙뢰방지기에 있어서 행정부담

낙뢰방지기의 경우 3개주 특히, Luzern주와 나머지 2개 주사이에는 정보제공의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래 표는 VKF-지침 23-03d으로부터 나오는 4개의 주요 정보제공의무를 주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30] 낙뢰방지기에 있어서 행정부담

“규율영역”	정보제공의무 번호	정보제공 의무 내용	수범자	행정부담 (CHF)		
				AG	LU	SG
VKF/ St.Gallen	61/18	낙뢰방지기에 대한 검사시 협력*	운영자	18,227	0	270,036
VKF	62	점검 준비된 설비의 통지(장치 감정서)	설치자	587	46,646	7,209

“규율영역”	정보제공의무 번호	정보제공 의무 내용	수범자	행정부담 (CHF)		
				AG	LU	SG
VKF/ St.Gallen	63/19	낙뢰방지기 정기점검*	운영자	2,819	0	11,017
VKF	65	낙뢰이후 점검협력	운영자	165	0	426
		계	설치자	**587**	**46,646**	**7,209**
		계	운영자	**21,212**	**0**	**281,479**
* St.Gallen주에서의 비용은 소방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제공의무를 서술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St.Gallen주의 경우에는 주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St.Gallen주의 비용도 이 표에서는 비교를 위해 서술하였다.						

St.Gallen주에서 상당히 더 높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더 많은 해당 건수 때문이다. 정보제공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는 Aargau주와 St. Gallen주가 동일하다. Luzern주와 다른 2개 주사이의 비용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의 절차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Luzern주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것이다.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는 전문회사(Spengelei- oder Elektrounternehmen)가 자발적 낙뢰방지기와 의무로 부과된 낙뢰방지기를 설치한다. 이 회사들은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는다. 설치회사는 작업을 마친 후 AGV 및 AFS에 검사를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한다. 이런 통지는 형식이 없고, 종종 전화로 이루어진다.

검사는 검사원(Blitzschutzkontrolleur ; St.Gallen주에서는 지역검사관 [die Regionalaufseher für Blitzschutz])에 의해 이루어진다. 검사원은 건물보험사에 점검한 설비에 대해 통지한다(설치증명서에 상응하게. 이 경우 어떤 정보제공의무도 없는데, 그 이유는 검사관이 건물보험사의 “위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원 점검의 경우, 검사원이 시설 설치자의 참석 하에 모든 설비들을 검사한다. 검사원

의 점검은 평균적으로 3시간이 걸린다. 시설 설치자의 협력은 전적으로 검사관이 시설지붕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국한된다.

작동 10년 이후의 정기점검도 검사원이 한다. 시설 설치자의 협력은 검사원이 시설물의 출입을 허용하는데 국한된다. 낙뢰로 인한 파손신고의 경우 검사원은 해당 설비를 운영자의 지속적인 참여 없이 재차 점검하여 하자보고서를 작성하여 건물보험사에 송부한다. 이것이 소유주에게 설치회사나 다른 전기회사를 통해 하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준다. 설비 운영자는 작업완료 이후 다시 건물보험사에 알린다. 건물보험사는 검사원의 점검을 위해 검사관을 파견한다. 그 밖의 절차는 설비의 신규설치에 따른 과정과 일치한다.

Luzern주에서는 이런 전체 절차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Luzern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목록표에 나열되어 있는 승인된 관리점검회사(Kontrollfirma)에 의해 낙뢰방지기가 설치된다. 이 회사들은 전문인력을 교육시킬 의무를 진다. 승인된 회사는 건물주를 통해 위임을 받은 후 설비를 설치한다. 작업완료 후 관리점검회사의 공증된 직원이 스스로 검사원 점검을 실시한다. Luzern주에서는 “검사원의 점검에 협력”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행정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관리점검회사는 공식 설치증명서를 사용하여 GVL에 대응하는 설치 및 점검 서류를 작성한다. 서류 작성과 송부에 약 70분의 시간비용이 소요된다. 서류양식은 GVL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본 서류는 간단하게 작성될 수 있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설비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관리인을 기재해야 한다. 감정서에는 우편물 수취 위임에 관한 짧은 첨서가 포함된 채로 GVL에 송부된다. 개별단가는 우편비용을 포함하여 87.51 CHF이다.

10년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설비 운영자는 적시에 점검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는 GVL의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에는 통상 빈 감정서식용지와 해당 지역 소재 관리점검회사의 리스트가 들어있다. 건물주는

어느 회사에게 위임할지를 결정한다. 검사는 설비 운영자의 비용으로, 그러나 그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다. 낙뢰로 인한 파손신고의 경우 설비 운영자는 재차 점검 및 하자보수를 관리점검회사에 위임해야 한다. 점검 및 작동은 설비 운영자의 비용으로, 그러나 그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리비용은 화재보험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Luzern주의 더 낮은 행정부담이라는 것은 다른 주와의 관계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라진다. 즉, 건물주/설비 운영자가 거의 모든 점검상의 재정적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는 재정적 비용(낙뢰방지기의 점검/피뢰검열관의 작업)은 건물보험사가 부담한다(Aargau주의 경우, 연간 점검비용 약 100,000 CHF과 작업비용의 절반인 약 80,000 CHF이 여기에 해당한다).

6. 질적 설문조사 및 최적화 결과

절차와 시간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질적 측면을 조명해 보았다. 인터뷰에서는 행정부담과 소방대책에 관한 일반적 질문을 하였고, 더불어 최적화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하에서는 질적 설문조사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여론을 서술한다. 이에 더해 인터뷰로부터 얻은 최적화방안을 소개한다. 개선방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내용상 요구사항의 실행과 통일을 광범위하게 조화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부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최적화방안을 질적 설문조사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6.1 질적 설문조사로부터 나오는 여론

전체적으로 고찰해보면,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을 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소방대책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고, 효과적인 소방대책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결부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총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이런 행정비용은 특별부담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운영자 입장에서 소방대책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용편익관계(Kosten-Nutzen-Verhältnis)에 의거하고 있다.

질적 설문조사에서 나온 진술들은 아래의 주제영역으로 나뉜다.

- 법문서, 양식 그 밖의 정보들의 가용성
- 법개정 공고
- 법적 근거, 하자 있는 실행, 실행의 차이
- 서식
- 전자서신교환/디지털화

- 건물보험사와 중앙본부 담당자와의 공동협력
- 전문능력(Fachkompetenz)
- 경쟁

이하에서는 개별 주제영역별로 고찰한다.

법문서, 양식 그 밖의 정보들의 가용성

설비의 설치자와 운영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방대책기술 정보의 가용성에 대해 만족스러워 한다. 소방기술포럼(Forum für Technischen Brandschutz)과 VKF의 인터넷 사이트가 정보원(Quelle)으로 이용된다.

Aargau주 설계자들은, 인터넷상으로는 소방허가 신청양식을 가져올 수 없고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서류양식이 오로지 종이서류 형태로만 존재하고 전자서류 양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GV의 의견개진 이후 동일한 작업의 디지털화 시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실례로 St.Gallen주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필요한 신청서류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건축인가 신청의 한 형태로 사용된다.

법개정 공고

VKF-규정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개정된다. 주나 다른 기관을 통한 개정사안의 체계적 공고는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다. Aargau주 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련 회사들이, 개정된 지침이 어느 시점에서 발효되는지 및 주에서는 지침에 대한 어떤 예외들이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통지된 문서들을 가지고 있다.

SES는 필요에 따라(즉 예컨대, 법적 또는 기술적 규정들의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기적으로 정보제공(Informationsveranstaltungen)이 이루어진다.

EU와의 쌍방 협정을 고려하면,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 EU가 새로운 법률, 예컨대 제품 또는 설치기준(Produkt- oder Installationsnormen)을

공포한다면, 이들은 스위스에서 자동적으로 기준통일화가 이루어진다. 설치자들은 직업조합이나 유사한 소식통을 통해 이들 기준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상응하는 지식들을 행정기관측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좌초된다.

법적 근거, 하자 있는 실행, 실행의 차이

법적 근거, VKF-규정 및 SES-문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다만, 스프링클러의 분해검사(Generalüberholung)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개별적인 문제가 공공연하게 존재한다. 스프링클러에 관한 VKF-지침은 현재 개정 중에 있다. 개정 초안에도 분해검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흠결이 항상 존재한다. 분해검사를 명령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스프링클러 회사는 분해검사와 관련하여 설비 운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회사는, 분해검사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방편으로 건물보험사가 설비 운영자에게 분해검수 기한을 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

시설 설치자들은 VKF-지침의 해석이 주마다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결국 실행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평가했다. VKF-지침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석여지가 남아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보험사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각 주마다, 사람에 따라, 심지어 한 주 내에서도 상이한 해석을 낳게 했다. 설비회사의 생각에 따라 각 주는 다른 것을 요구한다. Luzern주에 설치되고 검사를 받은 설비들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St.Gallen주에서도 구입가능하다. 여기에는 “주별로 다른 것들이 탄다(Es brennt in jedem Kanton anders)”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스위스 전체나 적어도 다수의 주에서 활동 중인 설비회사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고, 또한 당해 주에 맞추어야 한다

는 결론에 이른다. 계획된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우선 승인절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고나 설치시에 나온다. 어쨌든 이런 요구들이 오로지 법적 근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상이한 요구들이 가격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프로젝트 실행 시작 전에 비용과 관련하여 때때로 잘못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St.Gallen주는 엄격한 해석을 하는 주이고, Aargau주는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주이다. 스프링클러 영역에서 Aargau주와 Luzern주 사이의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GVL 직원이 예전에는 안전연구소(Aargau주에서는 스프링클러의 검사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에서 일을 했었다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 St.Gallen주에서는 특히 AFS 및 권한을 가진 전문부서의 개정요청을 비용유발자(Aufwandstreiber)로 불렀다. 기본적으로 높은 요구사항들이 제시될 것이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고 설비들은 어떻게 설치되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신고와 함께 제출되고, St.Gallen주에서는 항상 설비점검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출구도면과는 구분되는 스프링클러 설치계획의 도움으로 분명해졌다. 기본적으로 설치과정에서 변경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설비에 4~8 시간의 추가적인 비용(다른 주에서는 이런 형태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이 든다. 게다가 St.Gallen주에서는 관청의 해명이 종종 아주 오래 걸린다는 불평을 듣는다(1개월에서 2년). 설비 프로젝트의 경우, 검사원 감정서를 AFS를 통해 송달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는 것이 그 예이다. 예컨대 취리히에서처럼 St.Gallen에서도 많은 전문부서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상이한 해석은 부분적으로는 지침상의 불분명하고 너무 모호한 개념정의에 기인한다. 완전히 "빈약하고", 불충분하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연기 및 열통풍설비(Rauch- und Wärmeabzug-

sanlagen)에 대한 VKF-지침이 특히 여기에 해당된다.

지침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무상 연기 및 열통풍설비들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도/허가가 가능하지도 않고, 신고를 필요로 하지도/허가가 가능하지도 않다. 설문지를 작성한 시설 설치자에게 이것은 소방경찰이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스스로 품질을 검사할 수 없고,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를 보존하고 있을 경우, 주요부담자는 소비자가 된다고 한다. 연기 및 열통풍설비와 모든 기술적 소방설비 영역에서의 격렬한 가격전쟁을 고려할 때, 관청의 공인(허가 및 검사)은 설치자와 고객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연기 및 열통풍설비는 분해검사와 관련하여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문제가 덜 제기되지만,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주들은 공공연하게 부족한 법적 상황을 다른 방법과 관점에서 다룬다. 예컨대 취리히(Zürich), 베른(Bern), 바트(Waadt)와 같이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몇몇 주들은 개별적인 실행지침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VKF-지침을 도입해서 이룩하려는 조화(Harmonisierung)를 고려하면 아주 비생산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불충분한 법적 상황의 제거에 이미 기능이 발휘되었다. SWKI는 연기 및 열통풍설비에 대해 이미 회람되고 있는 기술표준 문서를 발행했다. 이러한 간행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연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루어졌다. 연기 및 열통풍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VKF-지침이 이루려는 조화의 관점에서는 이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고무되었다.

- 해석의 여지와 이로부터 기인하는 실행상의 차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침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지침은, 누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확정해야 한다. 인터뷰의 응답에 따르면,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는 소유주/설비운영자가 항상 “피기망자”가 된다.
- 이에 더해, 언제, 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하고, 어떤 차단막, 문, 빗장, 비상등 등이 계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비상구, 방화설계도 및 소방안전계획에 대한 요구들이 통일되어야 한다.

서 식

현재 서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 현재 여러 서류양식들이 존재하고 VKF와 SES 사이의 관할구분이 부분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 통일된 서식이 선정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워드문서와 엑셀문서의 병존은 사라져야 한다. 통일적인 서식은 PC에서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서류양식들은 현재 VKF와 SES를 통해 수정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지침이 없었던 설비형태에 대한 서류양식들도 고안되어야 한다. 특히, 가스 소화설비와 연기 및 열통풍설비가 그러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VKF-공증도 없었다. 연기 및 열통풍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위에서 언급한 지침개정과 관련해서 서류양식이 고안되었다. 가스 소화설비 및 그 밖의 특별 소화설비들의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설비들도 승인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서신교환/디지털화

전자서신교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설문지 응답자의 관점에서, 상호작용적 전자서류는, 전자서명이 승인

되고 서류들과 함께 종종 보내야 하는 설계도들도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만 부담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설계도를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 서면제출과 전자제출이 병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관여자들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서면(종이 형태로)으로 보는 것을 화면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호한다. 서면으로 보는 것이 더 일목요연하기 때문이다. 건물보험사의 전자화 가능성은 현재 특정 서류양식의 작성에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디지털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시설 설치자들은 PC에서 작성이 허용되는 현재의 필수적인 VKF-서류양식들을 기업내에서 전자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형 회사들 내에서의 전자서식은 이미 기업내부적으로 잘 기능한다. 이 서류양식들은 내부의 문서관리 시스템과 결합되므로, 모든 서류작성에 필요한 내용, 즉 시설 설치자 및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이 이미 기재된다.

건물보험사와 중앙본부 담당자와의 공동협력

설문에 응한 설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의하면 건물보험사를, 설계절차와 건축절차의 영역에서 소방대책을 유익하게 안내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예컨대, 소방대책 승인 절차에서 사전상담과 같은 무료 상담은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이런 조언들은 최적화된 절차진행에 기여하기 때문에, 설계자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전체적으로 건물보험사는 3개 주 모두에서 설문응답 설계자들로부터 도움이 되고 협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협력활동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대한 질문에 관련해서 건물보험사의 협력준비가 부족함을 불평한 설비회사의 개별 응답에서는 약간 더 비판적이었다. 전체적으로 고찰해보면, 설계자들이 확실히 설비회사보다 더 잘 상담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터뷰 수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어쩌면 단편만을 서술한 것이고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다수(세 주 모두에서)가 건물보험사 직원과의 개인적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종 이것이 승인절차의 진행, 검사 및 그 밖의 관청과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모든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중앙본부의 상담파트너를 기대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건물보험사 뿐만 아니라 건축승인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관청에도 해당된다.

3개의 각 주마다 다른 이름을 가진 건축승인 신청서를 병렬시키려는 시도 이후, 어떤 절차에 관여하는 관청의 더욱 긴밀한 조정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한 프로젝트 설계자들에 대해 종종 몇몇 관여 관청을 대신한 다수의 상담파트너들이 나타났다. Aargau주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관청으로부터 다른 많은 상담파트너가 파견되었고, 결국 특정한 하나의 질의에 여러 번 해명을 해야 했던 특수 사례가 서술되었다. 이것은 특히, 특정 측면이 소방방재뿐만 아니라 소방대책에도 해당되는 사례들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소방청과 경제노동청(Amt für Wirtschaft und Arbeit)이 공동의 관할을 가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설계자의 작업은 물론 관청들 사이의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상담내용이나 승낙 또는, 어떤 사람이나 관청의 결정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와 어느 정도 관련된 모든 측면들이 항상 반드시 인지상태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Luzern주의 경우, 중앙본부 상담파트너 원칙이 이미 상당히 전환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전문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상담파트너에 의해 제기되는 주제는, 종종 충분치 않고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개별 관련 당사자들의 소방대책 노하우이다.

특히, 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자치단체의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전문지식이 설계자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이러한 결함은 Aargau주와 St. Gallen주의 건물보험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Luzern주는 소방대책을 전체적으로 주의 사무로 규율하는 예외규정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Aargau주와 St.Gallen주의 자치단체들은 우연히 소방대책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 건축승인 신청에서 소방대책 측면을 심사하는 것은 건축행정 담당자에게는 전체 건축신청 심사에서 지엽적인 부분일 뿐이다. 이들이 건축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소방법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소방대책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심화시킬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소방대책은 아주 지엽적인 주제이고, 다른 경우에는 즉 더 크고 복잡한 계획의 경우에는 곧바로 건물보험사에 의해 심사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Aargau주에서는 작은 자치단체가 지방 건축승인 신청상의 소방대책 심사를 굴뚝청소부의 특별임무로 위임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건물보험사는, 설계자들의 소방지침적・기술적 전문능력을 개선하고 이 영역에서 많은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해야 한다. 소방대책 승인절차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순전히 무지에 기인하는 것들이다.

이런 평가는 설비 운영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소방대책 승인 신청과 관련된 사전상담은 보통, 기술적 소방설비 측면에서 지식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설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소방기술자들이 설

계에 포함되는 것은 대형 복합 계획의 경우에만 있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아주 흔한 규정에 관한 지식의 흠결은 차후의 설비신고에서 많은 사후작업을 가져온다. 이런 맥락에서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건물보험사나 전문부서가 절차의 초기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 제안되었다.

소방대책 승인 조건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시되는 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기업/설계자를 통한 공모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종종 승인관청과 함께 밝혀져 있지 않고 관련 제안들은 공고문에 따랐다. 문제는 성공적인 제안자가 프로젝트를 신고하고자 하고 관청이 승낙하지 않을 때 종종 명확해진다. 공모 전에 관청과의 연결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종종 물공급과 설비의 규격확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았다. 기술적 소방설비에 관한 설계자의 전문지식을 개선하는 것 외에, 스프링클러 프로젝트의 신고가 공모 전에 진행될 것이 제안되었다.

예컨대 제연설비와 가스 소화설비와 같은 특정 설비형태와 관련된 건물보험사와 전문부서의 전문지식과 규정지식 결여가 부분적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공인된 검사소의 전문지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장되었다. 시설 설치자가 먼저 기술표준에 대해 검사소에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경 쟁

인터뷰상의 진술에 따라 판단해보면, 모든 소방관련 시장에 경쟁이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히 설계사무소와 많은 설비회사 사이에 경쟁이 작동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술적 소방설비 시장, 특히 스프링클러와 연기 및 열통풍설비 시장은 격렬한 가격전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스프링클러의 설치와 정비는 일반적으로 균일가격으로 제공된다. 개별단가에 대한 가격형성은 이론적으로, 예컨대 스프링클러 덮개의 수

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경쟁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균일가격은 아주 낮고 독일에서의 균일가격 보다 분명히 아래에 있다. 그 결과 스위스에는 독일 스프링클러 회사가 활동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임금총액이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형 스위스 회사에 있어서 이런 낮은 가격은 문제가 되고 있다. 때때로 낮은 가격 때문에 품질기준을 엄수하고 일정한 품질수준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시간에 따라 계산해 본다면, 가격은 두 배 내지 세 배로 뛰어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지불되는 비용의 두 배 내지 세 배의 비용이 실제 비용이기 때문이다.

제연설비 설치자는 경쟁기술상 불리하다고 느낀다. VKF-등록증도 없고, 건물보험사는 제연설비를 아주 “무시”하기 때문이다. VKF-공증이 없어서, 설치회사는 기본적으로 규격화된 독일산 설비를 고수한다. 기계식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전문회사의 수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기업들은 보통 스위스 지역에서 일한다. 심한 경쟁을 고려할 때, 공급자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약간의 불신이 쌓여있다.

가스 소화설비 설치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에도 설비들이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법적 한정조건에 근거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가스 소화설비는 항상 틈새시장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스 소화설비의 점검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인가받을 의무도 검사받을 의무도 없다. 안전연구소에 검사원 점검을 위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건축주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은 때때로 이런 위임을 어렵게 만든다. 건축주는 이런 이유에서, 예컨대 전자데이터처리실(EDV-Raum)의 보호를 위한 가스 소화설비 설치를 단념한다.

이 설비나 구성부분에 대해서 VKF-승인이 없기 때문에, 특정 방실에 의무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가스 소화설비는 종종 건물보험사

에 의해 인가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건축주는 종종 가스 소화설비 설치를 단념한다. 이런 상황은 가스 소화설비 설치자 측에서 볼 때 과도한 경쟁의 불이익을 만든다.

이런 점에서 가스 소화설비 설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설비형태에 대한 규율이 자발적으로 설치된 가스 소화설비도 건물보험사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하도록 규정한다면 반가운 일일 것이다. 이에 더해 그 규정들은 전자데이터처리실에 가스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2 최적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최적화방안은 인터뷰에서 도출한 것으로 행정부담에 영향을 끼치는 제안을 받아들여 요약한 것이다.

[표 31] 최적화방안: 포털 사이트 설치

항 목	중앙 소방대책 포털 사이트 설치
배 경	현재의 실무에 따라, 모든 “규율영역”은 각자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법적 근거, 실행지원, 설명서, 서류양식, 그 밖의 중요한 소방지침 정보들이 구비되어 있다. 다른 사이트들이 서로 링크 연결되어 있지 않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때때로 세 개의 다른 사이트들을 찾아봐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특히 정보제공의무의 실행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서류양식을 오로지 열람만 할 수 있는지,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작업이 가능한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서류양식들은 VKF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비록 이것들이 모두 같은 서식은 아니지만, PC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St.Gallen주에서는 건축승인 신청서를 일괄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승인 신청을 개별적으로 할

항 목	중앙 소방대책 포털 사이트 설치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한 서류양식 외에도 해당 주소를 가진 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Aargau주에서는 AGV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수많은 법률문서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 두었지만, 소방대책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는 오직 종이서류를 신청할 수만 있어서 전자상으로 처리할 수 없다. VKF의 서류양식 모음이 모든 설비형태를 커버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법률개정 공고 및 기술표준 개선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한 절차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제 안 내 용	소방대책 주제별 관련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는 중앙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법적 근거, 설명서, 지침, 실행원조 및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그 밖의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포털 사이트는 반드시 법적 또는 기술적 한정조건들의 개정을 공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중앙 포털 사이트는 세 개의 “규율영역”의 협력과 관할분배를 고려하여 VKF, 건물보험사에 의해, 가능하면 SES까지도 동참하여,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1. 최소한의 기술적 해결책인데, 중앙 포털 사이트는 오로지 공동의 시작페이지로만 존재하고, 이 시작페이지는 각 주의 소방청, VKF, SES 사이트의 방문을 연결해 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완전한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각각의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관련 정보들과 문서들 및 서류양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공동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개의 해결책은 그 기능과 관련하여 다시 두 가지 방안을 가진다. a) 이 포털 사이트는 오로지 정보제공만 한다. 문서, 정보, 서류양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서류들을 전자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편이나 메일로 해당관청에 보내야만 한다. 우선 서식통일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모든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동일한 전자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류양식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장된다.

항 목	중앙 소방대책 포털 사이트 설치
	b) 최대치의 해결책이라는 의미에서, 서류양식이 상호간에 작성·교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승인 신청, 프로젝트 신고, 설비 점검 등의 작업을 PC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관청에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자와 관여 전문회사의 접속 데이터가 서류에 미리 채워지고, 서류의 신뢰도 검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관련 관청 외에 각 전문부서, 소방대, 수도국 및 그 밖의 관여 부서에게도 전자상으로 저장된 신청서와 감정서에의 접근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치 해결책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소방대책 승인 신청의 건축승인 신청과의 관련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소방대책 승인 신청 서류들이 분리되어 있는 Aargau주에서조차, 소방대책 승인신청 서류는 건축승인 신청의 구성부분으로서 건물보험사에 제출된다. 이것은, 디지털화 시도가 건축법도 포함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이런 접합점의 관리를 위한 규율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거의 모든 신청서와 감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설계(Konstruktionspläne)와 관련하여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설계도의 온라인 전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만드는 것은 이용되는 서식들의 수많은 상이성 때문에 어쩌면 어려울지 모른다. 게다가 행정상의 소방대책 절차 관련자 모두는 설계도 심사와 관련하여 일목요연성이라는 이유에서 서면으로 작업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하지만 기술적 해결책이 서류양식에만 관련되고 설계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 매체충돌이 일어난다. 두 서식의 병존은 절감가능성(Einsparpotenzial)을 낮춘다. 4.6.1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문자들이 디지털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두 가지 점과 관련이 있다. 스위스에서 중앙 포털 사이트의 좋은 예로 공공조달(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에 관한 정보시스템이다(www.simap.ch). 이 포털 사이트는 개별 정책 영역의 모든 공모에 관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관청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공모를 공고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양측에게 플랫폼에서의 의사소통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방, 주, 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이 그것이다.

항 목	중앙 소방대책 포털 사이트 설치
목 표 집 단	소방대책 중앙 포털 사이트의 설치는 소방대책 영역의 모든 관련 당사자(설계자, 부분설계자, 시설 설치자, 전문회사, 건축주, 설비 운영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효 과	제시했던 모든 실마리들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수집을 보다 쉽게 해 줄 것이고, 따라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상이한 "소방대책 규율영역"의 병존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발생했던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특정 주에서 처음으로 이런 업무를 보려고 하는 이용자에게 이런 포털 사이트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상호작용하는 서류양식의 도입은 개별 정보제공의무의 이행 절차를 축소시킬 것이고 서류작성, 검사, 송부에 드는 시간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1. PC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시간비용이 적게 든다. 데이터가 이미 제공되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시간이 절약된다. 2. 통일된 전자적 신뢰도 점검을 고려하면,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데 드는 시간비용이 줄어든다. 3. 상이한 관할관청을 위한 (시간비용이 드는) 수많은 서류작성, 편지의 송달 및 우편료들이 사라진다. 실행계획과 건축설계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편비용이 남게 된다.
전 환 가능성	신청서 및 그 밖의 공문서의 온라인 전송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전자거래에서 공증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서명이다. 연방전자서명법(ZertES)에 의해 법적 한정조건들이 마련되었고, 이런 절차들은 기술적으로도 이미 몇몇의 모형 실험에서 전환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전환은 법적・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술했던 최대치 방안을 이행함으로써 결부되는 높은 추정적 투자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투자비용은 행정비용의 절약을 아마도 수배 능가할 것이다.
전 환 수범자	이런 전환은 전체 "규율영역"(건물보험사, VKF, SES)의 참여 하에 공동프로젝트로 이루어져야 한다.

7. 결 론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3개 주 -Aargau, Luzern, St. Gallen-의 소방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각 주들간의 정보제공 의무와 절차 및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화 제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측정결과 첫째, 연구대상인 3개 주의 소방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이 특별히 높지는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방법분야에서 비용유발자는 행정상 절차가 아니라, 기술적 설비들에 대한 계획, 설치, 점검수리,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상 요구의 수행이라는 점과 관계가 깊다. 반면 화재안전과 화재로 인한 손실방지라는 보호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규제비용은 비용-편익 관계상 균형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주들간에 나타나는 가장 큰 비용의 차이는 서로 다른 사례수 즉, 소방허가신청 및 기술적 설비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사례수에 기인하는데, 이는 경제활동, 기업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각 주의 건축활동(Bautätigkeit)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소방법의 특징으로서 행정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설계자, 전문설계자, 설비업자(Anlagenerrichter) 등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다.

절차분석의 결과는 연구대상인 3개 주에서 소방부문은 유사하게 조직화 되어있고, 상위차원의 구조와 절차 등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 다른 두 개의 주와는 차별적으로 Luzern주에서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Luzern주에서는 소방안전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건물보험사(GVL)가 갖고 있지만,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는 건물보험사와 자치단체(Gemeinde)에게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 둘째, Luzern주는 낙뢰방지기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승인받은 전문회사(anerkannte Fachfirma)로 이동하였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 사무는 건물보험사의 낙뢰방지기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비교에서 하나의 주에서

건물보험사의 관여에 따라 소방이 완전히 달리 조직화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다양한 “규율차원(Regulierungsebene)”간의 분석을 통해 VKF-지침과 SES-문서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주의 규정에 근거하는 부담보다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VKF-지침과 SES-문서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의 높은 사례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수범자집단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의 직접적인 비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설비 분야에서 측정된 비용에서 장비설치자(Anlagenerrichter)보다 설비관리자(Anlagenbetreiber)에게 더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는 사실인데, 실제로 설치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정보제공의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는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유일한 정보제공의무인 “설비점검매뉴얼의 운영(Führen des Anlagenkontrollbuchs)”에 기인한다.

VKF와 SES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조사된 3개 주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행정적 과정과 사용된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표 1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다양한 사례수로 설명될 수 있다. 3개 주간의 실행상의차이는 비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표준비용모델이라는 방법론이 법적 근거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담만을 측정하고, 특히 표준화된 절차와 비용만을 가지고 계측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양식의 사용과 관할관청 및 담당자의 업무방식에 기인하는 실행상의 차이는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표준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행상의 차이는 계량화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적 방법으로만 서술하였다.

비용에 있어서 실행상의 차이는 하나의 정보제공의무가 한 주에서만 실행되고 다른 주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없이 적용되는 SES-문서에서 기인하는 정보제공의무들 예컨대, “15년 이후 화재경보기의 판정”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례에서는 건물보험사의 집행결함(Vollzugsdefizit der Gebäudeversicherung)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하나의 주에서 실행과정이 다른주와는 다르게 구조화 되어있는 사례들도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Luzern주의 낙뢰방지기영역을 들 수 있다.

주요 차이는 주별 규정에서 발생되는 건축 및 관리상의 소방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서 나타난다. 우선 각 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정보제공의무의 건수를 고려해야 한다. 주별 정보제공의무들을 비교해보면 특히 협조의무(Kooperationspflichten)들이 시간 및 비용을 상당히 발생시키고 있다. 게다가 완성검사 및 정기화재검사 그리고 주기적인 통제 등도 시간 및 비용발생의 원인이다. 통제와 관련된 시간적 경비 및 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복잡성(Größe und Komplexität)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평균적인 가치(Durchschnittswerte)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주에서 확인된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행상의 차이는 본 연구의 계량화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개별적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차이들은 주별 소방허가신청 분야에서 발생한다. Aargau주와 St.Gallen주에서 이런 의무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양식이 필요한 반면, Luzern주에서는 소방안전검사(Prüfung des Brandschutzes)를 위해 소방허가절차속에서 추가적인 건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서 측정하는 비용은 전통적 수치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인 비용은 오히려 더 높다. 이는 무엇보다 소방계획의 문서화(zur Dokumentation des Brandschutzkonzepts)를 위한 비용이 측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비용은 소방안전조치의 계획

상의 내용에 근거한 비용과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연구와 관련된 최적화제안의 대부분은 실질적 요구와 실행측면과 관련되는데, 이는 비용측정의 범위안에서 방법론적인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인터뷰대상자들은 VKF-지침과 SES-기술문서의 통일된 해석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업무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후 다른 주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계획의 작성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통일하게 되면 경험에 따르는 노하우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방계획의 작성에서 계획에 수반되는 시간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점은 부분적으로 관할권과 관련된 명확하지 않는 규정과 다양한 담당자(Ansprechpartner)이다. AWA와 건물보험사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과의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와 행정절차상의 높은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부담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다수의 제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은 그리 놀랍지는 않다. 그러나 자세하게 기술된 중앙 포털사이트의 확립과 전개에 대한 제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모든 소방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실제적인 편익을 보장하고, 절차의 간소화와 이를 통한 행정비용의 간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별 사안의 법적 규율 및 소방조직에 관해 각 주들은 상호 학습하고 상호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 예컨대, Aargau주의 규율에서 70kw 이하의 연소장치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2개 주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 조사의 부차적인 산물일 따름이며, 업무에 대한 검토와 비교조직분석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점에 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8. 부 록

8.1 부록 1 : 3개주의 비용표

Aargau주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 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Aargau주	소방법시행령	1	소방안전대상건물의 신축 및 개조를 위한 자치단체의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건축주	60	59	2	우편료	790	61.02	48,206
Aargau주	계획, 건축법	2	자치단체의 허가에서 개업이전 준공신고	건축주	5	9	0		790	9.17	7,248
Aargau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3	자치단체의 완성검사 실행시 협력	건축주	60	87	0		738	93.60	69,078
Aargau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5	소방안전대상건물의 신축, 개조 및 상당한 변경에 따른 주의 소방허가 신청	건축주	140	168	2	우편료	738	155.98	115,115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Aargau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6	연소장치에 대한 주의 소방허가 신청	건축주	75	104	2	우편료	197	105.57	20,796
Aargau주	소방법시행령	7	주허가에서 개업이전 준공신고	건축주	5	9	0		935	9.17	8,578
Aargau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8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	건축주	240	340	0		935	340.36	318,237
Aargau주	소방법시행령	9	주 허가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검사소의 감정서 제출	건축주	0	0	0		0	-	0
Aargau주	소방법	11	새로운 건축자재의 허가의무의 예외 신청 등	설계자 전문 설계자	0	0	0		5	0.00	0
Aargau주	소방법	12	굴뚝청소부업의 허가 신청	굴뚝 청소업을 위한 신청인	30	32	4	복사비 + 우편료	10	36.40	373
Aargau주	실행설명서 굴뚝청소	13	굴뚝청소부를 통한 연소장치의 정기검사시의 협력	소유주	5	5	0		642	5.01	3,215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Aargau주	소방법시행령	14	연소장치의 완성 신고	난방장치 설치자	5	9	0		260	9.7	2,385
Aargau주	소방법시행령	15	연소장치의 자치단체 건축통제시의 협력	난방장치 설치자	35	43	0		260	42.51	11,053
Aargau주	소방법시행령	16	주의 화재점검시 협력	건물 소유자	810	811	0		1,064	21.90	29.886
Aargau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7	자치단체의 정기 화재점검시 협력	건물 소유자	60	60	0		750	60.09	45,068
VKF	BS-RL 17-03	7	승인을 위해 안전 조명 및 전원 공급 장치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제출(신고)	건축주	70	69	0		240	68.86	16,526
VKF	BS-RL 17-03	8	안전 조명 및 전원 공급 장치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완성검사에서의 협력	건축주	0	0	0		0	-	0
VKF	BS-RL 17-03	9	안전조명 및 전원공급장치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	소유주	2	2	0		223,600	2.00	447,871
VKF	BS-RL 17-03	16	구조물들의 방화능력에 대한 증명서	건축주	600	1,101	0		7	1,100.90	7,706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BS-RL 18-03	19	허가를 위한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 설비자	0	0	0		0	-	0
VKF	BS-RL 18-03	20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소화기구 설치자	0	0	0		0	-	0
VKF	BS-RL 18-03	22	소화장치, 가스소화설비와 특수 냉각 및 소화설비의 공급, 보충, 유지의 자료등록	소화기구 설치자	3	3	3.25	검사스티커	37,950	4,.33	76,997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 설비	26	허가를 위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출(신고)	스프링 클러회사	200	241	30	우편료	20	270.71	5,414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 설비	2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스프링 클러회사	217	227	36	우편료	20	262.51	5,250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 설비	29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 운영자)	설비 운영자	630	631	0		20	360.54	7,211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 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 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 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 SES	BS-RL (19-03) 기술적 스프링클러 설비지침	29a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 제조업자)	스프링 클러회사	630	788	0		20	450.06	9,001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 설비	30	스프링클러설비의 정기적인 통제시의 협력	스프링클러설비와 스프링클러회사의 소유주	120	120	0		201	120.18	24,156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1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 (설비운영자)	설비 운영자	2	2	0		25,728	2.00	51,333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1a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 (설비제조업자)	스프링 클러회사	10	11	0		402	10.80	4,341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2	거품물질의 품질시험 증명	거품물질 생산자	1	1	0		3	1.08	3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3	스프링클러설비의 10년후 검사에 대한 신고	스프링 클러회사	47	49	2	우편료	40	50.93	2,047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4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 제출	스프링 클러회사	501	613	6	우편료	18	619.01	11,198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5	총점검수리 이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스프링 클러회사	216	226	36	우편료	18	261.53	4,731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6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설비 운영자	630	631	0		4	1,813.55	6,259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6a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스프링 클러회사	630	788	0		362	22.51	8,150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7	스프링클러설비의 해제 신고	설비 운영자	13	13	0		8	13.02	104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8	스프링클러설비의 재작동 신고	설비 운영자	13	13	0		8	13.02	104
SES	TR-화재경보 설비	43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화재경보 회사	65	73	3	우편료	48	75.73	3,635
SES	TR-화재경보 설비	44	특별이용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자의 제출(신고)	화재경보 회사	267	318	1	우편료	2	160.17	320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 설비	45	화재경보설비의 설치증명서 제출	화재경보 회사	135	146	18	우편료	50	163.85	8,193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6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화재경보회사	180	225	0		50	225.03	11,252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6a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화재경보설비 운영자	180	180	0		50	180.27	9,014
SES	TR-화재경보설비	48	15년 이후 화재경보설비의 평가	화재경보설비 소유주/운영자	0	0	0		0	-	0
VKF / SES	TR-화재경보설비	49	작업중단의 신고	화재경보설비 소유주/운영자	5	5	0		11	5.01	55
VKF / SES	TR-화재경보설비	50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화재경보설비 소유주	2	2	0		55.536	2.00	111,239
VKF / SES	TR-화재경보설비	50a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제조업자)	화재경보설비회사	10	11	0		1.068	10.80	11,533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경보기	51	허가를 위한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자	73	82	4	우편료	6	86.20	517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경보기	52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설비 운영자	60	60	0		6	60.09	361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경보기	52a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자	60	75	0		6	75.01	450
SES	TR-가스누설경보기	53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증명서 제출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자	240	245	18	우편료	6	263.14	1,579
VKF	BS-RL 23-03	61	낙뢰방지기의 점검시 협력	설비 제조업자	180	225	0		81	225.03	18,227
VKF	BS-RL 23-03	62	점검준비중인 시설에 대한 신고(설치증명서)	설비 제조업자	5	6	1	우편료	81	7.25	587
VKF	BS-RL 23-03	63	낙뢰방지기의 정기적인 통제	설비 운영자	5	5	0		563	5.01	2,819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 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 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 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BS-RL 23-03	65	낙뢰이후 통제시 협력	설비 운영자	5	5	0		33	5.01	165
VKF	BS-RL 23-03	68	소방대원엘리베이터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	운영자	2	2	0		1.224	2.00	2,452

Luzem주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 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 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 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Luzern주	소방법	1	건물보험을 통한 소방허가 신청	건축주	105	103	2	우편료	600	91.76	55,056
Luzern주	계획, 건축법	3	주허가에서 개업이전 준공신고	건축주	5	9	0		600	9.17	5,505
Luzern주	계획, 건축법	4	주의 완성검사의 수행을 위한 협력	건축주	240	340	0		600	340.36	204,216
Luzern주	소방법	5	연소 및 제연장치의 제작/변경의 신고	건축주	0	0	0		900	0.00	0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Luzern주	소방법	6	굴뚝청소부를 통해 통제하도록 연소 및 제연장치의 제작/변경의 신고	건축주	5	5	0		500	5.01	2,504
Luzern주	소방법	7	새로이 제작/변경된 장치 또는 굴뚝청소를 통한 시설의 화재점검 시 협력	건축주	30	30	0		500	30.05	15,023
Luzern주	소방법	8	화재위험 물질의 저장, 생산, 가공, 운송 또는 판매의 허가 신청	화재위험 물질의 저장, 생산, 가공, 운송 또는 판매하는 기업	0	0	0		100	0.00	0
Luzern주	소방법	9	굴뚝청소부 선정을 위한 충분한 지식의 증명	굴뚝 청소부 신청인	30	32	2	우편료	6	34.40	215
Luzern주	소방법	10	GVL을 통한 정기적인 화재점검 시 협력	건물 소유주, 세입자, 임차인	120	120	0		50	120.18	6,009
Luzern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1	굴뚝청소부를 통한 정기적인 화재점검 시 협력	건물 소유주, 세입자, 임차인	5	5	0		12,000	5.01	60,090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Luzern주	소방법	12	가스시설의 허가와 통제 시 협력	건물 소유주, 세입자, 임차인	120	125	0		30	124.88	3,746
Luzern주	소방법	13	손해위험 또는 화재발발 시 소방관의 통지	모든 사람	0	0	0		0	-	0
VKF	BS-RL 17-03	7	승인을 위해 안전 조명 및 전원 공급 장치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제출(신고)	건축주	70	69	0		200	68.86	13,771
VKF	BS-RL 17-03	8	안전 조명 및 전원 공급 장치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완성검사에서의 협력	건축주	0	0	0		200	0.00	0
VKF	BS-RL 17-03	9	안전조명 및 전원공급정치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	소유주	2	2	0		130,000	2.00	260,390
VKF	BS-RL 14-03	16	구조물들의 화재방지능력에 대한 증명서	건축주	600	1.101	0		5	1,100.90	5,505
VKF	BS-RL 18-03	19	허가를 위한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설비자	0	0	0		5	0.00	0
VKF	BS-RL 18-03	20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소화기구의 제안자	0	0	0		5	0.00	0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BS-RL 18-03	22	소화장치, 가스소화설비와 특수 냉각 및 소화설비의 공급, 보충, 유지의 자료등록	소화기구의 제안자	3	3	3,25	검사스티커	22,000	4.33	95,226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설비	26	허가를 위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출(신고)	스프링클러회사	200	241	30	우편료	28	270.71	7,580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설비	2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스프링클러회사	217	227	36	우편료	28	262.51	7,350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설비	29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스프링클러회사	630	631	0		28	358.39	10,035
VKF / SES	BS-RL (19-03) 기술적 스프링클러설비지침	29a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설비운영자	630	788	0		28	447.38	12,557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설비	30	스프링클러설비의 정기적인 통제시의 협력	스프링클러설비와 스프링클러회사의 소유주	120	120	0		171	120.18	20,551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설비 운영자	2	2	0		21,888	2.00	43,842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1a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제조업자)	스프링 클러회사	10	11	0		342	10.80	3,693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2	거품물질의 품질시험 증명	거품물질의 생산자	1	1	0		2	1.08	3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3	스프링클러설비의 10년후 검사에 대한 신고	스프링 클러회사	47	49	2	우편료	34	50.93	1,742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4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 제출	스프링 클러회사	501	613	6	우편료	15	619.01	9,285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5	총점검수리 이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스프링 클러회사	216	226	36	우편료	15	261.53	3,923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6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운영자)	설비 운영자	630	631	0		300	18.03	5,408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6a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스프링 클러회사	630	788	0		300	22.50	6,751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7	스프링클러설비의 해제 신고	설비 운영자	13	13	0		8	13.02	104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8	스프링클러설비의 재작동 신고	설비 운영자	13	13	0		8	13.02	104
SES	TR-화재경보설비	43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화재경보회사	65	73	3	우편료	100	75.73	7,573
SES	TR-화재경보설비	44	특별이용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담당자의 제출(신고)	화재경보회사	267	318	1	우편료	5	320.34	1,602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5	화재경보설비의 설치증명서 제출	화재경보회사	135	146	18		105	163.85	17,205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6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화재경보회사 및 화재경보설비의 소유주/운영자?	180	225	0		105	225.03	23,628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6a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화재경보설비의 운영자	180	180	0		105	180.27	18,928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ES	TR-화재경보설비	48	15년 이후 화재경보설비의 평가	화재경보설비의 소유주/운영자	105	125	2	우편료	700	127.14	88,997
SES	TR-화재경보설비	49	작업중단의 신고	화재경보설비의 소유주/운영자	5	5	0		11	5.01	100
SES	TR-화재경보설비	50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화재경보설비의 소유주/운영자?	2	2	0		91,000	2.00	182,273
SES	TR-화재경보설비	50a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제조업자)	화재경보설비회사	10	11	0		1,750	10.80	18,897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경보기	51	허가를 위한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자	73	82	4	우편료	3	86.20	259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경보기	52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설비의 운영자	60	60	0		3	60.09	180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경보기	52a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자	60	75	0		3	75.01	225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ES	TR-가스누설경보기	53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증명서 제출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자	240	245	18	우편료	3	263.14	789
VKF	BS-RL 23-03	62	점검준비중인 시설에 대한 신고(설치증명서)	설비 제조업자	70	88	1	우편료	527	88.51	46,646
VKF	BS-RL 24-03	68	소방대원엘리베이터를 위한 점검책자 운영	운영자	2	2	0		960	2.00	1,923

St.Gallen주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t.Gallen주	소방법	1	자치단체의 소방기술적인 건축허가 신청 이전 화재안전점검 시의 협력(확장/개축)	건축주	30	30	0		460	30.05	13,821
St.Gallen주	소방법	2	건물신축 및 개조에 대한 자치단체의 소방허가 신청	건축주	60	59	2	우편료	460	61.02	28,069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t.Gallen주	소방법	3	자치단체허가에서 개업이전에 준공신고	건축주	5	9	0		500	9.17	4,587
St.Gallen주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법	4	자치단체의 완성검사의 수행을 위한 협력	건축주	60	85	0		460	85.09	39,141
St.Gallen주	소방법	6	기름난방장치의 설비를 위한 자치단체의 허가 신청	건축주	100	149	0		500	149.44	74,718
St.Gallen주	소방법	7	주의 소방기술적인 건축허가 신청 이전 화재안전점검 시의 협력(확장/개축)	건축주	30	30	0		441	30.05	13,250
St.Gallen주	소방법	8	건물과 건물부분의 신축 또는 변경의 주 소방허가 신청	건축주	135	158	2	우편료	441	146.80	64,470
St.Gallen주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법	9	화재 및 폭발위험물질의 생산, 저장과 가공을 위한 주의 허가 신청	폭발위험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하길 원하는 기업	0	0	0		44	0.00	0
St.Gallen주	소방법	10	주의 허가에서 개업이전에 준공신고	건축주	5	9	0		441	9.17	4,046
St.Gallen주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법	11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	건축주	240	340	0		441	340.36	150,099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t.Gallen주	소방법	12	설치 고정된 열난방장치의 운영을 위한 지역의 허가 신청	건축주	100	149	0		53	149.44	7,920
St.Gallen주	소방법	13	물질, 기술적 시설, 휴대용소화기구, 연소장치 연결기계의 소방기술적 상태의 증명(지역의 허가)	건축주	0	0	0		0	-	0
St.Gallen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4	자치단체의 화재점검시 협력	소유주/ 사용자	60	60	0		3,580	60.09	215,122
St.Gallen주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5	주의 화재점검시 협력	소유주/ 사용자	120	120	0		10	120.18	1,202
St.Gallen주	소방법	16	굴뚝청소부를 통한 열기술적인 설비의 정기적인 통제 시의 협력	열기술적인 설비의 소유주	5	5	0		19,000	5.01	95,143
St.Gallen주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법	17	새롭거나 변경된 낙뢰방지기 완성검사시 협력	소유주	180	225	0		1,200	225.03	270,036
St.Gallen주	소방법	18	낙뢰방지기의 정기검사시 협력	소유주	5	5	0		2,200	5.01	11,017
St.Gallen주	소방법	19	낙뢰 신고	소유주	0	0			85	0.00	0
VKF	BS-RL 17-03	7	승인을 위해 안전 조명 및 전원 공급 장치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제출(신고)	건축주	70	69	0		140	68.86	9,984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BS-RL 17-03	8	안전 조명 및 전원 공급 장치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완성검사시 협력	건축주	0	0	0		0	-	0
VKF	BS-RL 17-03	9	안전조명 및 전원공급장치를 위한 점검매뉴얼	소유주/사용자	2	2	0		187,200	2.00	374,962
VKF	BS-RL 14-03	16	구조물들의 화재방지능력에 대한 증명서	건축주	600	1.101	0		4	1,100.90	4,404
VKF	BS-RL 18-03	19	허가를 위한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설비자	0	0	0		0	-	0
VKF	BS-RL 18-03	20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소화기구의 제안자	0	0	0		0	-	0
VKF	BS-RL 18-03	22	소화장치, 가스소화설비와 특수 냉각 및 소화설비의 공급, 보충, 유지의 자료등록	소화기구의 제안자?	3	3	3,25	검사스티커	31,100	4.33	134,658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설비	26	허가를 위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출(신고)	스프링클러회사	200	241	30	우편료	25	270.71	6,768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설비	2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스프링클러회사	217	227	36	우편료	25	262.51	6,563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 설비	29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운영자)	스프링 클러회사	630	631	0		25	360.54	9,014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 설비	29a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제조업자)	설비 운영자	630	788	0		25	450.06	11,252
VKF / SES	BS-RL 19-03 TR-스프링클러 설비	30	스프링클러설비의 정기적인 통제시의 협력	스프링클러설비및 스프링클러 회사 소유주/ 운영자	120	120	0		220	120.18	26,440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1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책자 운영(설비운영자)	설비 운영자	2	2	0		28,160	2.00	56,404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1a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책자 운영(설비제조업자)	스프링 클러회사	10	11	0		440	10.80	4,751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2	거품물질의 품질시험 증명	거품물질 생산자	1	1	0		3	1.08	3
SES	TR-스프링클러 설비	33	스프링클러설비의 10년후 검사에 대한 신고	스프링 클러회사	47	49	2	우편료	44	50.93	2,241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4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 제출	스프링클러회사	0	0	0		20	0.00	0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5	총점검수리 이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스프링클러회사	216	226	36	우편료	20	261.53	5,178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6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설비운영자	630	631	0		396	18.01	7,133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6a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제조업자)	스프링클러회사	630	788	0		396	22.48	8,904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7	스프링클러설비의 해제 신고	설비운영자	13	13	0		9	13.02	117
SES	TR-스프링클러설비	38	스프링클러설비의 재작동 신고	설비운영자	13	13	0		9	13.02	117
SES	TR-화재경보설비	43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화재경보회사	65	73	3	우편료	73	75.73	5,528
SES	TR-화재경보설비	44	특별이용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담당자의 제출(신고)	화재경보회사	267	318	1	우편료	2	320.34	641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5	화재경보설비의 설치증명서 제출	화재경보회사	135	146	18	우편료	77	163.85	12,617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비용 (분)	내부비용 (CHF)	구매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빈도)	정보제공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6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제조업자)	화재경보회사	180	225	0		77	225.03	17,327
VKF / SES	BS-RL 20-03 TR-화재경보설비	46a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운영자)	화재경보설비의 운영자	180	180	0		77	180.27	13,881
SES	TR-화재경보설비	48	15년 이후 화재경보설비의 평가	화재경보설비의 소유주/운영자	105	125	2	우편료	950	127.14	120,781
SES	TR-화재경보설비	49	작업중단의 신고	화재경보설비의 소유주/운영자	5	5	0		24	5.01	120
SES	TR-화재경보설비	50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화재경보설비의 소유주/운영자?	2	2	0		123,240	2.00	246,850
SES	TR-화재경보설비	50a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제조업자)	화재경보설비회사	10	11	0		2,370	10.80	25,592

입법단계	법령명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내용	수범자 -실제의무이행자	총 시간 비용 (분)	내부 비용 (CHF)	구매 비용 (CHF)	구매비용 내역	사례수 (모집단* 빈도)	정보제공 의무 당 개별단가 (CHF)	행정부담 (CHF)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 경보기	51	허가를 위한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가스누설 경보기의 제조업자	73	82	4	우편료	2	86.20	172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 경보기	52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운영자)	설비의 운영자	60	60	0		2	60.09	120
VKF / SES	BS-RL 21-03 TR-가스누설 경보기	52a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 협력(설비제조업자)	가스누설 경보기의 제조업자	60	75	0		2	75.01	150
SES	TR-가스누설 경보기	53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증명서 제출	가스누설 경보기의 제조업자	240	245	18	우편료	2	263.14	526
VKF	BS-RL 23-03	62	점검준비중인 시설에 대한 신고(설치증명서)	설비 제조업자	5	5	1	우편료	1,200	6.01	7,209
VKF	BS-RL 23-03	65	낙뢰이후 통제 시의 협력	피뢰시설의 소유주/ 운영자	5	5	0		85	5.01	426
VKF	BS-RL 24-03	68	소방대원엘리베이터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	운영자	2	2	0		1,200	2.00	2,404

8.2 부록 2 : 주 상호간 행정부담 비교

주제범위	Lf · Nr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빈도수를 포함한 사례수			정보제공의무당 개별단가 (CHF)			총 행정 부담 (CHF)		
		IP	존재?	IP	존재?	IP	존재?	AG	LU	SG	AG	LU	SG	AG	LU	SG
자치단체 소방허가	1		0		0	자치단체 소방기술적 건축허가 신청 이전 화재안전 점검시협력 (확장/개축)	1			460			30.05			13,821
	2	소방안전 대상건물의 신축 및 개축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1		0	건물신축 및 개축에 관한 자치단체소방 허가 신청	1	790		460	61.02		61.02	48,206		28,069
	3	허가에서 개업이전의 준공신고	1		0	허가에서 개업이전에 준공신고	1	790		500	9.17		9.17	7,248		4,587
	4	완성검사시 협력	1		0	완성검사시 협력	1	738		460	85.09		85.09	69,078		39,141

주제범위	Lf · Nr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빈도수를 포함한 사례수			정보제공의무당 개별단가 (CHF)			총 행정 부담 (CHF)		
		IP	존재?	IP	존재?	IP	존재?	AG	LU	SG	AG	LU	SG	AG	LU	SG
주 소방허가	5		0		0	주 정부의 소방기술적 건축허가 신청 이전 화재안전 점검시의 협력 (확장/개축)	1			441			30.05			13,250
	6	소방안전대상건물의 신축, 개조 및 상당한 변화를 위한 주의 소방허가를 위한 신청	1	건물보험을 통한 소방허가 신청	1	건물과 건물부분의 신축 또는 변경의 주 소방허가 신청	1	738	600	441	155.98	91.76	146.80	115,115	55,056	64,470
	7		0	화재위험 물질의 저장, 생산, 가공, 운송 또는 판매의 허가 신청	1	화재 및 폭발위험물질의 생산, 저장과 가공을 위한 주 정부의 허가 신청	1		100	44		0.00	0.00		0	0

주제범위	Lf · Nr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빈도수를 포함한 사례수			정보제공의무당 개별단가 (CHF)			총 행정 부담 (CHF)		
		IP	존재?	IP	존재?	IP	존재?	AG	LU	SG	AG	LU	SG	AG	LU	SG
	8	주의 허가에서 개업이전에 준공신고	1	주의 허가에서 개업이전 준공신고	1	주의 허가에서 개업이전 준공신고	1	935	600	441	9.17	9.17	9.17	8,578	5,505	4,046
	9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	1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	1	주의 완성검사시 협력	1	935	600	441	340.36	340.36	340.36	318,237	204,216	150,099
	10	주 허가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검사소의 감정서 제출	1		0	물질, 기술적 시설, 휴대용 소화기구, 연소장치 연결기계 소방기술적 상태의 증명 (지역의 허가)	1	0		0	-		-	0		0
연소장치	11	연소장치를 위한 주의 소방허가 신청	1		0	설치 고정된 열연소장치의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허가 신청	1	197		53	105.57		149.44	20,796		7,920

주제범위	Lf · Nr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빈도수를 포함한 사례수			정보제공의무당 개별단가 (CHF)			총 행정 부담 (CHF)		
		IP	존재?	IP	존재?	IP	존재?	AG	LU	SG	AG	LU	SG	AG	LU	SG
	12					기름연소장치의 설비를 위한 자치단체 허가 신청	1			500			149.44			74,718
	13		0	연소 및 제연장치의 제작/변경의 신고	1		0		900			0.00			0	
	14	연소장치의 골격만 끝냈을 때의 신고	1	굴뚝청소부를 통해 통제하도록 연소 및 제연장치의 제작/변경의 신고	1		0	260	500		9,17	5.01		2,385	2,504	
	15	연소장치의 자치단체 건축통제시의 협력	1	새로이 제작/변경된 장치 또는 굴뚝청소를 통한 시설의 화재점검 시 협력	1		0	260	500		42.51	30.05		11,053	15,023	

주제범위	Lf · Nr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빈도수를 포함한 사례수			정보제공의무당 개별단가 (CHF)			총 행정 부담 (CHF)		
		IP	존재?	IP	존재?	IP	존재?	AG	LU	SG	AG	LU	SG	AG	LU	SG
	16		0	가스시설의 허가와 통제 시 협력	1		0		30			124.88			3,746	
정기적인 소방 검사와 화재점검	17	굴뚝청소부를 통한 연소장치의 정기적인 통제시의 협력	1	굴뚝청소부를 통한 정기적인 화재점검 시 협력	1	굴뚝청소부를 통한 열기술적인 설비의 정기적인 통제 시의 협력	1	642	12000	19000	5.01	5.01	5.01	3,215	60,090	95,143
	18	지방자치 단체의 정기적인 화재점검 시 협력	1		0	지역의 화재점검 시의 협력	1	750		3580	60.09		60.09	45,068		215,122
	19	주정부의 화재점검 시 협력	1	GVL을 통한 정기적인 화재점검 시 협력	1	주 정부의 화재점검 시의 협력	1	1364	50	10	21.90	120.18	120.18	29,866	6,009	1,202
굴뚝 청소부 허가	20	굴뚝청소부 직업의 허가 신청	1	굴뚝청소부 선정을 위한 충분한 지식의 증명	1		0	10.25	6.25		36.40	34.40		373	215	

주제범위	Lf · Nr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빈도수를 포함한 사례수			정보제공의무당 개별단가 (CHF)			총 행정 부담 (CHF)		
		IP	존재?	IP	존재?	IP	존재?	AG	LU	SG	AG	LU	SG	AG	LU	SG
피뢰	21		0		0	새롭거나 변경된 낙뢰방지기의 완성검사시 협력	1			1200			225.03			270,036
	22		0		0	낙뢰방지기 정기검사시 협력	1			2200			5.01			11,017
	23		0		0	낙뢰 신고	1			85			0.00			0
화재경보	24		0	손해위험 또는 화재발발 시 소방관의 통지	1		0		0			-			0	
새로운 건축 자재와 건축부분의 허가	25	새로운 건축자재의 허가의무의 예외 신청 등등	1		0		0	5			0.00			0		

8.3 부록 3 : VKF와 SES 정보제공의무의 측정관련성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1-03d		지시에의 의무	Art. 19	이 조항은 하나의 일반적 행동규범으로서 구체적인 정보제공의무는 아니다. 또한 베르텔스만 재단의 규제비용측정 입문서에 의하면 지시의무는 내용적으로 간주하나, 정보제공의무로서는 간주하지 않는다.		
VKF	1-03d 11.03d	1	화재경보와 소방대에의 경보	Art. 20 Zif. 8.7 Abs. 1		행정 부담 = 0	소방대에의 경보는 자동화되어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비용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VKF	1-03d 11-03d 16-03d 17-03d	2	구조표가 있는 비상구 표시	Art. 51 Abs. 1 BSN Zif. 8.4 BSRL 11-03 Zif. 3.5.7 Abs. 1 BS-RL 16-03 Zif. 3.1.1, 3.1.2 BSRL 17-03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17-03d	3	방향지시등을 통한 비상구 표시	Zif. 3.1.2 Abs. 1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17-03d	4	출구 표시	Zif. 3.1.2 Abs.2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11.03d	5	소방차의 진입로 및 주차공간에 대한 표시	Zif. 5.1 Abs. 2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16-03d	6	비상구의 안전조명등	Zif. 3.5.7 Abs. 1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17-03d	7	안전조명등과 허가를 위한 전기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제출	Zif. 5.1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인 소방신청의 요소이다; 안전조명등과 전기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분리된 신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VKF	17-03d	8	안전조명등과 전기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완성검사시 협력	Zif. 5.2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인 소방기술적 완성검사의 요소이다.
VKF	17-03d	9	안전조명등과 전기공급을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	Zif. 6 Abs. 2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1-03d	10	경보 및 투입초안의 작성을 위한 협력	Art. 59	≠ 정보제공의무	설계자/전문설계자의 측정가능하거나 규격가능한 비용이 없음	필수적인 한에서, 소방대에 대한 경보 및 투입초안이 제안되었다. 때때로 소방대는 일찍 계획에 들어간다; 때때로 기획자는 소방대가 계획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때때로 소방대는 건물보험으로부터 계획들을 수령한다.
VKF	11.03d	11	소방청의 요청에 대한 소방안전계획의 제출	Art. 71 소방규범 Zif. 4.1 Abs. 2 BSRL 11-03		소방계획의 제안에 대한 실제적인 비용은 계획에 편입시킬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소방계획 복사와 제출에 대한 비용만 단지 측정되었다.	소방계획은 주의 소방허가를 위한 정보제공의무내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11.03d	12	금연 표시	Zif. 3.6 Abs. 2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12-03d	13	건축재의 허가 신청	Zif. 3.3 Abs. 1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12-03d	14	수송관의 소방허가 신청	Zif. 3.3 Abs. 1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12-03d	15	건축부분의 허가 신청	Zif. 4.3 Abs. 1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14-03d	16	지지물들의 화재방지능력에 대한 증명서	Art. 31 소방규범 Zif. 6.1 & 6.3 BSRL 14-03		비교적 낮은 사례수와 함께 하나의 예외적 경우이다.	
VKF	18-03d	17	소화기의 관리에서 종업원의 지시	Zif. 5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베르텔스만 재단의 규제비용측정입문서에 의하면 지시의무는 독립적인 의무유형에 관한 것이지, 상이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기업내부적으로 진행되나, 행정에의 연관성은 없다.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18	소화기에 대한 소방사용 이용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18-03d	19	허가를 위한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	Zif. 6.1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인 소방 개념의 구성요소이다;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에 대한 계획의 신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VKF	18-03d	20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Zif. 6.2 (1)	정보제공의무는 (아직) 실행되지 않음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은 건물보험으로부터 요구되지 않는다.
VKF	18-03d	21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완성검사시의 협력	Zif. 6.2 (1)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인 소방기술적 완성검사의 구성요소이다.
VKF	18-03d		가스소화, 냉각 및 소화설비의 정기적 통제	Zif. 6.3	≠ 정보제공의무		내부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하는 검사와 동시에 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내용적인 의무가 문제이다.
VKF	18-03d	22	소화장치, 가스소화설비와 특수 냉각 및 소화설비의 공급, 보충, 유지의 자료등록	Zif. 7 Abs. 2		시간적인 비용은 부수적이나, 검사포스터와 많은 사례수에 대한 구입비용은 중요하다.	시간적인 비용은 검사포스터에 포함되어 있다.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19-03d	23	스프링클러중심부로의 입구 표시	Zif. 2.3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SES		24	스프링클러회사로써 허가 신청	Zif. 3.1.6 TRL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SES		25	스프링클러성분에 대한 소방이용 신청	Zif. 3.1.5 TRL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SES	19-03d	26	허가를 위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출(신고)	Zif. 4.1 BSRL 19-03 Zif. 3.1.7 TRL			
VKF SES	19-03d	2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Zif. 4.2 BSR 19-03 Zif. 7.1 TR 스프링클러설비			
SES		28	설비운영자로의 스프링클러서류 교부	Zif. 7.2 TR 스프링클러설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SES	19-03d	29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Zif. 4.2 BSR 19-03 Zif. 7.3 TRL 스프링클러설비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SES	19-03d	29a	스프링클러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Zif. 4.2 BSR 19-03 Zif. 7.3 TRL 스프링클러설비			
VKF SES	19-03d	30	스프링클러설비의 정기적인 통제시의 협력	Zif. 4.3 BSR 19-03			
SES			경보조직계획	Zif. 8.2 TRL 스프링클러설비	≠ 정보제공의무		제조업자로부터 운영자에게 교부되어야만 하는 설비서류는 구성요소이다(상기 참조).
SES		31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 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Zif. 8.11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31a	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점검 매뉴얼 운영(설비제조업자)	Zif. 8.11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19-03d		검사증명서의 복사본 제출(큰 위험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Zif. 8.5 TRL 스프링클러설비	≠ 정보제공의무		스프링클러회사를 통한 검사증명서는 단지 10년 검사의 경우에만 요구된다. 여기와 연관되는 외부적 검사는 건물보험이나 건물보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기관(AG: 안전연구소, LU: GVL, SG: Feuerstop 주식회사)을 통해 행해진다. 이 경우에 적절한 검사증명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설명하지 않는다.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SES		32	거품물질의 품질시험 증명	Zif. 8.6g TRL 스프링클러설비		비용은 부차적이다.	비용은 단지 검사일의 등록에만 있다.
SES		33	스프링클러설비의 10년후 검사에 대한 신고	Zif. 8.6h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34	허가를 위한 총점검수리 제출	Zif. 8.7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35	총점검수리 이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Zif. 8.7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36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Zif. 8.7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19-03d	36a	총점검수리 이후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Zif. 8.7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37	스프링클러설비의 해제 신고	Zif. 8.9 Abs. 1 TRL 스프링클러설비			
SES		38	스프링클러설비의 재작동 신고	Zif. 8.9 Abs. 2 TRL 스프링클러설비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SES		39	스프링클러설비의 중지 시 관할부서와 협의	Zif. 8.10 TRL 스프링클러설비		부차적인 연관성과 함께 예외적인 경우이다.	협의비용은 다양하다. 낮은 사례수로 인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비용과 함께 공탁하지 않을 수 있다.
SES		40	화재경보회사로써 허가 신청	Zif. 3.1.4 TRL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SES		41	화재경보기구/-체계에 대한 소방이용 신청	Zif. 3.1.3 TRL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SES		42	특별이용을 위한 화재경보이용에 대한 소방이용	Zif. 3.1.3 TRL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SES	20-03d	43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Zif. 4.1 BS-RL 20-03 Zif. 3.2 TRL			
VKF SES	20-03d	44	특별이용 허가를 위한 화재경보자의 계획의 제출(신고)	Zif. 4.1 BS-RL 20-03 Zif. 3.2 TRL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SES	20-03d	45	화재경보설비의 설치증명서 제출	Zif. 4.2 BSRL 20-03 Zif. 11.1 TRL 화재경보설비			
VKF SES	20-03d	46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Zif. 4.2 BSRL 20-03 Zif. 11.3 TRL 화재경보설비			
VKF SES	20-03d	46a	화재경보설비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Zif. 4.2 BSRL 20-03 Zif. 11.3 TRL 화재경보설비			
VKF	20-03d		화재경보설비의 정기적 통제	Zif. 4.3	≠ 정보제공의무		화재경보설비의 정기적 통제는 관청의 참여없이 정비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내용적인 의무가 중요하다(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SES		47	설비운영자로의 화재경보설비 서류 교부	Zif. 11.2 Abs. 1 TRL 화재경보설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SES		48	15년 이후 화재경보설비의 평가	Zif. 12.6 TRL 화재경보설비	정보제공의무는 아르가우에서 실행되지 않음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단지 LU와 SG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AG에서는 15년 이래 분리된 평가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평가는 일상적인 정비사이클 내에서 거기서 의미가 하락한다.
SES		49	작업중단의 신고	Zif. 12.7 TRL 화재경보설비			
SES		50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Zif. 12.8 TRL 화재경보설비			
SES		50a	화재경보설비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제조업자)	Zif. 12.8 TRL 화재경보설비			
VKF SES	21-03d	51	허가를 위한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계획의 제출(신고)	Zif. 4.1 Zif. 2.2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VKF SES	21-03d	52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운영자)	Zif. 4.2 BSRL 21-03 Zif. 10.3 Abs. 1, 2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SES	21-03d	52a	가스누설경보기의 완성검사시의 협력(설비제조업자)	Zif. 4.2 BSRL 21-03 Zif. 10.3 Abs. 1,2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VKF	21-03d		가스누설경보설비의 정기적 통제	Zif. 4.3	≠ 정보제공의무		가스누설경보설비의 정기적인 통제는 관청의 참여 없이 정비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용적인 의무가 중요하다(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SES			경보조직계획	Zif. 9 Abs. 1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 정보제공의무		제조업자로부터 운영자에게 교부되어야만 하는 설비서류는 구성요소이다(상기 참조). 이것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로써 측정되지 않는다.
SES		53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증명서 제출	Zif. 10.1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SES		54	설비운영자로의 가스누설경보 설비서류 교부	Zif. 10.2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SES		55	유지에 관한 계약의 제출	Zif. 11.1 Abs. 4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정보제공의무는 실행되지 않음		운영기업이 계약을 성립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 건물보험이 인수한다. 계약의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SES		56	유지업무의 서류화(설비운영자)	Zif. 11.1 Abs. 8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SES		56a	유지업무의 서류화(설비제조업자)	Zif. 11.1 Abs. 8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SES			가스누설경보설비의 기능검사	Zif. 11.2 Abs. 1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 정보제공의무		기업내부적이거나 정비회사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설비의 기능검사는 내용적 의무를 묘사한다(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SES			가스누설경보설비의 정비	Zif. 11.1 Abs. 1, 2 TRL 가스누설경보설비	≠ 정보제공의무		정비회사에 의해 실행되는 설비의 정비는 내용적 의무를 묘사한다(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VKF	22-03d	57	연기 및 열통풍설비의 효과 증명	Zif. 5 Abs. 1		비교적 낮은 사례수와 함께 예외적 경우이다.	
VKF	22-03d	58	허가를 위한 연기 및 열통풍 설비계획 제출	Zif. 6.1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 소방허가신청의 구성요소이다; 제연설비 계획의 분리된 신청은 요구되지 않는다.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22-03d	59	연기 및 열통풍설비의 설치증명서의 제출	Zif. 6.2	정보제공의무는 AG와 SG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음		
VKF	22-03d	60	연기 및 열통풍설비의 완성검사시 협력	Zif. 6.2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완성검사가 실행되는 한, 화재경보시설의 완성검사 내에서 이것은 이루어진다.
VKF	22-03d		연기 및 열통풍설비의 정기검사	Zif. 6.3	≠ 정보제공의무		내부적 검사와 동시에 내용적 의무(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VKF	23-03d	61	낙뢰방지기의 점검시 협력	Zif. 4.1 Abs. 1		비용은 소유주에게 부수적이다.	
VKF	23-03d	62	점검준비중인 시설에 대한 신고(설치증명서)	Zif. 4.1 Abs. 3			
VKF	23-03d	63	낙뢰방지기의 정기검사	Zif. 4.2		비용은 소유주에게 부수적이다.	
VKF	23-03d	64	낙뢰 신고	Zif. 4.3	≠ 실무에서 소방법적인 정보제공의무		건물보험은 시설운영자가 아닌, 보험을 통해 벼락에 대한 소식을 수령한다. 보험에 대한 신고는 보험법상 의무이다.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23-03d	65	낙뢰 이후 통제시 협력	Zif. 4.3		비용은 소유주에게 부수적이다.	
VKF	24-03d	66	허가를 위한 소방 대원엘리베이터 계획의 제출	Zif. 5.2.1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 소방허가신청의 구성요소이다; 소방대원엘리베이터 계획의 분리된 신청은 요구되지 않는다.
VKF	24-03d	67	소방대원엘리베이터의 완성점검시 협력	Zif. 5.2.2	≠ 분리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 완성검사의 구성요소이다.
VKF	24-03d		소방대원엘리베이터의 정기 검사	Zif. 5.2.3	≠ 정보제공의무		내부적 검사와 동시에 내용적 의무(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VKF	24-03d	68	소방대원엘리베이터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운영자)	Zif. 5.2.3			
VKF	24-03d	68a	소방대원엘리베이터를 위한 점검매뉴얼 운영(설비제조업자)	Zif. 5.2.3			
VKF	24-03d		화재의 경우 조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시설의 정기 검사	Zif. 7	≠ 정보제공의무		내부적 검사와 동시에 내용적 의무(베르텔스만 재단 감시의무 유형의 규제비용 안내서에 의하면).
VKF	24-03d	69	화재의 경우 조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시설 내 “화재 시 이용 금지” 표지판 설치	Zif. 4.7에 대한 부록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25-03d	70	열순환설비의 허가 - 연소장치 연결기계	Zif. 3.2 Abs. 1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25-03d	71	열순환설비 및 부분의 표시	Zif. 3.2 Abs. 2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25-03d	72	배기가스설비의 허가 신청	Zif. 6.4 Abs. 2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25-03d	73	배기가스설비의 표시	Zif. 6.5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26-03d	74	환기 및 냉난방시설을 위한 소방이용 신청	Zif. 3.2 Abs. 1	허가/소방이용 VKF - 측정하지 않음		
VKF	26-03d	75	환기시설의 표시	Zif. 3.2 Abs. 2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27-03d	76	화재 및 폭발위험, 금연 안내	Zif. 2.3.13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입법단계	법령번호	정보제공의무 - 일련번호	정보제공의무 - 내용	정보제공의무 - 출처	측정에 관한 언급 - 정보제공의무 추정	측정에 관한 언급 - 비용추계	해 설
VKF	27-03d	77	폭죽사용허가	Zif. 3.2	정보제공의무는 측정되지 않음		스위스연방의 폭죽법과 폭죽법시행령에 의해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 그에 따라 “하부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는 폭죽법에 연관되나 소방법에 연관되지는 않는다.
VKF	27-03d	78	폭죽에 대한 저장고 내 발화 및 흡연 금지 안내의무	Zif. 3.3.2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27-03d	79	1000kg까지 저장시 탈출로 표시	Zif. 3.3.5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27-03d	80	1000kg 초과 저장시 탈출로 표시	Zif. 3.3.6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VKF	28-03d	81	화재 및 폭발위험, 금연 안내	Zif. 4.10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측정하지 않음		